

대통령 입후보자에 대한 보도와 언론의 편향성

백 선 기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언론학과 조
- 서울대학교 언론학 석사 졸업 및 박사과정 수료
- 미 Univ. of Minnesota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 한국방송학회 방송과 정치연구회 회장
- 현(現) 한국방송학회 회장
- 저서 및 논문 :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미디어의 역할』,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보도 분석 및 평가: 선거 기사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의 대통령 선거보도 유형과 일반 원칙 : 2002년 대통령선거 보도준칙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외 다수

I. 서론

2007년은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제14대인 1992년, 제15대인 1997년, 제16대인 2002년 등의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선거의 양태, 과정 및 주요 요소들이 많이 변화해 왔다. 제13대인 1987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의 군부 통치 하에서 벗어나는 의미 있는 선거이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군 장성 출신의 입후보자가 등장하였으며, 선거의 당락을 전통적인 유세장에 모인 유권자들의 수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제14대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대화된 다양한 선거 전략 및 기술들이 등장하였고, 미디어의 참여 및 기여가 적극적으로 시도된 선거였다. 대선 입후보자들 사이에 군과 관련된 입후보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문자 그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 민주주의 사회 방식의 대통령 선거였다. 신문과 방송, 특히 텔레비전을 통한 입후보자에 대한 후원 및 유세는 물론이고, 미디어를 통한 정치광고가 시작되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들 미디어를 통한 선거의 개입이 보다 활성화되었으며, 텔레비전 토론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가

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텔레비전 토론이라는 포맷이 적절한 입후보자를 선정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 하에 대통령 선거에도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 후 많은 선거들에서 다양한 형태의 텔레비전 토론들이 시도되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러한 텔레비전 토론이 각 정당의 대선 입후보자 선정에는 물론이고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는 1960년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시도했던 텔레비전 토론이 선거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 유사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정당에서조차 부각되지 못했던 후보자가 당내의 텔레비전 토론의 과정을 거쳐 정당의 대선 입후보자로 선정되었으며, 정당 간의 대결에 있어서도 당시 당선이 유력시되던 상대 정당의 입후보자에게 역전 승리한 점이 아주 유사한 것이다. 미국의 1960년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시 ‘뉴 페이스’로 등장한 케네디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던 닉슨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던 것이다(백선기, 1997 참조).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민주적 선거 절차를 거쳐 대통령을 선출하는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 사회는,

미디어가 선거에 관여하면서부터
미디어에 의해 특정 후보가 부각되거나 쇠퇴하는
경향 나타났으며 보다 심대해지고 있어

13대 이후에 전개된 4번의 대통령 선거의 경험을 통해 어느새 선진 민주사회의 선거 절차와 양태를 지니게 되었다. 특히 미디어를 통한 선거 과정 참여는 어느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에 의한 여러 잠재적 후보자들 발굴, 다양한 종류의 여론조사들을 통한 후보자들 사이의 부침 유도, 후보자들의 정책들이나 제안들에 대한 검증 및 평가, 시민단체의 메니페스트(manifest) 운동과 연계하여 후보자들의 정책 현실성과 추상성 검토 등등의 방식으로 미디어는 선거 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때로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선거 과정을 '미디어 선거'라고 일컫기도 한다.

그런데 이 같은 미디어를 통한 선거 과정의 개입은 긍정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미디어가 선거에 개입되면서 선거가 지나치게 '이미지화' 되기도 하고, 정치나 선거에 있어서 '신중함이 사라지면서 다소 가벼워지고' 있으며,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 제시보다는 그들의 '일상적이 움직임이나 호감도'가 주요 관심사가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혹자는 현재의 미디어 선거가 선거를 지나치게 희화화하고 후보자들의 호감도에 주목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인기 선거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부정적 측면들은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선거라는 것이 일부 선거 전문가들이나 평론가들이 지적하듯이 '무겁거나 신중할 필요'는 없을 듯 하며, 후보자의 개별적 측면을 부각하는 것은 이미 선거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인기 선거' 같은 대중성을 근간으로 선출된 후보자들이 대통령

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들에 비해 보다 심각한 것은 미디어가 선거에 관여하면서부터, 미디어에 의해 특정 후보자가 부각하기도 하고 여타의 후보자들은 쇠퇴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보다 심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미디어의 편향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디어의 불공정성'이라고 하기도 한다.

'미디어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제기되는 쟁점으로서, 선거에서 불리하거나 패배한 측에서는 항상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심지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 이슈는 그 어떠한 심의 과정을 거쳐도 상대방을 완전하게 설득하거나 이해하게 만들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관점이나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미디어에 의한 공정성' 시비는 선거에 있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쟁점이며, 그 어느 측도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또한 이에 대한 논의를 중지할 수도 없고 심의나 평가를 게을리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미디어에 의한 공정성 문제는, 특정 후보자가 미디어의 불공정적인 취급이나 편향적 평가에 의해 당선되기도 하고 탈락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미디어가 행한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2007년 대선에의 잠재적 후보군들에 대한 미디어의 편향성에 대해 검토하며,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러한 편향성 시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강구해보고자 한다.

II.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미디어의 편향성 쟁점들

우리나라에서 전개된 역대 대통령 선거들에서 미디어에 의한 편향성 시비는 항상 있어왔으며, 선거가 끝난 이후에 '부정선거'라며 선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왔다. 초기에는 미디어에 의한 편향성 보다는 정권의 관여로 통칭되는 '관권'과 부정한 자금에 의한 영향력으로 칭하게 되는 '금권' 개입으로 인한 편향성이 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미디어의 노력에 의해 관권과 금권에 의한 선거의 영향성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미디어 자체에 의한 편향성은 보다 더 크게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미디어에 의한 편향성 시비는 미디어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미디어 종사자들 역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이러한 편향성 시비를 잠재우려 하기 때문이다. 신문이나 방송의 종사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보도에 의한 편향성의 시비에 대처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편향성 시비는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신문에 있어서 후보자들에 대한 수량적 할당 및 지면의 배치 등에 있어서 균형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텔레비전 방송 보도에 있어서 후보자들에게 할당되는 순서와 수량의 배치 등에 대해 균형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후보자에 대한 편향성 시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미디어의 보도에 대해 만족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특히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는 미디어 보도에 있어서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미디어의 편향성 여부

는 수량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질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다. 또한 인상적이고 감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디어 보도에 있어서 후보자에 대한 편향성 시비를 논할 경우, 질적인 분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1. 제14대 대통령 선거 보도 분석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보도의 편향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당시 언론들의 보도에 후보자들 사이의 편향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백선기, 1997, pp. 167 - 192 참조). 이들 연구에서는 보도에서 나타나는 후보자들에 대한 편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인 편향성을 파악해 낼 수 있는 기호학적 방법들을 활용하였다.

첫째, 제14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유세 기간(1992년 11월 20일)부터 투표 기간(1992년 12월 18일)을 거쳐 당락이 드러난 기간(1992년 12월 20일) 동안의 신문보도(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등)들에 대해 기호학적인 분석을 한 결과, 당시 지면 배치와 수량 등에 있어서 후보자들에 대한 편향성이 발견되었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는 제1정당인 민자당, 제2정당인 민주당, 제3정당인 국민당 등과 여타의 소수 정당들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우리 신문들의 보도는 대체로 민자당, 민주당 및 국민당 순으로 주요 기사 항목으로 다루었으며, 신문 지면의 배치 및 사진의 게재 등에 있어서도 이러한 순서가 유지됐다. 이 외에 군소 정당들이나 이들의 후보자들은 아주 적게 취급되거나 특정한 날에는 전혀 취급되지도 않았다. 또한 신문의 지면 배치에 있어서도 주요 위치에 배치된 적도 없으며, 이들에 대한 사진의 게재도 거의 없었다. 다만 한겨레신문만이 가끔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입후보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보도하긴 하였으나, 이도 중요하게 취

미디어의 선거보도에 있어서 편향성 여부는
수량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질적 분석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사안

급한 것은 아니었다(백선거, 1997, p.178 참조).
그런데 입후보자들에 대한 편향 보도는 신문에 따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당시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들로 제1당인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 제2정당인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 제3정당인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였다.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신문 보도에 대해 계열체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각각의 신문들이 자신들의 선호도에 따라 특정 후보자에게 호감으로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도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비호감이 가는 후보자들은 부정적으로 보도하였음이 밝혀졌다(백선거, 1997, pp.182 - 185 참조).

〈표 1〉 서울신문의 계열적 분석

김 영 삼	김 대 중	정 주 영
국민갈구 부응, 시대적 요구의 적극성, 여론에 민감한 정치	국민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	국민기만
단호한 의지, 특유의 추진력, 설득력, 포용력	감정적, 막말	감정적 태도
대선공약 남발하지 않을 것임	선심성 공약, 유언비어성 발언	즉석 발언, 충격적 발언
정치력의 실체	정치 지도자의 도리는 아니다	신뢰감 부족
의회정치의 산물, 순수 민간인 출신		현대와 밀착, 경제인 출신 왕회장
현실인식	과거, 지역주의	
강력한 실천의지	미지수	

(출처: 백선거, 1997, p.182)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당시의 서울신문은 제1정당인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에게 보다 호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제2정당인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와 제3정당인 국민당

의 정주영 후보에게는 비호감의 기호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즉, 김영삼 후보에게는 ‘국민갈구 부응’, ‘시대적 요구에 적극성’, ‘단호한 의지, 특유의 추진력, 설득력 및 포용력’, ‘의회정치의 산물’, ‘순수 민간인 출신’, ‘강력한 실천의식’ 등의 긍정적인 기호들로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받게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김대중 후보에게는 ‘지역주의에 근간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으며’, ‘선심성 공약과 유언비어성 발언을 남발하고’, ‘감정에 치우치고 막말을 하며’, ‘국민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며’, ‘정치지도자의 도리는 아니다’ 등의 기호들을 근간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다. 그리고 정주영 후보에게는 보다 부정적인 기호들을 중심으로 김대중 후보보다도 더욱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성되도록 하고 있다. ‘경제인 출신인 왕회장’, ‘현대와 밀착’, ‘즉석 발언과 충격 발언을 일삼고’, ‘감정적인 태도를 자주 보여’, ‘신뢰감이 부족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등의 기호들이 바로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

〈표 2〉 조선일보의 계열적 분석

김 영 삼	김 대 중	정 주 영
김영삼 총재 집권으로 상당한 변화	속 얕이, 대선전략 전면 수정	통일된 목소리 내지 못함
결연한 의지	대여 양면 압박전술, 지자체 협공 노린다	초조함
단심	스마일 퇴색, 물거품	
진퇴분명	상당한 집착, 정면돌파	경제
지난날 피해자	강경대응, 강수	
반독재투쟁, 군정시비 종식		

(출처: 백선거, 1997, p.183)

조선일보 역시 제1정당인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에게 긍정적인 기호들을 활용하여 우호적인 이미지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2정당인 민주당 후보인 김대중 후보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기호들을 중심으로 활용하여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제3정당인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에게는 이들 두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적으며 정통의 정치인이 아닌 경제인의 대통령직에 대한 도전에 다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김영삼 후보에게는 ‘반독재 투쟁’을 주도해 왔고 ‘군정에 대한 시비를 종식시킬 후보자’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결연한 의지’를 지니고 있고 ‘한 가지 마음을 먹으면 변하지 않으며’, ‘진퇴를 분명히 하는 정치인’이라는 기호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영삼 총재가 집권하면 상당한 변화가 야기될 것’이라는 보다 강한 호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에 반해,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 ‘강경대응’, ‘강수’ 및 ‘정면돌파’를 주로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대여양면의 압박전술을 주로 사용하고’, ‘지자체 협공을 노리고 있으며’, ‘대선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속얹이’를 하는 후보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뉴 DJ 플랜’이 실현성이 없고 ‘물거품’ 되었으며 회의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정주영 후보에게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긴 하나, 정책이나 비전 제시에 대해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두 후보자들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어 ‘초조해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한겨레신문의 계열적 분석

김 영 삼	김 대 중	정 주 영
표리부동	원칙 고수	폭탄 선언
말 바꾸기 예사	논리, 설득	거친 표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탄압받은, 즉 피해자	회장
원칙을 저버리는 사람	카리스마, 외경심	약육강식
집요, 파괴	온화, 미소	음흉, 나라를 결판 냄
무모한 대담성	압도	독재
쌈씨가 크다	치밀하다, 꼼꼼하다	철저한 계산

(출처: 백선기, 1997, p.184)

그런데 한겨레신문은 이들 두 신문들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서울신문과 조선일보에서 호감을 가지고 접근했던 김영삼 후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그 반대로 이들 두 신문들에서 부정적이면서 비우호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면서 우호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주영 후보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 기호들을 활용하여 강한 부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치 세력으로 부터 탄압을 받아왔던 정치인’이며 ‘피해자’이고 ‘원칙을 고수하며’, ‘논리가 설득적이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으며’, ‘상대방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으며 ‘치밀하고 꼼꼼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김영삼 후보에게는 ‘표리부동한 정치인’, ‘말 바꾸기를 예사로 하는 사람’, ‘원칙을 저버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집요하고 파괴적이고’, ‘무모할 정도로 대담’하며, ‘쌈씨가 큰’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신문보도 분석 결과
신문들 사이에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편향성이 있었음이 명확히 드러나

그러면서 정주영 후보에 대해서는 ‘희장’으로 불릴 정도로 ‘독재적’이고, ‘거친 표현을 많이 쓰며’, ‘폭탄 선언을 자주 하고’, ‘철저하게 계산 하에서 움직이며’, ‘약육강식의 철칙을 신봉하고’, ‘음흉하여’, ‘나라를 결판 낼’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들에 대한 신문 보도의 편향성을 분석해 보면, 신문들 사이에 후보자들에 대한 편향성이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즉, 서울신문은 제1정당인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에게 ‘우호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긍정적’으로 보도했으며, 제2정당인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는 ‘비우호적’인 이미지 하에서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제3정당인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에게는 ‘부정적인 인간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비우호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조선일보는 김영삼 후보에게는 ‘아주 우호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김대중 후보에게는 반대로 ‘아주 비우호적’이며 ‘강력하게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제3정당인 정주영 후보에 대해서는 서울신문에 비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제2정당인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아주 우호적’인 이미지 하에서 ‘강력하게 후원’하고 있으며, 제1정당인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에게는 ‘아주 비우호적’이면서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제3정당인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인간적 면모’를 강조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표 4〉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신문들의 편향성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김영삼 후보	우호/긍정	매우 우호/ 매우 긍정	매우 비호감/ 매우 부정
김대중 후보	비호감/부정	매우 비호감/ 매우 부정	매우 우호/ 매우 긍정
정주영 후보	비호감/부정	무관심/부정	매우 비호감/ 매우 부정

둘째,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후보자에 대한 편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에는 방송보도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주요 분석대상으로는 KBS-1 TV와 MBC의 ‘9시 뉴스’ 및 SBS의 ‘8시 뉴스’를 선정하였으며, 분석 기간은 선거 공고일인 1992년 11월 20일부터 선거전날인 12월 17일까지의 28일간으로 하였다. 그리고 주요 분석 사항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보도 할당량’, ‘후보자에 대한 영상처리와 음성처리’, ‘후보자에 대한 앵커와 기자 멘트’, ‘후보자의 육성인용과 기자멘트’ 등에 있어서 편파성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백선기, 1997, pp. 193-223 참조).

먼저,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텔레비전 방송 보도에 있어서 후보자들에 대한 보도의 할당량은 수량에 있어서 차이가 드러났으며, 그 순서로는 제1정당인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가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2정당인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 제3정당인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 순으로 나타났다. 당시에 한 시민단체에서 방송보도의 후보자별 보도시간을 모니터 한 결과에서도 이는 잘 드러나고 있다. 서울 YMCA의 ‘좋은 방송을 위한 시청자 모임’의 모니터에 의하면, 김영삼 후보 129.50초, 김대중 후보 107.20초, 정주영 후보 98.50초 등의 순서로 할

당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방송과 시청자, 1993, p.24/ 백선기, 1997, p.201에서 재인용).

두 번째는 텔레비전 보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도 기법으로는 텔레비전 매체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기인하는데, 이른바 '화면의 영상처리 방식'과 '앵커와 기자들의 멘트'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상당한 질적 분석의 수준을 요구하며, 단순한 수량적 비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차별이나 편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상기법의 차이로는 '후보자들이 얼마나 자주 클로즈-업 되었는가'라는 유목으로 분석해 본 결과, 김영삼 후보가 김대중 후보나 정주영 후보에 비해 보다 자주 클로즈-업 되었으며, 얼굴 전체가 화면에 가득하게 나오는 'one-shot 클로즈-업' 역시 김

영삼 후보가 여타의 두 후보자들에 비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서울 YMCA의 모니터 결과 클로즈-업 횟수로는 김영삼 후보 5.93회, 김대중 후보 4.89회, 정주영 후보 2.29회 순으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드러났다(방송과 시청자, 1993, p.25/ 백선기, 1997, p.202 재인용). 그리고 선거보도감시 연대의 모니터 분석의 결과, one-shot 화면 처리 역시 김영삼 후보 3.1회, 김대중 후보 2.2회, 정주영 후보 1.9회 순으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선거보도감시연대, 제47차 모니터보고서, 1993/ 백선기, 1997, p.203에서 재인용).

그 다음으로는 후보자들이 선거 유세를 함에 있어서 텔레비전 보도가 이를 어떻게 영상화면으로 처리하고 그들의 육성을 인용하였는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후보자들 사이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표5> 참조)

<표 5> 세 정당 입후보자의 화면구성, 육성처리 및 조화

입 후보자	화 면 구 성	육성처리 및 조화 여부
김 영 삼 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 클로즈업되고, one-shot으로 얼굴 전면 강조됨 • '친근감' 있는 모습이나 '확신'에 찬 모습 자주 보임 • 지지자들의 환호하는 모습 잘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성발언: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됨 • 공약내용이 일관되게 '정리'되어 나타남 • 청중의 지지나 환호하는 소리가 명료하게 제시됨 • 입후보자와 청중의 호흡이 연계를 보여줌
김 대 중 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로즈업되기는 하나, 뒤에 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방영되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는 장면이 많이 나타남 • 걸어오는 모습(한쪽 다리의 불편함이 보임)과 뒷모습이 자주 나타남 • 유세장 청중수가 많게는 보이나, 화면에 '딱 찬' 모습은 자주 안 나타남 • 청중들의 '경청'하는 모습이 자주 보임. 즉 '환호'보다는 '경청'이 모습이 자주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성발언: '명료'하게 제시 됨. 그러나 끝부분이 '허려지는' 말이 많음 • 공약 내용이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음 • 청중의 지지 소리보다 '조용한' 모습이 자주 제시됨 • 입후보자와 청중의 호흡이 조화롭지 않아 보임 • 김대중 후보의 '청유형' 질문에 대한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음
정 주 영 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로즈업되기는 하나, 뒤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방영됨 • '공격적인' 모습과 '비난 섞인' 모습 자주 방영 • 유세장 장면은 거의 대부분 한쪽의 '빈 공간'을 보여줌 • 청중들의 '무관심한' 표정이나 '부산함'을 자주 나타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성발언: 대체로 명료하나 끝부분이 정확하지 않음 • 공약내용이 다양하고 서로 연계되지 않음을 보여줌 • 청중의 지지나 환호소리가 자주 '끊어지는' 날이 많음 • 입후보자와 청중과의 조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정주영 후보의 '양 김' 비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으므로, 청중과의 조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출처: 백선기, 1997, p. 204)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방송보도 역시
다양한 기법을 통해 대선 후보들에 대한
편향성 드러내

김영삼 후보는 '친근감' 있는 모습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으며, 유세장 모습은 청중들이 가득 찬 모습과 더불어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으로 구성되었다. 화면과 더불어 인용된 육성언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공약내용'의 일부가 잘 정리되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청중들이 환호하는 모습으로, 화면과 육성 및 청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로 제시되었다.

김대중 후보는 여러 사람과 더불어 제시되는 화면을 통해 후보자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양태는 아니었으며 자주 후보자가 불편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유세장 모습도 청중 수가 많게는 보이나 '꽉 찼다'는 인상은 심어주고 있지 않으며, 청중들이 차분히 경청하는 모습은 보여 주었으나 환호하는 모습은 적었다. 그리고 후보자의 육성발언도 끝부분이 흐려지면서 명료하게 인용되지 않았으며, 공약 내용이 일관되게 정리되지 못하였고, 청중들의 환호하는 모습보다는 경청하는 모습을 주로 내보냄으로써 후보자의 주장이나 공약에 호응하고 환호하기 보다는 경청하면서 파악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른바, 후보자의 모습, 육성발언, 청중들의 반응이 서로 조화롭지 못한 상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정주영 후보는 이들 두 후보자들에 비해 여러 가지 점에서 부족하게 취급되었다. 후보자의 모습을 클로즈-업하기는 하였으나 배경에 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 후보자를 뚜렷하게 각인시킬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상대 후보자들을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모습'을 자주 내보내어 '공격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유세장 장면 역시 화면의 한 부분은 빈 공간으로 구성하여 청중들이 다소 부

족하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청중들의 모습도 '무관심하거나',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청중들이 별반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특히, 후보자의 육성발언은 자주 끊기고 일관되지 않아 공약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았으며 주로 여타의 두 후보자들에 대한 '공격'에 주목함으로써 정책이나 비전제시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나아가 청중들의 환호 소리 역시 자주 끊기어 후보자와 청중의 조화로운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후보자, 육성발언 및 청중의 연계가 조화롭지 않았으며 일관되지도 않았다.

한편, 후보자들의 육성발언과 영상화면의 조화와는 별개로, 육성발언과 이에 대한 기자의 '마무리 멘트'와의 조화가 또 하나의 중요한 분석기준이 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세 개 방송사 공히 김영삼 후보의 '육성발언' 인용 시간이 길었고, 육성발언의 내용도 명료하였으며, 이에 대한 현장기자의 '마무리 멘트'도 서로 간의 연계가 조화롭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백선기, 1997, pp.208-209 참조: <표6> 참조).

<표 6>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김영삼 후보의 경우는 육성발언에서 주요 정책이나 비전제시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현장기자의 설명이나 해설이 이를 뒷받침하는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육성발언의 의미가 명료하게 전달되게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김대중 후보의 육성발언은 주로 청중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들의 반응을 유도하는 '청유형'과 '청중 소구형'인데 반해, 현장기자의 마무리 멘트는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제시와는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는 양태로 구성되어 있어,

〈표 6〉 입후보자의 '육성인용'과 '기자멘트'의 차별

방송국	후보자	보도시간	육성인용	기자리포트
KBS-1TV	김영삼	2분 25초	"최소한 인사정책에서만이라도 지역차별을 반드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감정 해소를 역설했다.
	김대중	1분 58초	"현실을 미국 청년들과 바꾸세요. 여러분이 최고 지성인 아닙니까." "저하고 악수하면 재수 있어요."	대학교 원서접수 창구를 찾아 수험생과 학부모를 격려했습니다.
	정주영	1분 22초	"여러분의 후손과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은 틀림없이 정주영 후보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새 지도자를 뽑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 했습니다.
MBC	김영삼	2분 20초	"제가 여러분의 사랑과 도움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는 이 땅에 지역감정이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차별 없는 인사정책과 지역 개발 공약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대중	2분 03초	"학교에서 몇 등이나 해요?" "합격하면 전원이 졸업할 수도 있고, 합격 못하면 졸업 못할 수도 있고..."	재수생만 양산하는 현재의 입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대학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주영	1분 52초	"우리 통일 국민당은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의 뜻에 맞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모든 것을 개발해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시대는 지난 만큼 현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이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SBS	김영삼	2분 28초	"그것은 인사의 소신과 낙후 지역의 개발입니다. 또 하나는 장기적 관점에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국민정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역감정 해소와 낙후지역의 균형개발공약을 제시, 지역갈등이야말로 고질적인 한국병으로 진단, 장기적인 처방책을 제시했습니다.
	김대중	1분 47초	"문호를 열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시켜주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졸업 안 시키면 된다."	대학 관계자들에게 대학입시를 덜기 위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정주영	1분 34초	"여러분 후손이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경상남도 시민이라고 그걸로 만족하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에게 마음을 넓히고 대한민국의 인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후보들이 농사를 지어 봤는가, 나만이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 이런 주장으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출처: 백선거(1997, pp.208~209/선거보도 감시 연대회의, 11월 26일 KBS, MBC, SBS의 42차 모니터 자료 재인용)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차별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언론보도 역시 이를 반영하게 돼

후보자의 육성발언의 의미가 잘 전달되고 있지 않다. 정주영 후보의 육성발언은 주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언적'인 양식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마무리 멘트는 서로 간에 조화롭게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의 특성이나 개인적 소망과 결부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제15대 대통령 선거 보도 분석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들어오게 되면 제14대에서와 같은 특정 후보자들 중심의 편향성 보다는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차별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오랜 세월 동안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의 집권에 대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으며, 시민단체들의 정치 및 선거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진보 진영'의 등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들 두 세력 사이에 본격적인 헤게모니 쟁탈전이 시작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언론은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달리 정당 및 이념 중심으로 구분되게 되었고, 이러한 구분 속에서 각각 자신의 지지 후보자들을 지원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신문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이념적 속성에 의해 자신의 이념과 맞는 정당이나 정당 후보자를 지원해 왔고, 이에 대해 사회적인 이해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왔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들에서도 신문이 특정 후보자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적으로 '편집 방향'을 명료하게 밝히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신문이 선거 선진국들과 같이 자신의 지지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드물고, '객관보도'와 '공정보도'를 근간으로 하여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선거 상황이나 결과들에 대해 학자들의 연구나 분석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신문들이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에 맞추어 정당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지 내지 지원해 왔는가를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보수 이념'을 대변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조·중·동'의 한 측과 '진보 이념'을 대변하는 '한겨레신문' 등의 또 다른 측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사이에 여타의 신문들이 놓이면서 사안들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들을 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부 신문들은 기존의 정치적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바뀌면서 자신들의 지지 정당이나 후보자도 바꾸어 가는 역사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 신한국당의 이회창 후보, 진보 세력을 대변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네 번째로 도전하는 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와 신한국당 내의 경선에서 패배하고 국민신당을 창당하여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이인제 후보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신문들의 보도는 제14대 대통령 선거 때와는 달리 어느 정도 특정 신문이 특정 후보자를 지원하는 연계의 관계가 보다 명료하게 드러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제14대 대통령 선거 때와 같은 기호학적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질적인 차이를 드러낼 필요성이 많이 약화되었다. 학계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특정 신문이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

고 있다는 정도는 알게 되었다. 보수 신문들은 보수적 경향을 지닌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며, 진보나 개혁적 이념을 지닌 신문들은 진보적 성향을 지닌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제15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신문 보도의 중요성보다는 텔레비전 보도의 중요성이 보다 더 배가되는 시기가 되어 갔으며,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미디어 선거'로 대변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는 미디어의 선거 개입의 '꽃'인 후보자들 사이의 '텔레비전 토론'이 최초로 시도되게 되었고 이후에는 하나의 미디어 선거 정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텔레비전의 선거 개입과 그에 따른 영향은 제13대 대통령 선거 시는 물론이고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텔레비전 영향력은 신문 보도의 영향력에 비해서는 크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제15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텔레비전 토론'이 가미되면서 텔레비전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대되었고, 그에 따라 텔레비전이 특정 후보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하는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이 되어갔으며, 텔레비전 보도의 편향성 내지 공정성은 끊임없이 선거 보도의 쟁점이 되게 되었다.

특히 텔레비전은 국가의 자산인 '전파'를 활용하여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호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신문의 경우는 소유주의 경향이나 편집 방향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들을 지지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양해되거나 이해되는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텔레비전의 경우는 이 같은 편향성이나 공정성 훼손은 용납되지 않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텔레비전 방송들은 집권 여당이나 후보자들에게 다소 우호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여타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는 다소 냉정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KBS의 경우 국가 기간방송이라는 기치가 무색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치우친 경향을 보여 주어 비난을 받은 바도 있다. 이외에도 MBC와 SBS의 경우도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텔레비전의 편향성 내지 공정성 시비는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시각에 의한 평가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가 아주 힘들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지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다소 소홀하게 취급당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경쟁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보다 더 많이 취급되고 우호적으로 다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당시의 텔레비전 방송들은 대체적으로 후보자들을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노력하였으나, 텔레비전 토론의 경우와 이를 다시 보도하는 연계에서 볼 때, 후보자들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다소 간의 편향성은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신한국당의 후보인 이회창 후보에게는 감사원장, 국무총리 및 정당대표를 역임한 경력으로 볼 때 당시의 경제난국의 책임을 부각시켰고 아들의 병역에 대한 비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에게는 대통령 선거 불참을 선언했다가 다시 대선에 출마한 점과 정경유착적 성격을 지닌 '20억 + α수수료'를 집중 취급하였으며, 국민신당의 이인제 후보에게는 '경선 불복'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백선거, 2003, pp.273 - 283 참조).

이에 대해 어느 부각점이 보다 더 큰 영향을 미

제15대 대통령 선거 시부터는 언론의 보도 방식이
‘긍정형 보도’에서 ‘부정형 보도’로
바뀌기 시작해

쳤는가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다를 수 있으나,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견해에는 대체로 수긍하게 된다. 물론, 각 정당이나 입후보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텔레비전 보도가 편향되어 있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판정은 내리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명백한 근거 자료들을 근간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방송사나 관계자들 역시 수긍하기 힘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개최된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에서 학자들과 텔레비전 선거 담당 책임자들과의 논의는 항상 합의를 도출하기 힘들고, 설전의 양상으로 전개되며, 서로 간의 불신만이 가득한 채 끝나게 된다.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제15대 대통령 선거 시의 언론 보도의 편향성은 신문의 경우는 이제 보편적으로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후원 내지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고, 보도의 편향성 논의는 텔레비전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텔레비전 보도에 있어서 기계적인 평등성과 그에 따른 공정성은 어느 정도 지켜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편향성이 존재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회창 후보에게는 ‘경제 책임론’과 ‘아들의 병역 문제’가 아주 크게 부각되었고, 김대중 후보에는 ‘노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의혹 받는 20억+ α수수설’과 ‘이념 논쟁’이 쟁점화 되었으며, 이인제 후보에게는 ‘경선불복’이라는 점이 약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제 텔레비전 보도는 이전의 선거 보도의 양태

와는 다른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전의 경우 우리 언론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장점들을 주목하여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제15대 대통령 선거 시부터는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약점을 부각시켜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이전의 보도 방식이 강점과 장점들을 어떻게 부각시키는가 하는 점이 주요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약점을 보다 크게 부각시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가 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 되게 되었다. 우리 선거 보도 경향이 ‘긍정형 보도(positive coverage)’에서 ‘부정형 보도(negative coverage)’로 바뀌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제16대 대통령 선거 보도 분석

제16대 대통령 선거 역시 정당 및 후보자들에 대한 우리 언론의 편향성 시비와 그에 따른 공정성 논란이 심대했던 선거였다. 신문의 후보자들에 대한 편향성은 일반인들 보다는 후보자 당사자들에 의해 크게 제기되었으며, 텔레비전 보도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정당이나 후보자들 측에서 크게 문제를 제기한 선거전이였다.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의 삼파전이였다. 이 당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집권 정당인 김대중 정권의 후원을 받고 있었으나 국회에서는 제1정당이 되지 못하였고,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야당의 후보자였으나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갔으며 국회 제1정당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기는 하였으나 지지 기반 및 세력은 미미한 상태였다. 따라서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실제로는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 사이의 '2파전'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의 보도 양태로는 훗날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최초로 시작한 정책이 신문과 관련한 언론정책이었으며 기존의 언론구조를 바꾸려고 한 것일 정도로 신문의 편향성이 심했다고 평가되는 보도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노무현 정권과 '조·중·동'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는 물론 노무현 후보자 측의 평가였으며, 그들이 당선됨으로써 이를 실천화시키게 된 것이지, 이에 대한 평가가 학술적으로 내려진 것은 아니었다.

신문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편향성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주 극심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문의 경우 어느 정도의 편향성은 용인되고 있는 경향이다. 물론 우리의 신문들도 미국이나 유럽의 신문들처럼 자신의 지지 정당이나 후보자들을 밝히면서 보도하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보겠는데, 우리의 신문들은 아직 이러한 선언을 공식화시키지는 않고 있다. 외양적으로는 객관보도와 공정보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중적인 경향'은 언론의 윤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별로 옳바르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우리의 언론의 경우 언론인들이 정치인으로 변모하는 경우가 많다. 유명 기자나 논설위원 및 방송의 보도 진행자나 해설자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공식적으로 지지하거나 후원하다가 그 후보자가 당선되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심대한 현상이다. 제15대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러한 경향이

크게 두드러졌었다(백선거, 1999, pp.145 - 213 참조).

당시의 신문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구분되었으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보수 성향을 근간으로 보수와 우익의 경향을 보이는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였으며, 한겨레신문 등은 개혁과 진보를 표방하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였다. 그 방식은 자신의 지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장점들을 부각시키고 약점들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중적인 측면에서 편향성을 보여주었다.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는 '강직함'과 '울곧음'을 강조하였고 상대적으로 '경제책임론'이나 '아들 병역비리'는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하였으며,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는 '신선함'과 '자신감'을 강조하였으나 'DJ 정권의 계승자'와 '거칠고 투박함'을 부정적으로 부각시켰다. 본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조선일보는 노무현 후보나 권영길 후보를 공격하면서 역설적으로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였고, 한겨레신문은 이회창 후보와 권영길 후보를 공격하면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다는 점이 밝혀졌다(백선거, 2004, pp.381 - 384 참조).

제16대 대통령 선거 역시 신문의 영향력보다는 텔레비전 방송의 영향력이 배가 된 선거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정되는 과정도 드라마틱한 텔레비전 토론과정을 거쳤으며,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 후보 경쟁에서도 텔레비전 토론이 결정적으로 기여하였고, 정당 간의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이회창 후보와 경쟁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텔레비전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텔레비전 보도는 후보들에 대한 기계적인 평등성은 어느 정도 지켜져 이에 대한 논란은 별로 없었으나, 암묵적이거나 드러나지 않은 불평등성이 존재하여 커다란 쟁점이 됐다. 특히, 이 당시의 선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서 텔레비전 선거 보도는
지지하지 않는 후보와 연계된 사안 등을 부정적으로 부각,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교묘한 방식 사용해

거는 후보자들에 대한 음해성 폭로가 많았는데, 텔레비전 방송이 이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함으로써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후보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회창 후보의 경우 '아들 병역 비리', '금품 의혹', '북한과의 적대 관계로 인한 의혹' 등 이른바 '금품', '북풍', '병풍'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의혹 사건들에 대해 텔레비전 방송들이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그대로 여과 없이 보도하게 되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다. 훗날 이들 세 가지 사안들 모두 법원에서 '무혐의'로 처리되었으나 선거에서 이미 패배한 결과를 돌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선거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이른바 '폭로보도'에 대해 텔레비전 방송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후보자에 대한 편향성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나, 특정 후보자에게 연계되어 있는 이슈나 사안들을 부각시키거나 확대 보도함으로써 간접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선거 양상은 이회창 후보 대(對) 노무현 후보의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이회창 후보 대 반 이회창 후보'의 대결 구도로 전개되었으며,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것이 아니라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지 않은 것'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회창 후보와 연계되는 주요 쟁점들을 끊임없이 부각시켰고, 상대방의 폭로들에 대해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이회창 후보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 대신 반사 이익으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와 유우현이 2002년 12월 3일부터 대통

령 선거일을 앞둔 12월 18일 사이에 텔레비전 토론과 이에 대한 언론보도의 경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MBC 방송은 이회창 후보와 권영길 후보를 공격하면서 상대적으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KBS는 노무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를 공격하면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백선거, 2004, pp. 373 - 384 참조).

이제 텔레비전 보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정하여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된 사안이나 쟁점들을 부정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자신의 지지 후보자를 지원하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보도의 편향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교묘한 방식이라고 하겠다.

III.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편향성 시비 우려

2007년은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서 벌써부터 우리 언론은 이번 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작년 말부터 각종 여론조사들을 통해 예비 후보자들을 부각시키고 있고, 이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 유력 후보자들이 스스로 후보자 대열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전의 선거 양상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집권 여당의 후보자는 등장하지 않고 혼미한 상태이며, 여당 자체가 해체되는 상황에 빠져 있어 어떻게 후보자를 도출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있다. 둘째, 이

와는 상대적으로 야당인 한나라당은 강력한 대선 후보자들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고, 이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셋째, 순수 정치인이 아닌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나 명망가들이 주변의 권유를 통해 각 정당의 대선 경쟁에 참여하려 하고 있거나 중도 탈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행정가였던 고건 전 총리를 중심으로 정치세력화를 시도 하던 기도가 중도에 포기되었고, 서울대 전 총장이었던 정운찬 교수가 세력 모색을 시도하다가 중도에 탈락한 것이 아주 좋은 예이다. 이제는 정통 정치인이 대선 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한 인물이 세력을 모아 움직이면서 정치인으로 변모하는 시대가 도래 한 것 같다.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나 본 연구자는 이들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언론들이 보도에 있어서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 연구를 해오고 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본 연구는 신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정당의 대선주자들이 결정되면 텔레비전 보도에 대해서도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대선 상황이 전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나, 현재까지 드러난 대선주자들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도 편향성이 일어나 공정성의 시비가 된다면 미연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결과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대선 후보로 유력한 후보자들로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독자세력을 모으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를 들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우리 언론 보도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및 경향신문의

기사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시기는 2007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조선일보의 경우는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이명박-박근혜-손학규의 순서로 보도하고 있으며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해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호감이나 우호적인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표에게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직 이들 두 대선주자들에게 명확한 우호 표시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에게는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정서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크게 다루지도 않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후에는 아주 냉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 비우호적이며 부정적인 보도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의 정책과 개인적 행태들 모두를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비해서는 우호적으로 보도하며 가끔씩 호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명박과 박근혜 양 대선후보들을 함께 묶어서 부정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탈당에 대해서도 그다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범여권의 단일 후보'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정책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경향신문은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면서 '진보 성향'의 이념성을 지니게 되었는데, 예상했던 바와 같이, 보수 성향을 보이고 있는 대선주자들에게 비우호적이며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묶어서 공격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이들의 정책이나 비전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열린우리당에

2007 대선에서 언론이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언론인 정신을 바탕으로 전문가적인
능력과 자세, 균형적 감각 갖춰야

대한 비판과 비난은 자제하는 한편 범여권 후보의 등장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에게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비우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소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우리 언론의 2007년 대통령 선거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될 편향성에 대해 살펴 본 결과,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IV. 결 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전개되었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우리 언론들이 취했던 공정성 시비,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들에 대한 편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 언론들이 취했던 보도 태도들을 대통령 선거가 제대로 실시되었던 제14대 대통령 선거부터 제16대 대통령 선거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았고, 최근의 대선주자들에 대한 언론 보도의 경향들도 살펴보았다.

이들 논의들을 근간으로 할 때, 우리 언론보도는 신문과 텔레비전 보도에 있어서 서로 공유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서로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개되는 부분들도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신문이나 텔레비전은 선거전을 보도함에 있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편향성의 시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분에서는 여전히 편향성 시비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먼저, 신문의 경우는 신문의 이념적 경향에 따라

우호적으로 취급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이는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서 볼 때 하나의 전형으로서, 비난하기 보다는 우리의 신문도 자신의 지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 본다. 신문의 경우, 이러한 방향성을 지니게 되면 독자들의 수가 반감할까 우려하게 되는데, 그보다는 독자, 특히 유권자의 명확한 판단을 유도하고 자신의 신문을 그러한 관점에서 선택하게 하는 현명함을 지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독자들은 어느 신문이 어떠한 이념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보수 성향의 신문이며,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진보 성향의 신문인 것을 알고 있는 것과 같다.

텔레비전의 경우는 미디어 자체의 속성과 성격에 의해 신문과 같이 자신의 지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거명할 수도 없고 공식화 할 수도 없다. 국가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역대의 대통령 선거들에서 우리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우호적으로 보도하고 긍정적으로 취급하였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더욱이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신문의 영향력을 능가하면서부터는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같은 텔레비전 보도의 편향성 시비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나아가 이제 텔레비전 보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정하여 지지하거나 후원을 보내기 보다는

일반 보도나 텔레비전 토론에 대한 보도들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의 단점이나 약점들을 부각하거나, 그것들에 대한 폭로들을 사실 확인 없이 확대 보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신문이나 텔레비전 방송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거나 후원한다면 어떠한 통제로도 이를 막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이제는 명확하거나 노골적인 지지나 반대는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편파성이란 기준이 다소 상대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지지자와 반대자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리하여 편파성 시비와 그로 인한 공정성 시비는 끊임없이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시비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안은 언론인들이 언론인의 전문가적인 자세와 윤리적인 자세를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다. 선거를 다룸에 있어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해관계에서 보도를 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선거를 다루었으면 한다. 신문의 경우도 지나치게 자신의 이념에 맞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이나 국민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데 국가 소유의 전파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해주고 긍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모든 보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같은 사안을 보도함에 있어 균형적인 감각을 지니고 보도하면 되는 것이다.

특정 이슈나 사안에 대해 긍정과 부정, 우호와 비우호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모두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보도하면 된다. 본 연구자가 끊임없이 주장해 온 대로, 언론 보도의 기본 원칙을 '객관보도'나 '공정보도'라고 했을 때 이를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 실현방안은 '사실성 확보'와 '균형성 구축'이며 이 두 원칙만 확실하게 지켜내면 '객관보도'와 '공정보도'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사실성을 확보하여 오보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균형성을 확보하여 편향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언론들이 편향성 시비나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철저하게 언론인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며, 전문가적인 능력과 사실을 확인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쟁점 사안들에 대해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이를 지면이나 방송에서 지켜내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우리 언론인들의 노력과 분발에 큰 기대를 걸어 본다. □

〈참고문헌〉

- 강준만(1992). 대선 TV토론의 정치학. 『월간사회평론』, 제 92권 7호, 62-65.
- 김영식(2000). 우리나라 신문의 선거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제15대 대선을 중심으로. 『2000한국언론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 자료집』, 189-206.
- 김정기 외(1999). 『한국 언론의 병리』,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중배(1992). 정치에 재갈 물리지 말아야. 『월간 사회평론』, 제92권 11, 12호, 87-90.
- 김진영(2006).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 관한 미디어의 차별적 효과와 미디어 이용, 대인커뮤니케이션, 투표참여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2호, 113-146.
- 김형준(2003). 미디어와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평가. 『한국정치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94-114.
- 박건식(2007). 대선 후보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인물과 사상』, 제106호, 126-135.
- 박재영(2005). 공정성의 실천적 의미: 문화일보 2002년 대선 보도의 경우. 『한국언론학보』, 제49권 2호, 167-195.
- 백선기(1995/1997). 『보도의 기호학』. 성균관대 출판부.
- _____(1997). 『한국 선거보도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1999). “언론의 이해 상충 관계: 언론인의 언론업무 수행 시에 발생하는 이해 상충적 현상을 중심으로”. {김정기 외(1999). 『한국 언론의 병리: 21세기를 위한 분석과 대안』.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2003). 『텔레비전 영상 기호학』. 미디어24.
- _____(2004). 『한국 언론보도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 신호창(1993). 대선 캠페인 분석과 언론통치의 악순환. 『저널리즘비평』, 제9권, 79-87.
- 이강형(2004). 대통령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이 후보 이미지 변화에 미치는 효과: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 패널 조사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8권 2호, 346-372.
- 이상길(2003). 미디어는 정치를 잠식한다: 여론조사 보도의 그늘. 『당대비평』, 제21호, 113-128.
- 이준웅(1998). 후보 이미지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인지론적 설명: 15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3권 2호, 243-284.
- 이효성(2003). 대중매체와 인터넷 이용이 16대 대선 관심과 후보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한국방송학보』, 제17권 4호, 7-36.
- 임동욱(1998). 광주·전남 지역 언론의 15대 대선 보도: DJ 선생을 대통령으로. 『저널리즘비평』, 제23권, 50-53.
- 탁진영(2005).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텔레비전 정치광고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미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제16권 1호, 7-35.

UCC 선거와 언론의 역할

반 현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교육과 조
- 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미 텍사스 대학 오스틴 언론학 박사
- KBS 열린채널 운영위원,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장, 경인방송 iTV 게릴리포트 운영위원장 등 역임
- 저서 및 논문 : 『온라인 저널리즘 상황에서의 쌍방향성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오프라인과 온라인 저널리즘의 현황 진단과 전망』, 『기상 공간에서의 공공 저널리즘 : 다른 전자 민주주의 가능성』 외 다수

1. 문제제기

지난해 말 미국의 시사주간지 <Time>이 올해의 인물로 “당신(YOU)”를 선정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UCC 즉, 이용자 제작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가 새로운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UCC 이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의 74%가 월 1회 이상 UCC를 이용하거나 보고 있으며, 과반수인 51.1%가 직접 UCC를 생산한 적이 있고, 35.2%는 월 1회 이상 제작,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IA Weekly, 2007. 5. 22).

이처럼 UCC의 대중화는 선거운동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올해 미국 대선의 유력 후보자들은 동영상 UCC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가 운영하는 <You Choose '08>에 동영상을 통하여 자신의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You Choose '08>을 통하여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동영상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각 후보의 동영상에 대한 순위도 매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야후(Yahoo)는 이

용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You Witness News' 서비스를 최근에 개시하였다. 이처럼 유권자들이 온라인상의 정치관련 이슈에 관한 토론에 참여를 하거나 사회적 이슈들을 직접 찍어서 인터넷에 업로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잠재적 대선후보주자들이 동영상 UCC를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 동영상 전문 업체인 판도라 TV도 유튜브처럼 잠재적 대선후보들에게 각각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대선후보주자들이 동영상 UCC를 통해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선거전에서 UCC 열풍이 불고 있지만 동시에 부작용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네티즌들이 생산하는 게시물, 댓글, 패러디, 사진, 동영상 등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존재했던 UCC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UCC에 대해 언론매체들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UCC를 둘러싼 시장적-산업적-정치적 이해가 얽혀있는 파워집단들의 이익만을 고려한 나머지 UCC의 진정한 본질(참여, 개방, 공유)을 외면하는 '왜곡된 UCC담론'에

국내·외 선거전에서 UCC 열풍이 불고 있지만 동시에 부작용의 가능성도 존재해

불과하다는 것이다(민경배, 2007). 황용석(2007) 교수도 여론 형성 과정에서 개인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시민의 의제와 미디어 의제가 균형을 이루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UCC가 선거 과정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즉, 높은 수준의 직업규범이 작동되는 기존 미디어와 다르게 UCC는 전적으로 개인의 윤리규범에 의존하며, 합리적인 집단지성과 자기정화 시스템이 작동하기에는 UCC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인격권이나 저작권 침해 같은 부정적 및 부작용도 나타난다고 지적한다(선호, 2007 재인용).

이처럼 UCC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양날의 칼처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특히 올해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UCC 역할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UCC의 등장과 현황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선거와 관련된 국내·외 UCC 사례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UCC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거 과정에서의 부작용 및 문제점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UCC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지금까지 대부분의 UCC와 관련된 사건이 주목을 받았던 사례들은 거의 대부분 신문이나 방송 뉴스 등 기존 뉴스 언론 매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과정에서 일반 네티즌들이 올린 무분별한 UCC 내용을 적절하게 검증하고 보도해야 할 언론이 자기 입맛에 맞는 내용

만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면 선거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할 국민의 알권리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언론의 선거보도에 있어 UCC에 대한 언론의 역할을 고찰해보고 현 시점에서의 바람직한 선거보도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할 것이다.

2. UCC 등장과 국내·외 현황

웹(Web)2.0 환경에서 그동안 문화 중심의 소비자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던 수용자가 UCC의 등장과 함께 콘텐츠 생산의 주체 역할을 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 거듭나게 되었다. 다시 말해, UCC는 이용자의 참여, 콘텐츠 제작 및 수정, 콘텐츠의 교환이 용이한 웹 2.0이라는 플랫폼 환경을 바탕으로 확산되고 있다. 즉,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하여 창출해내는 비상업적 목적을 가진 콘텐츠를 일컬어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 또는 '사용자 창작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s)'라고 한다.¹⁾

UCC의 역사는 웹2.0이란 개념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설명되어 질 수 있다. 2004년 미국의 IT 전문출판 미디어인 오라일리(O'Reilly)사는 닷컴 붐과에서 살아남은 인터넷 기업들의 성공 요인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며 콘퍼런스를 제안했는데 이 콘퍼런스의 이름이 바로 '웹2.0 콘퍼런스'였다. 이른바 '닷컴 버블'의 붕괴로 불리는 이러한 혹독한 지각

1) UCC와 UGC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UGC는 쓰이지 않는다. 굳이 구분하자면 UCC는 이용자가 순수하게 '창작(created)'한 생산물을 말한다면, 후자는 기존에 존재하는 영상물을 편집이나 일부 수정한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대부분의 UCC는 UGC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편의상 UCC란 용어로 통일하기로 한다.

변동 속에서도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었으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글(www.google.com), 아마존(www.amazon.com) 등이다. 결국 '웹2.0'은 닷컴 버블의 붕괴로부터 살아남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가치, 즉 '공유', '참여', '개방' 등이 새로운 가치로 자리 잡은 시대적 흐름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런 환경에서 UCC는 바로 웹2.0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UCC가 이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된 여러 요인 가운데에는 인터넷의 대중화와 그로 인한 인터넷 세대의 등장, 관련 IT 기술 발달로 휴대하기 편리한 개인 동영상 촬영 기기들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인터넷 세대들의 자아를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자연스럽게 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본 글에서 대부분 논의하고 있는 UCC는 동영상 UCC를 말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미 텍스트 중심의 네티즌 참여 UCC도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wikipedia)로 대표되던 텍스트 중심의 UCC가 이제는 동영상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Allan, 2006). 미국의 플리커(Flicker)²⁾와 유튜브는 이용자들이 사진이나 비디오를 직접 올릴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크게 부각된 동영상 커뮤니티 사이트인 유튜브는 인터넷과 방송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유튜브의 하루 방문자수는 900만 명에 이르고 1억 7,600만 페이지뷰를 기록하면서 웬만한 TV방송사의 하루 시청자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홍명호, 2006).

이처럼 동영상 UCC가 기존의 텍스트나 이미지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소비자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기 시작하면서 동영상의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동영상 UCC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중 대부분은 기존 저작물을 재편집해 가공하거나 무단 재전송하고 있는 것들이다. 국내의 버라이어티 오락프로그램, 광고, 드라마, 애니메이션 TV, 영화의 주요장면이나 스포츠 경기의 하이라이트, 해외 화제 영상 등을 재편집 내지 합성한 콘텐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심화영, 2006). 기존 콘텐츠를 편집하여 제작된 UCC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저작권을 둘러싼 생산자와 사용자, 사업자간 이해관계는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황지연 & 성지환, 2006).

기존 온라인 업계를 주도했던 각 대형 포털들도 기본적으로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가 직접 동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 할 수 있는 동영상/이미지 UC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의 '네이버 플레이', 다음의 'TV팟', 야후코리아의 '야미'³⁾, 파란닷컴의 '엠박스', 싸이월드 미니홈피 동영상 업로드 기능⁴⁾ 등이 대표적인 동영상 UCC 서비스다(김효정, 2006). 이 외에도 이글루스, 올블로그와 같은 블로그 전문 사이트에서는 블로거들이 생활, 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를 능가하는 수준의 UCC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다.⁵⁾

2) 플리커는 일반 시민들이 모바일 폰을 이용하여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사람들이 업로드 된 사진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Allan, 2006, p. 153).

3) 야후 코리아의 동영상 UCC 서비스인 '야미'는 음란 동영상 노출 파문으로 2007년 4월 30일자로 중단되었다.

4) 특히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사용자들에게 공간과 플랫폼만을 제공하고 콘텐츠는 사용자가 채워나가게 되므로 미니홈피에 등록되는 모든 콘텐츠는 스크랩한 내용을 제외하면 모두 UCC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5) 이를 일반 이용자들이 제작한 UCC와 구별하여 PCC(Protuear Created Contents)라고 하며, PCC가 추후 저작권이나 수익모델 창출 등 UCC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동영상 UCC의 비중이 커지면서 기존의 포털은 물론
UCC 전문 포털, 방송사, 신문사 등도
동영상 UCC를 적극적으로 서비스 하고 있어

일반 동영상 UCC 전문 포털의 경우, 국내 동영상 업체인 '엠군', '판도라 TV' 등은 이용자들이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장비 등을 이용해 제작한 셀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를 이루고 있다. 동영상 커뮤니티 '다모임'은 복부 비만 줄이기, 검도 수련, 바른 헬스 운동법 등 웰빙(well-being)을 주제로 한 동영상 UCC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류현성, 2006). '그레텍'은 '곰TV'를 서비스하기 시작하면서 이용자가 직접 찍은 동영상을 올리고 우수작을 가리는 동영상 UCC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동영상 UCC 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온 디맨드(On Demand) 방식으로 기존의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프리카'는 온 디맨드 방식이 아닌 누구나 실시간으로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 국내의 동영상 UCC는 지상파 콘텐츠의 패러디 수준으로, UCC기반 서비스는 지상파 콘텐츠의 또 다른 유통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오리지널한 UCC 제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동영상 UCC 업체, 포털뿐만 아니라 동영상 콘텐츠에 있어 가장 풍부한 자분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UCC 제작에 필요한 틀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UCC 제작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UCC를 시도하고 있는 SBS의 경우 'NeTV' 서비스를 통해 SBS 웹사이트 내의 방송 콘텐츠를 공개해 네티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 콘텐츠를 편집하여 다른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NeTV' 스튜디오를 통해 화

면전환, 영상효과, 자막삽입 등의 다양한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명승은, 2006).

비단 동영상 업체와 지상파 방송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한겨레와 조선일보사에서도 UCC기능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들을 직접 제작하여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예로 한겨레는 필진 네트워크(필자의 글을 기사로 서비스)나 인터넷 한겨레 토론마당 등을 통해 UCC 기반 서비스를 해오고 있으며, 조선일보는 새로 출범한 UCC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 '엠군'을 통해 미디어 빅뱅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동영상 UCC 포털 사이트인 '엠군'은 조선일보 독자 우대 서비스인 모닝플러스와 콘텐츠 제공 제휴를 맺음으로써 모닝플러스 회원으로 등록된 조선일보 독자는 모닝플러스 사이트에서 '엠군'이 제공하는 UCC 클립을 감상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최근에는 '키위닷컴'(www.keywui.com)을 독자적으로 설립하여 1,200명의 영상 블로거 기자와 '키위닷컴'의 회원들이 제작한 동영상과 조선일보 뉴스 등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독창적인 동영상 UCC를 제공하고 있다(이학준, 2007). 이렇게 인터넷 언론에서 UCC 기능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뉴스생산자가 등장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활에 바탕을 둔 뉴스 콘텐츠가 활성화되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도 이미 UCC를 활용한 수익 모델이 등장하여 서비스 중이다. 음악 콘텐츠 전문업체 '밀림닷컴'은 SK텔레콤과 제휴를 맺고 데뷔하지 못한 작곡가나 일반인이 제작한 음악을 컬러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심화영, 2006).

그러나 UCC의 활성화의 이면에는 저작권, 사생활 침해, 제작된 콘텐츠의 질(quality) 등과 관련하여 많

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 보호센터가 2006년 7월 국내의 동영상 전문 업체들인 '아프리카', '관도라 TV', 'TV팟', '아우라', '엠군' 등의 웹캐스팅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가 독창적으로 제작한 UCC 콘텐츠는 6%에 지나지 않았으며 영상콘텐츠를 바탕으로 일부분만 변형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6, 남원상). 이에 따라 앞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야기될 소지는 끊임없이 존재한다. 이 같은 환경에서 UCC 수준의 관건은 결국 이용자들의 적극적 참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 바탕하여 UCC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한 수익모델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푸프닷컴'(www.eefoof.com)과 '레버닷컴'(www.reever.com)은 동영상 삽입 광고를 수익모델로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푸프'는 동영상을 올린 이용자들에게 다른 이용자들이 보인 호응에 따라 광고 수입의 일부분을 재분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3. UCC 선거의 국내·외 사례

최근 우리가 UCC에 열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그것이 정치와 선거에 미칠 영향력, 즉 동영상 UCC의 파급력 때문일 것이다. UCC의 가장 큰 특징은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사실인데, 이는 대중매체가 주도해온 사회적 커뮤니케이션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콘텐츠 생산자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소비자의 수동성이 능동적 반응 단계를 거쳐 마침내 능동적인 참여로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임중수, 2007). 이와 비슷하게 마셜(Marshall, 2006)은 기존의 미디어를 '재현 매체(representational media)'로, 유튜브나 블로그 등 웹 2.0의 뉴미디어를 '표현 매체(presentational media)'

로 여기면서 뉴미디어의 '표현'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장된 미디어라고 본다.

정치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있어서 UCC가 주목받는 이유 역시 '참여'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디어와 차이를 보인다. 제작자가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점에서 콘텐츠의 이용자들끼리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은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될 수 있다. 시민사회 이론에 따르면 참여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대표성 의미 이외에도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 간의 상호교류가 생기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은 상호 간의 공통된 관심사를 논의하고 전체가 합의한 목적을 위하여 협조하게 된다. 이러한 시민들 간의 자발적인 협력행동은 시민의 정치역량을 증대시키게 된다(Putman, 1993).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은 미디어로서 UCC가 갖고 있는 '참여'가 정치적인 참여로 연결될 수 있는지, UCC를 통한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에 집중되게 된다. 특히 정치 참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 UCC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 동안 유튜브의 동영상 UCC가 새로운 온라인 정치 콘텐츠로 부각되면서 몇몇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을 경험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 및 유명한 정치 블로거들이 2006년 중간선거를 '유튜브 선거(You Tube election)' 또는 '유튜브 선거운동(YouTube campaign)'이라고 평가했다(Lizza, 2006; Gumbel, 2006; Jarvis, 2007). 센터(Sender, 2007)는 2006년 중간선거 동안 알렌 상원의원을 낙선시킨 이른바 '마카카 동

**UCC를 포함한 뉴미디어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참여'를 통해 사회 융합적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영상' ⁶⁾이 정치게임의 결과까지도 뒤바꾸며 앞으로 미디어 환경이 바이러스와 같은 동영상, 바이럴 비디오(viral video)의 출현으로 인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흐름에 지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원태, 2007). 최근 2008년 대선을 앞두고 클린턴, 오바마, 에드워즈, 맥케인, 줄리아니, 롬니 등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오프라인상의 이벤트보다는 유튜브의 동영상을 통해 대선출사표를 던지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한 사례로 최근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지지율 경쟁에서 뒤져 있던 오바마 후보가 인터넷상의 한 동영상 UCC의 전파로 인해 같은 당 후보인 힐러리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다(이원태, 2007).

마찬가지로 국내 정치에서도 UCC 열풍이 불고 있다. 한국 역시 17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동영상 UCC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면서 '골목대장 명백이', '피아노 치는 박근혜', '일하는 손학규', '김근태 방송곡' 등 정치인이 자신의 이미지를 유권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UCC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UCC를 제작한다는 측면과는 상반되게 정치인이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홍보하기 위해 동영상 UCC를 활용하는, 미디어를 이용한 '이미지 정치'로서 UCC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⁷⁾의 능동적인 '참여'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한편으

로는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 캠페인이 모처럼 후보자 중심(candidate-initiative)에서 유권자 중심(voter-initiative)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UCC를 포함한 뉴미디어의 특성이 라고 할 수 있는 참여를 통해 사회 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UCC를 포함한 뉴미디어는 각각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개인화된 미디어 환경으로 또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공동체성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뉴미디어가 개인화된다는 전망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개인화된 미디어 사용자들이 네트워크상에서 만나게 됨으로써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조성된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김창남, 2003, p. 233). 이는 센터(2007)가 '마카카 동영상'을 통해 동영상 UCC가 바이러스처럼 사회 곳곳에 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사회 합의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파장력을 갖는 미디어 정보라는 점에 의미를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UCC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20대라고 보면,⁸⁾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부터 선거권이 만 19세까지 확대된 이후 첫 대선으로, UCC는 젊은 유권자층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다.⁹⁾ 반면 현재까지 UCC 이용이 주로 젊은 층에 집중되

6) 2006년 11월 7일 중간선거에 임박한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최소한 우세를 유지하던 공화당의 알렌 의원은 상대 후보의 선거를 돕던 인도계 청년이 자신의 유세 장면을 캠코더로 찍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친구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마카카(원숭이)가 좋을 것 같다"며 "마카카가 미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발언했고 이 동영상은 미국의 뉴스 매체에 의해 보도되며 알렌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히게 되었다.

7) 여기서는 UCC의 사용자가 유권자임을 밝힌다. 정치인이 UCC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으나 정치커뮤니케이션에서 정치인은 시민들의 선택 대상이기 때문이다.

8) 2006년 12월 기준에서 동영상 UCC 이용자 중 20대가 3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이용 세대이기 때문이었다(중앙일보, 2007. 2. 8).

9) 만 19세 이하 유권자는 약 60만 명(전체 유권자의 1.7%)이나, 근소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점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다보니 진지한 정보공유나 대화보다는 ‘즐거움’이나 ‘호기심’ 등의 목적이 주된 UCC 이용 목적이었다(배민욱, 2007). 또한 기존 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 처럼 동영상 UCC가 한 순간의 기술적 호기심과 놀이로만 끝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끝날지, 아니면 인터넷 등장 이후 또 한 번의 사회 구조의 변혁을 일으킬 패러다임을 바꿀지 아직 선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 5분 정도의 짧은 동영상 속에 얼마나 진지한 정치인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국 선거에서는 동영상 UCC가 내용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정치 정보로써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동영상 UCC가 한국 선거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영상 UCC 정보를 통한 법적 문제점은 항시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아직까지 국내에는 UCC 관련 인격권 침해 소송이나 사례가 없으나 충분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고 보고, 기존 선거법상 어떤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구체 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안하기로 하겠다.

4. UCC 선거 부작용 및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

위에서 논의된 미국 선거 과정을 살펴보면, UCC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선거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부분은 ‘사전 선거운동’과 그에 따른 ‘후보자비방죄’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올 초, 선거 UCC물이 제작주체나 표현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현행 선거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 UCC에 대한 운용 기준을 발표하면서 기존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 항목에 근거하여 내용적 측면에서 선거 UCC물의 위법성 여부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e-선거 정보 2007년 1호).

〈공직선거법에 의한 UCC 관련 적용 규정〉

선거법 위반여부는 표현방법이 아닌 그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이나 비방내용을 게시·배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 UCC의 내용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면 선거운동 기간(11. 27.~12. 18.)이 아닌 때에는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유권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 기간이라 하더라도 19세 미만은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UCC를 게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58조~제60조, 254조)
- ▶ UCC의 내용에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호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게재하는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금지됩니다.(제250조, 제251조)
- ▶ 선거일전 180일(6.22)부터는 사실이거나 비방이 아니라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제작물을 게재·배포할 수 없습니다.(제93조)

UCC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선거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비방죄' 등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위법성 여부는 패러디, 댓글, UCC 등 표현방법상의 형식적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과 행위자, 시기, 목적성 여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가 제시하는 공선법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죄에 있어 '비방한다'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실, 예를 들면 선거와 관련 없는, 즉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전혀 사적이거나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폭로 또는 공표하거나 날조된 허구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UCC물에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또는 알권리를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평균인이 참기 어려운 정도인 때에는 후보자 비방 게시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단순히 사실(fact)에 관한 내용으로, 예를 들면 'A 후보는 지난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있는 그대로 사실이고, 반면 의견이라 함은 'A 후보는 지난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자신의 주관적 가치관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후보자비방 외에도 UCC가 기존 매체와 차별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UCC 퍼 나르기이다. 선관위는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이용자들이 상호 토론과정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반대하

는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를 반복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유포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비방, 허위 사실공표에 해당하는 UCC물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이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이를 퍼 나르는 자의 행위도 마찬가지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한다(최우정, 2007 재인용).¹⁰⁾

또한 비방성 게시물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미 입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서 반복 게시되는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이므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공선법 제254조 또는 제93조에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최우정, 2007).

마지막으로 선거 UCC물을 공유하는 사이트와 관련하여, 선관위가 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신문사업자 외에 인터넷을 통해 기존 기사를 매개하는 사이트 운영 주체를 '인터넷 언론사'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는 자사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반드시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형 포털사는 물론이고 전문 UCC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와 '판도라 TV' 등도 인터넷 언론사에

10) 선관위가 지난 1월 23일 '한나라당을 빛낸 108명의 위인들'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토론방에 퍼다 나른 네티즌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도 이 때문이다. UCC는 그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악의적이라면 후보자 비방 게시물에 해당돼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반복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세계일보, 2007. 1. 25).

해당한다.¹¹⁾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UCC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사이버 전문 검색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3,000여 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빠짐없이 검색하고 있다. 동시에, UCC 관련 불법 행위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시·도 단위로 광역 단속팀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한다(문화일보, 2007. 1. 24).

이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형식의 게시물인 동영상 UCC 역시 기존 선거법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네티즌들이 UCC를 게시판에 올려 서로 공유하는 행위 자체는 국민주권을 위해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민주주의 구현의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선거운동은 단순히 선거권 행사라는 참정권적 의미만이 아니라 선거권자의 가치관의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속하는 기본권적 성격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를 두고 선관위의 UCC 규제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까다롭게 되어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런 과도한 규제를 통한 법적 제한은 표현의 자유 제약이라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과잉규제원칙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최우정, 2007). 그러나 위에서 논의된 바처럼 선거권자 자신의 가치관의 표현행위로서 선거운동은, 동시에 피선거권자의 당선과 낙선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피선거권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즉, 헌법적 가치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각각의 헌법적인 이익의 교량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작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UCC 역할과 대선 후보들의 UCC를 통한 활발한 선거 캠페인 사례들 그리고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의 UCC 캠페인 사례들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선관위의 공선법을 통한 규제 시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안은 미국과 우리의 경우는 UCC에 관한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보다 정치인들에 의해 UCC가 네거티브 캠페인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할 가져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후보들도 다양한 UCC물에 대해 크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¹²⁾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UCC가 아직 미국처럼 네거티브 캠페인 도구로 이용된 적도 없으며 사전에 미리 정부에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는 분위기였다.

또한 지금까지 잘 알려진 UCC 사례들은 대부분 기존 언론 매체에 의해 확대재생산 된 경우다. 이런 측면에서 아직은 UCC 영향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기존 언론들이며 여기에 다시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음은 기존 언론들이 어떻게, 특히 선거 UCC에 대해 보도했는지를 살

-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7년 2월 14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과 관련된 UCC 동영상들이 올라온 다음과 동영상 사이트인 엠엔캐스트에 14건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해당 UCC에는 박근혜 전 대표의 피아노 연주 모습을 담은 '피아노 치는 근혜공주', '마빡이' 개 그를 패러디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명빡이',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00일 민심대장정을 할 당시 모습을 배경으로 편집한 '민심체조' 등이 담겨 있다. 이들 동영상은 각 주자 팬클럽이나 보좌진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개인 블로그에 UCC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허용되나 누구나 볼 수 있는 포털에 홍보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구용희, 2007).
- 12) 최근 오바마 후보 측에서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과거 Apple사의 광고를 패러디 한 선거 동영상 UCC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을 독재자(Big Brother)로 묘사하고 있으며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오바마 후보가 그동안 열세에서 벗어나 지지율을 회복했다고 하기도 한다.

대선 열기가 고조될수록 UCC로 인한 문제 발생도
 예상되는 만큼 언론이 먼저 나서 정확히 확인하고
 검증한 후 보도·전달하는 모습 보여야

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개선방안은 없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5. 언론의 UCC 선거 보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UCC라는 말이 우리나라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0년이였다(서울신문, 2000. 12. 30).¹³⁾ 이후 간헐적으로 UCC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UCC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2005년 포털사이트인 다음이 전략적으로 UCC를 크게 홍보하였고, 이와 관련된 뉴스가 언론의 경제면을 중심으로 나오면서부터다. 이후 다음, 야후 코리아,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들이 경쟁적으로 독자와의 쌍방향성을 내세우며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자사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산업적인 측면과 사용자의 능동적인 참여에 대한 욕구가 만나면서 UCC의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UCC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상반기이며 지상파 오락프로그램에서 인기 있는 UCC 동영상상을 방송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

문제는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UCC의 영향력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기존 언론이나 포털에서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확대 재생산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사례로 지난 2007년 2월 5일 새벽 UCC 전문사이트를 통해 공개돼 사회적 충격과 파문을 낳았던 '성폭행 동영상'은 이틀 뒤 당사자들의 '연출' 고백으로 거짓 판

명이 나면서 사안을 철저히 검증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선정적인 내용을 부각시켜 파문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을 샀다(미디어오늘, 2007년 2월 14일자).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상파의 방송 보도가 사실 검증조차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내보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KBS와 SBS는 문제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고는 하나 성추행 동작을 알아 볼 수 있어 선정적 보도에 대한 '면피성 조치'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했다(미디어오늘, 2007년 2월 14일자, 재인용).

특히, 올해 대선이라는 우리 사회의 큰 변수와 UCC가 만나면서 정치권을 움직일 하나의 거대한 잠재요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예측도 올 초부터 언론에서는 나왔다(허엽, 2007). 이처럼 우리 언론의 선거 UCC에 대한 보도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UCC가 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관심에 대한 보도 등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갑자기 커진 영향력으로 인한 선거 UCC의 부작용과 이를 규제하려는 선관위 발표 등이다. 즉, 선거 열기가 고조될수록 UCC 콘텐츠 내 용으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에서도 이러한 역기능에 주목해 위에서 논의된 바처럼 선거 관련 UCC에 대한 운용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대선 열기가 고조될수록 UCC 콘텐츠의 내용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13) 한국언론재단 뉴스검색 사이트 카인즈(www.kinds.or.kr)에서 검색어를 UCC로 하여 기사를 검색한 결과 이전에도 검색되는 기사가 있었으나 이전의 UCC는 '국제저작권협회' 혹은 '미국 상무성법', '국제표준 바코드'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자가 생산하는 콘텐츠의 UCC와는 거리가 멀었다.

은 만큼 언론이 먼저 나서 검증을 하고 정확히 확인된 사실에 한해 보도하고 전달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¹⁴⁾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언론에서 지면을 다량 할애해 UCC와 관련된 정치보도를 하고 있지만 후보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로선 바르는 모습을 '마빡이'로 패러디한 것이나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산사에 들어간 기사가 지면을 채우고 있다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다(김상만, 2007). 이처럼 알맹이가 빠진 채 표피만 보도하는 구태의연한 선거 정치보도는 안 그래도 최근 본질이 빠진 이미지 정치로 왜곡되기 쉬운 선거 문화를 언론에서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⁵⁾

아직까지 선거에서의 UCC의 영향력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은 많지만 실제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실제 UCC의 단발성 이미지 중심의 메시지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이성적이고 진지한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좀 더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기성 언론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은 모처럼 맞은 기회, 즉 유권자들이 스스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6. 정리하며

UCC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서 높아져 가고 있음

을 실감하며, 특히 UCC가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소개한 미국 대선 캠페인에서는 동영상 UCC가 후보자의 부정적인 면을 잡아 낙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네거티브 캠페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대선 후보자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네거티브 동영상의 수가 거의 없거나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선관위의 삭제요청에 의해 포털이나 동영상 사이트 측에서 삭제한 이유도 있겠지만, 정치권, 언론, 선관위, 정부 등에서 전반적으로 UCC 규제 여론이 높았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유석진, 이원태, 2007). 이에 대해 선관위의 선거 UCC에 관한 규제를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용시키기에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사전 선거운동과 개인 의견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문제 등을 포함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타났으며, 따라서 참정권은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선관위의 일방적 규제보다는 네티즌들의 자율적 정화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들리기도 한다. 특히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동영상 UCC 사업자이다. 예를 들면, 동영상 포털 프리첼 측은 “네티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표현방식 자체에 제약을 두는 중앙선관위의 가이드라인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미국 등 선진 정치를 보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정치활동

14) “UCC를 이해시키는 것도, UCC를 선거의 핫이슈로 만드는 것도 언론이다. 언론이 후보자들의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감시하고 UCC를 합리적인 미디어 선거의 유형으로 선도해간다면, 올해 대선에서 UCC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결과를 낼 것이다”(경향신문, 2007. 2. 26. 자).

15) 그렇다면 특정 UCC 내용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고 그것이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5월 25일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춘계학술대회에서 이와 관련 논의된 부분은 아직 미국이나 우리의 경우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언론중재법 등을 통해 반론보도청구나 정정보도청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규제받을 수 있다고 본다.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UCC 제작 및 무차별적 퍼 나르기 식 유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기술적 대책 마련해야

은 자정기능을 통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심화영, 2007).

반면 선거라는 상황이 일반적 상황이 아니고 민주 사회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때 일정 정도 정부의 개입으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사전 선거운동이란 애매한 기준보다는 명예훼손이나 비방 등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사전 선거운동 조항을 푸는 것도, 특히 웹2.0의 뉴미디어 서비스 환경에서는 융통성 있는 자세일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선거 UCC 규제보다는 기존 미디어를 근거로 한 공선법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뉴미디어 서비스인 UCC 특성을 고려한 법적, 기술적 대책마련과 자율적 책무의 강조가 우리 선거문화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고 동시에 UCC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적 허위사실을 담은 UCC 제작 및 무차별적 퍼 나르기식 유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기술적 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워터마크, DRM(Digital Right Management), CCL(Creative Common License) 등 저작권 보호와 유통경로 모니터링 기술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정명선, 2007).

UCC는 말 그대로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다. 그런데 지금은 이용자는 그대로 두고, 포털과 언론만 너무 앞서가고 있다. 거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해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대중문화 형식에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일까지 맡기려 한다. 막연한 기대와 희망만으로 UCC를 부풀리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임문영, 2007).

결국 우리 선거문화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

는 누구 하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선 후보 측 캠프, 동영상 전문 업체 및 인터넷 포털, 네티즌 각각의 절제된 참여와 자율적 정화노력이 중요하다. 후보 측은 더욱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의 효율적 전달수단으로 UCC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업계 측은 부적절한 UCC 유통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네티즌 측 역시 UCC를 후보의 자질을 판단하는데 유의한 정보를 얻는 미디어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구용회(2007). “‘피아노 치는 근혜’, ‘명백이’ 등 대선 UCC 첫 삭제”. 노컷뉴스. 2007. 2. 2. 자.
 김상만(2007). “정치를 드라마로 만드는 언론, 부메랑 맞는다”. 미디어오늘. 2007. 3. 22. 자.
 “네티즌 10명 중 5명은 UCC 경험자”. 「NIA Weekly」. 6(19). 2007. 5. 28.
 류현성(2006).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르는 UCC”. 연합뉴스. 2006. 5. 8. 자.
 민경배(2007). “왜곡된 UCC 담론진단: UCC 공론장은 가능한가?” 언론광장 월례토론회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19328§ion=section5&wdate=1173265140
 배민욱(2007). “대학생 74%, ‘하루 30분 이상 UCC 즐긴다’”. 뉴시스. 2007. 5. 16. 자.
 “선관위 ‘UCC 집중 단속’”. 문화일보. 2007. 1. 24. 자.
 선 호(2007). “정치 UCC, 주목은 하되 과대평가 말아야”. 미디어오늘. 2007. 4. 19. 자.
 심화영(2007). “대선 좌우할 UCC ‘합법과 불법 사이’”. 아이뉴스24. 2007. 1. 24. 자.
 양원보(2007). “‘악의적 UCC 반복 게재 불법’ 선관위 지

- 침 제시”. 세계일보. 2007. 1. 25. 자.
- 유석진, 이원태(2007). “UCC와 대선: 미국과 한국의 인터넷 캠페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학술대회. 2007. 5. 25.
- 이원태(2007). “미국 대선의 UCC 활용 사례와 쟁점 - 유튜브 정치 동영상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 분과 콜로키움. 2007. 4. 25.
- 이학준(2007). “UCC 마니아 모두 모여라”. 조선일보. 2007. 4. 4. 자.
- 임문영(2007). “누가 UCC를 부풀리고 왜곡하는가”. 한겨레. 2007. 2. 22. 자.
- 임종수(2007). 초기 UCC 생산과 소비의 탈집중 현상: 판도라 TV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1권 1호. 211-242.
- 정명선(2007. 2). “2007년 대선과의 관계를 통해 본 UCC의 발전 방향”. 정보 사회 현안 분석 보고서 1권.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
- 최우정(2007). “UCC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학술대회. 2007. 5. 25. 자.
- 황지연·성지환(2006). 융합시대 사회문화 트렌드와 UCC 활용전망. 「정보통신정책」. 18(17). 26-55.
- 허엽(2007). “대선과 UCC”. 동아일보. 2007. 1. 7. 자.
- 홍명호(2006). “UCC가 세상을 바꿀까?”. 디지털 타임스. 2006. 5. 15. 자.
- e-선거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7. 1. 19(2007-1호).
- “UCC ‘인터넷 새 권력’…대선 판도 변수: 오늘 대선후보 개인채널 추첨…좋은 번호 받기 경쟁”. 중앙일보. 2007. 2. 8. 자.
- Gumbel, A. (2006). The YouTube elections: How campaigns are being scrutinised as never before. *The Independent*, 4.
- Jarvis, J. “Why YouTube gets my vote for political punditry”, *The Guardian*, February 5, 2007 <http://politics.guardian.co.uk/media/comment/0,,2005785,00.html>
- Lizza, R. (2006. 8. 20). The YouTube election, *The New York Times*.
- Marshall, P. D. (2006). *The celebrity culture reader*. London & NY: Routledge.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nder, P. (2007. 3. 6). France bans citizen journalists from reporting violence. *InfoWorld*.

선거 보도 심의 기구를 둘러싼 쟁점과 해결 방안

김 창 룡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 영국 런던 시티대학교 석사, 카디프대학교 언론대학원 박사
- AP 통신 서울특파원, 국민일보 기자,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 현(現) 인제대학교 국제인력지원연구소 소장
- 저서 및 논문 : 「매스컴과 미디어 비평」, 「세계 언론법제 동향」, 「보도의 진실, 진실의 오묘」 외 다수

I. 문제제기

대통령 선거, 총선거, 지자체 선거, 재보궐 선거 등 선거가 많아지고 잦아지면서 요즘은 돌아서면 선거철이 되는 형편이다. 선거보도에 열을 올리는 언론사의 입장에서도 상시 선거보도체제나 다름없는 보도활동을 하는 셈이다. 특히 대권보도에 함몰된 한국의 언론은 선거철 훨씬 앞서부터 각종 여론조사, 가상 대결, 유력후보군에 대한 보도를 통해 여론몰이에 나서는 편이다.

그래서 선거철이 임박해오면 정당과 후보자들은 정책개발보다 선거보도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운다. 미디어로부터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 유권자들의 특정당과 특정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디어 선거'라고 할 만큼 오늘날 선거의 큰 비중을 미디어가 도맡아한다. 잠재력 있거나 잘나가던 후보가 하루아침에 '언론의

표적보도', '언론의 사상검증' 등으로 좌절되기도 하고 화려한 언론플레이로 정치적 스타로 부각되기도 한다.

공정한 보도의 결과인지 불공정한 언론플레이의 빛나간 허상인지 확신이 없다. 따라서 국민의 정확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거후보자의 불공정한 불이익, 특혜 등을 막기 위해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를 감시하는 별도의 선거보도심의기구가 존재한다. 선거보도심의기구는 자칫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 보도의 자율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지만 한국 언론의 원죄¹⁾ 때문에 그 존재의 정당성에 대해 언론사들조차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각 매체별 심의기구가 따로 만들어지면서 심의 잣대가 다르고 운영주체마저 달라 모순과 혼선을 빚어왔다는 점이다. 신문 등 인쇄매체는 선거보도심의의를 언론중재위원회가 맡고 방송심의의 경

1) 한국 언론의 원죄라고 하면 그동안 군사독재정권, 문민정권 등을 거치며 권언유착의 병폐를 극복하지 못하여 정파적 저널리즘에 함몰돼 있다는 비판에 근거한다. 언론계가 마치 정계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해오는 관행은 여전히 극복되지 못했고 이는 하나의 전통이 됐기 때문이다.

우 방송위원회가 맡았다. 뒤늦게 언론으로 규정된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심의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한다. 매체에 따라 이처럼 심의기구가 나눠져 있는 것은 심의의 일관성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절하지 못하며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점을 안게 된다.

일부에서 개정과 통합의 목소리가 있었고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06년 12월 12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있다.

이 개정의견에 따르면 기존에 세 곳의 기구로 나눠 있는 선거보도관련 심의기구를 하나로 통합한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 설치·운영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선거보도 내용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조치, 반론보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심의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선거관련 심의기구를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내용 외에도 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한다는 것, 그 운영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둔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신문과 방송의 경우, 심의기구가 한시적으로 선거 전·후 150일 동안만 존재해왔다. 사실 선거관련 보도의 공정성, 형평성 문제는 선거일 훨씬 전부터 문제가 돼 왔던 만큼 한시기구를 상시화하자는 주장도 존재했다. 인터넷 매체에 대한 심의기구처럼 임기 3년의 상설기구화 하자는 것이다. 이 부분도 과연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더 논의가 시급한 문제에 집중하

고자 한다.

우선, 상시기구화 된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된 선거보도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법리 적용의 문제 및 그 간의 성과, 관련 업무의 경험 등을 놓고 판단해 볼 때 독립적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가 통합된 선거보도심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정을 앞두고 있는 1. 선거보도심의위원회 통합의 당위성,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3.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주체에 대한 쟁점, 4. 개정안에서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 등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개정안에 대한 쟁점을 이슈화시켜 보다 합당한 대안을 찾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하며 그런 취지에서 나름의 주관적 판단도 함께 제기하고자 한다.

II. 본론 및 쟁점

1. 선거보도심의위원회 통합의 당위성

법과 제도는 사회의 변화를 앞서나갈 수 없다. 현재와 같이 선거보도심의기구가 이처럼 산발적으로 흩어져있고 운영주체마저 달라 피해자들이 혼신을 겪는 데는 이와 같은 사회변동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우선 인터넷 매체의 경우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언론으로 규정조차

통합된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되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언론 활동을 했고 언론사로 존재했지만 법적으로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이다.

서둘러 법을 개정하여 나날이 영향력이 커지고 그 수가 늘어나는 인터넷 매체를 언론사로 인정하여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면서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 가장 먼저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기구를 만든 곳은 방송분야다. 언론사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종종 공정성을 의심받은 방송사에 대해 1997년 11월 1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개정하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그 다음은 신문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0년 2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개정하면서 이번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두 심의기구는 모두 한시적 기구로 선거일 전·후 150일 동안만 활동했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다뤄야 할 사안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시키기도 했다. 선거보도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해 신속한 피해회복이나 불만처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런데 인터넷 매체 심의기구가 등장함에 따라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오프라인

신문과 방송이 인터넷 뉴스서비스도 겸하는 만큼 언론 불만자들의 혼선을 가져왔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인터넷선거기사심의기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문제를 제기할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운영) 혹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위원회 운영)로 갈지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또한 심의기구에 따라 심의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 이 같은 혼선은 시급하게 해소될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에서 나섰음을 밝혔다.²⁾

심의대상이 되는 언론기관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사안을 두고 때로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구에 혹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불러 다닐 수도 있는 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관계로 언론사 입장에서나 심의기관 입장에서 기존의 세 심의기구의 통합은 심의 기준의 통일과 운영의 일관성, 피해자 혼란 해소 차원에서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당사자들도 통합에 관한 한 이견을 보이지 않는 만큼 수월하게 그 합리성을 인정받은 것 같다.³⁾ 이제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을 논해보고자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도심의기구에 관한 개정 의견을 내면서 "방송·신문 등 모든 언론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선거보도를 게재하고 있어 동일한 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중복된 심의를 받게 되는 바, 이로 인한 당사자의 불편과 심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3) 언론중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심의기구 통합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과 유사하다. "현행은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가 매체유형별로 분산·설치되어 있어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들이 각 기구의 상이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분쟁 내용에 대해 각 기구별 심의결과가 서로 다를 개연성이 있어 법적적용의 일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법안 주요내용

1)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방송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대한변협·인터넷 언론 단체·여론조사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내용에는 예외 없이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이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전례를 비취볼 때 정당추천 인사 2~3인은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심의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될 때마다,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 질 때마다 국회 교섭단체의 몫을 챙기는 인상은 ‘입법기관 이기주의’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한국기자협회나 전국언론노동조합, PD 연합회 등도 이해당사자(언론보도기관)란 이유로 추천권 행사에서 배제됐다. 선거관련 보도의 당사자는 정당과 정치인(피보도자)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셈이다. ‘이해당사자 배제원칙’에 따라 정당의 추천권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입법의원들이 정당추천 몫을 챙기려 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이 전문성이나 신뢰성 등에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종종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킨 만큼 가급적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상이다.

또한 여론조사단체에서 특별히 추천권을 가져야 할 이유도 없다. 여론조사에 대한 보도기준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그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때는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하는 만큼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오히려 언론현업에 대한 이해와 언론법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인사의 추천이 절실하다.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는 책임감이나 전문성에서 문제를 노출하는 경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만큼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지역언론단체, 지역언론학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에 추천권을 주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심의대상에는 지방, 중앙 구분이 없지만 정작 심의위원회에는 단 한명도 지방출신이 없다는 것은 지나친 중앙위주의 인적구성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구성돼 온 만큼 지역언론단체에 추천권을 주자는 제의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인사의 보완은 지역언론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이나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어느 단체에서 추천했든 그 추천인사에 대한 최소한의 결격사유 규정이나 검증장치가 필요하다. 선거보도심의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각 위원들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강조돼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을 기웃거린 자, 선거캠프에서 특정후보 편에서 활동한 자, 언론법제나 실무 등에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는 자 등을 배제할 수 있는 검증과정과 투명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기능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직권에 의해 선거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한 보도를 행한 언론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보도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

통합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엄정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닌 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돼야

의결하여 해당 언론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왜곡된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 해당 언론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당연한 기능과 임무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다음 내용이다.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단체로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여론조사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하고, 심의결과 여론조사 계획이 객관성을 결여하거나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도록 한다”.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기능 가운데 여론조사계획서를 사전심의 하는 것은 비록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차원이라고 하지만 사전검열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물론 가장 흔하게 상습적으로 여론조사 보도가 선거보도 심의, 징계대상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여론조사에 대한 기본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사소한 문제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 굳이 새로운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여론조사사전계획서 심의규정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 여론조사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도 별 문제가 없다.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은 언론자유를 훼손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현행 선거법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기간행물의 보도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신문사로 하여금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이렇게 주장한 바 있다.

“이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과광고의 강요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요지의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언론은 입을 다물고 국회는 모른 척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헌법정신에 비추면, 사과문 조항을 삭제하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3.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주체에 대한 쟁점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둘 것인지 언론중재위원회 혹은 방송위원회에 둘 것이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타당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방송위원회는 향후 방송통신융합위원회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미래의 불투명성 이유 외에도 신문과 인터넷 등의 이중매체를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운영주체가 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는 나름대로 운영기관으로서의 장, 단점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선거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포함한 제반 입법, 규제 문제는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란 점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의 반론, 정정보도, 시정조치 등 전반적인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전담 처리해오고 있으며 그만큼 노하우도 축적해와 전문성이 인정된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1) 입법취지, 2) 법리적용의 현실성, 3) 기관의 공적/법적 성격 차원에서 접근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입법취지의 관점에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절차와 형식에 대한 '규제' 중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구제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이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규제중심의 공직선거법을 운영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보다는 언론불만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운영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보도 피해문제를 다루는 것이 입법취지에 더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보도심의 내용을 보면 신속한 반론권이나 정정보도권, 대응권 등을 판단하고 권리구제를 해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물론 경고나 주의 등의 징계수위를 정하고 처벌을 내리지만 현실적으로 별 효용이 없다. 따라서 언론사에 대한 징계보다는 언론피해자의 현실적 권리구제가 더 실질적이고 절실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그동안 다양한 매체에 대

해 다양한 보도 불만건을 다룬 경험이 축적돼 있는 만큼 일관성과 전문성 차원에서 신뢰도가 높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법리적용의 현실성 차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통합될 경우 법리적용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 선거보도에 대해 선거후보자는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고 같은 사안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안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다른 법리를 적용하여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 법리 적용의 일관성 때문이다.

이 경우 선거보도로 인한 분쟁의 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되면 피해자나 언론은 혼선을 빚게 될 우려가 있으며 두 선거보도심의기관 중 하나는 신뢰도에 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권위의 손상으로 이어지고 일관성도 의심받게 된다. 또한 통합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조차 분열된 보도 심의를 받게 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법리적용의 현실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맡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3) 운영기관의 공적, 법적 성격의 차원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독립된 준사법기구인 반면, 중

**입법취지, 법리 적용의 현실성 및 일관성,
운영기관의 공적·법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보도심의위원회 두는 것이 합당해**

양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⁴⁾이다.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보도의 공정성과 같은 언론보도 내용의 심의를 다루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개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는 별도의 독립된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형식을 갖추겠지만 사무기능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관계로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마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부기구로 인식될 수도 있고 또한 선거보도에 관권의 개입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언론규제기관이 염두에 뒤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다. 특히 선거보도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는 뉴스 가치 판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판단을 국가기관이 관장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정치적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다.

선거보도심의를 국가기관이 담당할 경우, 선거보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국가가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심의하게 됨으로써 국가가 언론을 규제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한다는 언론의 반발을 받게 될 우려가 있으며 여론 역시 곱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이런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공론화된 적이 있다.⁵⁾

이에 반해 언론중재위원회는 독립된 준사법기구인 만큼 국가나 정부의 개입에 대한 우려가 없다. 또한 그동안 언론피해구제 활동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통합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두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과 절차에 대한 준수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적 기능을 맡는 쪽으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보도의 공정성, 형평성을 기준으로 한 내용상의 규제 및 피해구제는 언론분쟁에 관한 독립적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개정안에서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

1) 선거보도심의의 관련 법 규정의 이전문제

형식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선거보도심의의 관련 법 규정을 언론중재법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향후 언론중재위원회와 또 다른 대립과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선거법은 절차와 형식에 대한 규제범

4) 국가기관 : 국가의 통치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삼권분립주의 하에서는 입법기관·사법기관·행정기관의 셋으로 대별된다. 국가기관의 설치·조직과 그 권한(직무범위)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무에 중대한 관계가 있고, 또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기관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입헌주의의 원칙이다.

국가기관은 권한과 기능에 따라 의결기관·집행기관·자문기관·심의기관·선거기관·감사기관·행정관청·보조기관·조사연구기관·부속기관 등으로 나누어진다. 국가기관(행정기관) 중 특히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을 행정법상 행정관청(行政官廳)이라고 한다(두산 세계대백과 사전에서 발췌).

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중앙선거위 산하에 설치된 것에 대해 입법의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언론자유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인터넷 언론 관련 법률에 관한 제정 논의는 정간법 개정과 연계해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한다"(윤성이(2004),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터넷의 역할과 영향.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주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평가 심포지엄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평가와 정치관계법 개정' 심포지엄 발제논문. p. 63p).

로 볼 수 있으나, 언론중재법은 보도내용에 대한 심의를 토대로 한 피해구제법이기 때문이다. 선거보도의 잘못으로 인한 후보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심의절차를 선거법에 두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이를 언론중재법에 이전하여 규정하는데 대한 절차적 논의가 필요하다.

2) 뉴스통신 심의의 관할 명문화

과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상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체는 구(舊)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정기간행물'이었다. 여기서 '정기간행물'은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로 정의되어 있었으나, 2003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뉴스통신이 정기간행물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뉴스통신에 대한 심의기구를 규정하지 않아 현재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과거 심의대상이었던 뉴스통신이 공직선거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되어 언론사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뉴스통신사들이 선거보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은 입법미비를 의미한다. '뉴스의 도매상'이라고 불리는 뉴스통신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선거보도 심의를 신속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3) 반론보도청구의 언론사 협의과정을 임의 절차로 전환해야

현행 공직선거법상 '반론보도청구'는 반론보도를 청구하려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먼저 언론사와 필요적으로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 선거보도심의기구에 이를 회부하여 문제

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언론사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취지였지만, 실제로 언론사와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언론사를 반드시 거친 후 선거보도심의기구에 회부해야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이용률이 매우 낮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언론사와의 협의과정을 언론 피해자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적 전치주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요적 전치절차인 언론사와의 협의 과정을 갖든 갖지 않든 자유롭게 하여 언론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4) 시정요구(이의신청)와 반론보도청구 회부절차의 통일 필요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를 시정요구(이의신청)심 의와 범의 취지 및 목적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신청기간과 신청인 자격 등이 달라서 신청인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불공정 선거보도와 관련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기간(선거일 전(前) 120일)과 반론보도청구기간(선거일 전(前) 90일)을 통일시키고, 시정요구(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시한(현행법에는 '지체 없이'라고만 표현)을 반론보도청구 결정 시한(48시간 이내)과 같이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기간행물 및 방송의 선거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 정당(중앙당에 한정) 및 후보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시정요구 심의의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어 '정당 및 후보자'로 신청인의 범위를 통일

선거기사심의 관련 법 규정 이전 문제,
반론보도청구권의 임의 절차화 등도
선거법 개정 논의 통해 다루어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5) 언론사에 대한 형사처벌 단심제는 재고돼야

선거기사심의제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종의 이유로 언론사에 대해 단심제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⁶⁾

선거기간이라는 짧은 기한 내에 언론보도로 인한 신속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구제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취지라고는 하지만 이는 언론사 입장에서 지나친 측면이 있다. 언론보도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해 군소언론의 경우, 비판, 감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이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실제로 적용하게 될 경우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선거기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김영호 대표(언론개혁시민연대)는 “위헌소지가 있다 보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 조항의 적용을 그동안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주의, 경고 따위의 징계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신문사가 징계 받은 사실을 공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서접수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 반복적인 위반사례가 나온다”고 말했다.

규정에는 단심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해놓았지만 위헌소지 때문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징벌적 효력이 전무한 ‘주의, 경고’ 선에

서 멈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해도 문제지만 그 징계의 효력이 별 영향이 없을 때 그 위원회의 결정은 중의조각이 되고 만다.

따라서 위헌소지가 있는 단심제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돼야 하며 동시에 ‘주의, 경고’ 등의 형식상, 서류상의 징계행위는 보다 실질적이고 개선의 노력을 유발하는 징계형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및 제언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미디어의 환경을 바꾸고 사회를 빠른 속도로 변화시킨다. 신문과 방송, 통신의 장르 구분이 모호해지고 이른바 미디어 융합 현상이 가시화 되고 있다. 법과 제도는 이에 발맞춰 적합하게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항상 늦은 편이다. 해가 바뀔 때마다 전환기가 되며 전환기의 법제는 항상 혼란스럽고 사회적 논란을 요구한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자연스런 사회변동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다.

문제는 예상되는 폐단을 알면서 혹은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나 전문성 부족으로 미완의 법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입법의원, 관련 전문 학자 등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선거기간에 언론사의 보도를 공정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심의제를 채택해 온지 2007년 올해로 꼭 10년째를 맞는다. 그간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정의 과정을

6) 김영호 ‘선거보도 심의제 수술해야’ (한겨레신문 ‘미디어 전망대’ 2006년 3월 29일자).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직무다. 다만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입법미비의 형태로 간다는 것은 사회적 죄악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완벽한 법제를 만들어도 이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인력이 정치적 술수를 부리거나 악용할 때 그 법제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과 제도의 완비는 민주주의 법치사회를 만드는 근원이 되며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분산된 세 기관의 선거보도심의를 한 기관으로 통합하여 일관되고 상시적으로 심의하자는 데 이견은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부분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는 위원추천제의 문제점이나 입법조항은 좀 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통합선거보도 심의기구 운영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할 것인지 언론중재위원회로 할 것인지 등은 향후 논란을 증폭시킬 수도 있는 만큼 사전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입법취지와 기관의 성격, 언론이라는 규제대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보다는 독립적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가 더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법 개정을 앞두고 충분한 논의조차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차원에서 이 글이 논의의 시발점이 된다면 그 자체로 만족할 만한 일이다. 민주주의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그만큼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독단과 독재의 위험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선진국에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은 법제를 마련하여 선진국에 손색없는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한데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부분적인 문제는 언제든지 손질하면 되는 것이고 그 자체를 타박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주요 다섯 가지 주장을 내놓으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선거보도심의위원회 통합은 빠를수록 좋다. 심의위원회의 법리적용의 일관성이나 영속성 차원에서, 심의대상인 언론기관의 혼란과 혼선을 피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은 이견이 없는 만큼 지체할 이유가 없다. 이를 위해 입법의원들은 법안을 검토, 입법화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2) 통합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는 정치적 인사, 정당추천인사를 배제하는 등 추천인사검증장치와 투명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당과 국회의원 등은 잠재적 이해당사자인만큼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는 심의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해당사자 배제원칙에 따라 추천권을 쥐서는 안 된다. 다만 지역언론, 지역언론학계에 추천권을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히 여론조사기관에 추천권을 쥐야할만한 이유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3) 여론조사 사전 기획서 심의는 사전검열의 성격이 강한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사전심의에서 사후 실효성 있는 징계시스템 개발로 전환할 것을 제의한다. 신속을 다투는 여론조사의 경우, 언론사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고 이것을 다시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은 번거롭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여론조사 보도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고 또한 이에 대한 처벌 자체가 실효가 없어 그동안 선거보도심의에서 단골로 걸려드는 고질적인 문제가 된 만큼 실효성

통합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관할 기관으로
독립된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택하는 것이
민주주의 구성 형식상 더 바람직 해

있는 처벌로 전환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4) 통합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관할기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에 두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의 언론개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독립된 준사법기구의 성격인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민주주의 구성형식상 더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심의대상인 언론사 입장에서 한 곳에서 윈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공직선거법상 뉴스통신사에 대한 심의기구 관할이 절실했다. 영향력 차원에서 신문이나 방송기구를 능가하는 뉴스통신사에 대해 선거법 입법과

정에서 심의 관할이 빠져있다는 것은 문제다. 물론 언론중재법으로 일반적인 반론, 정정 등의 권리구제는 가능하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이미 앞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한 만큼 논란거리를 제공한 셈이라고 본다. 어떤 경우든 국민의 정확한 알권리를 확보하고 언론의 공정보도를 통해 올바른 미디어 선거풍토를 조성한다는 대의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이다. 정치권 인사의 개입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과 계산, 직역이 기주의 등은 대의를 훼손하는 동인이 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학습효과다. 입법의원들이 법을 만든다는 이유로 더 이상 정당추천제를 약방의 감초처럼 끼워 넣지 않기를 바란다. □

상당성에 관하여

노 태 홍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판사(언론진담재판부)

I. 머리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담당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진실하다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이하 '상당성'이라고 한다)는 피고의 항변이고, 특히 언론매체가 피고로 된 대다수의 명예훼손 소송은 위 상당성의 유무에 의하여 그 소송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명예훼손의 성립에 관한 판례준칙으로 "신문 등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된 경우 또는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공익성, 진실성 내지 상당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때 상당성이 위법성을 조각하는지, 고의, 과실을 조각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례의 태도가 엇갈리고 있으나, 주류적인 판례의 태도는 상당성을 위법성조각사유로 보고 있는 듯하다.²⁾

아래에서는 대법원이 명예훼손사건에서 특유한 면책사유로 확립한 '상당성'에 대한 형법학계에서의 논의, 그 체계적 지위 등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상당성의 체계적 지위는 민사상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관해서 보기로 한다).

II. 형법학계에서의 상당성에 대한 논의

형법 제310조³⁾의 의미에 관하여서는 위 조항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이라는 데에 형법학자

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판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 등.
2) 하급심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9. 선고 2004가합10234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9. 28. 선고 2004가단45689 판결 등)는 상당성이 고의, 과실을 조각한다는 판결들이 여전히 보이고 있다.
3)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서 공공성과 진실성이라는 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 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허위의 사실을 진실이라고 오인하고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⁴⁾, 즉 공익성 요건은 존재하나 진실성 요건은 존재하지 않고 이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형법학자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1. 실체법적 효과

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설

(1) 다수설은 '상당성'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로 다루고 있으므로, 위 착오의 효과에 대한 형법학계의 학설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엄격고의설 : 책임요소로서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필요한데, 이 경우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없으므로 행위자는 고의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책임을 지고 행위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 ② 엄격책임설 : 위법성에 관련된 모든 착오를 예외 없이 법률의 착오로 취급한다. 따라서 이 경우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으므로 고의범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있다고 한다. 책임단계에서, 일반적 법률의 착오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에게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있으

면 책임이 감경되고,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 ③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 고의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불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행위자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의 죄책을 지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한다.
- ④ 제한책임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구성요건적 착오는 아니지만 구성요건적 착오와의 구조적 유사성을 근거로 구성요건적 착오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성요건착오 유추적용설은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실의 착오를 유추적용하여 과실범의 책임을 인정하고, 인식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한다. 범효과제한책임설은 고의범의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은 있으나 행위자에게 책임고의가 없으므로 고의책임을 물을 수 없고,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의 책임을 인정하고, 착오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한다.

(2) 위 학설 중 엄격책임설만이 고의기수범의 성립을 인정하고(다만 회피가능성 여부에 따라 책임정도가 감경 또는 배제될 수 있다), 나머지 학설에 따르면 착오의 회피가능성에 따라 과실범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되게 된다.

(3) 형법학계의 다수 견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오인한 자에 대한 비난은 법이 요구하

4) 공익성 그 자체는 규범적 평가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익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착오는 형법이론에서 말하는 소위 '포섭의 착오'로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착오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의 인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고, 단지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조각에 영향을 끼칠 뿐이다(손동권,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한 위법성조각규정의 적용상의 문제점, 판례월보 제322호, p. 36).

5) 오영근(2005), 「형법총론」, 서울: 박영사, p. 456 이하 참조.

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에 있을 뿐이고 법배반적 심정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의범에 있어서의 전형적인 범공동체의 가치관념에 대한 배반이 없어, 회피할 수 있는 착오에 대한 책임이 질적으로 과실책임과 일치하는 이상 위 착오는 법적 효과에 있어서 사실의 착오와 같이 취급하는 범효과제한책임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⁶⁾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위 학설을 명예훼손죄에 적용하여 보면, 엄격책임설을 제외한 어느 입장을 취하던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국 무죄가 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면서 책임감경만이 고려되는 엄격책임설이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다는 견해⁷⁾, 보도자의 '성실한 검토의무'를 형법 제310조의 성립에 필요한 특별한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파악하여 보도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가능한 한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 사건에 대한 검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행위불법이 없어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검토의무를 위반하여 행위불법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견해⁸⁾ 등이 있다.

나. 형법 제15조 제1항⁹⁾ 적용설¹⁰⁾

적시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우리나라 형법체계에 있어 적시사실이 진실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찰하면 위법성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이 될 수 없다. 즉 우리 형법상 적시사실의 진실성 여부는 형법 제307조 제2항과 제1항 사이의 형가중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착오에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중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는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그 착오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규정한 명예훼손죄(고의범)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허위를 진실하다고 믿었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고의를 조각하거나(제한적 책임설 등), 고의범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조각할 수 있게 하는(엄격책임설) 소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문제는 우리 형법체계상 일어날 수 없다.

이러한 진실성에 대한 착오의 경우에는 그 적시사실에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고의범 내에서 독일에서 널리 인정되는 면책사유의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적시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공익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진실하고 공익성도 있다고 착각한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착오하는 것, 즉 법률의 착오가 될 뿐이고, 이 경우에는 그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될 뿐이다.

2. 소송법적 효과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이를 사실의 증명으로 보아 입증책임

6) 이재상(2003), 「형법총론」, 서울: 박영사, p. 332 참조.
 7) 김일수, 서복학(2004),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pp. 197~198.
 8) 임웅(2001), 「형법각론」, 서울: 법문사, p. 189.
 9)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10) 손동권(2006), 「형법각론」, 서울: 율곡출판사, pp. 196~197.

의 전환규정으로 해석하여 적시사실의 진실성, 공익성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다수의 견해는 형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주장책임이나 증거제출책임은 있지만, 사실의 입증이 불분명한 경우 불이익이 귀속될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어 피고인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할 경우 진실성, 공익성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이는 상당성의 입증책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한다(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¹¹⁾”고 판시하였고, 민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다¹²⁾”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형법학계에서는 상당성의 실체적 효과와 관련하여 이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문제로 파악함으로써 이를 명예훼손에 있어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주류적 태도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위법성은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위법성의 조각여부가 좌우될 수는 없다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이 위 상당성을 설시함에 있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이라고 함으로써 이를 착오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상당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들여다보면 과연 대법원이 상당성을 착오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상당성의 체계적 지위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III. 상당성과 관련된 형사판결의 내용

1. 허위사실의 증명 및 허위의 인식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

1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1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같은 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으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도7055 판결)”.

2. 상당성이 적용된 사안

“원심은, 이 사건 각 문건에서 적시된 사실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부분은 진실과 일부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나 이 역시 허위의 사실이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는 형법 제 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문건의 배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

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문건들에서 적시한 사실들은 ... 내용으로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였다.

그러나 ...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문건들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피고인으로서 위 각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대학에서의 지위, 위 각 문건의 배포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의 침해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문건을 배포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2193 판결)”.

IV. 상당성의 체계적 지위

우리나라의 다수의 판례는 상당성 요건을 위법성의 인정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반하여, 대법원의 일부 판결례와 일본의 통설, 판례는 상당성 요건을 고의, 과실의 인정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먼저 상당성에 관하여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본 다음 그 체계적 지위에 관하여 논하기로 한다.

1. 대법원 판결

가. 위법성조각사유로 본 판결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 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즉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인바,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3214 판결).”

나. 고의, 과실이 없다고 본 판결

“1.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상해임시정부의 주석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에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통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왜곡된 역사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삼기 위한 의도로 1995. 8. 5. 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21:50부터 22:50까지 16회에 걸쳐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광복 50주년 기획드라마 김구’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제작하여 텔레비전으로 방영한 사실, 김구 선생의 암살사건을 주제로 한 위 드

라마 제1부와 제16부에서는...(중략)...묘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백범 암살사건은 그 범행에 관련되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사망하여 그 범행을 직접 실행한 위 안두희의 진술과 관계자들의 과거 진술내용이나 기록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하는 외에는 달리 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는 전제 하에...(중략)...묘사한 것은 그 진실성이 명백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억측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안두희 등 관계자들의 발언 내용이나 기록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고 피고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드라마의 방영은 위법성을 결여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중략)...시인하였다면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은 단순히 억측만에 기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자료에 기한 것이고, 더욱이 백범 암살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방송 당시 이미 46년의 세월이 지나 위 김창룡 본인은 물론 다른 대부분의 관련자들도 사망하여 백범 암살 사건 또한 역사적 사실이 되어 버린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고의 및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¹³⁾”.

2. 상당성의 체계적 지위

가. 고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에 대하여

(1) 구성요건적 고의, 과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는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진실 혹은 허위사실의 인식이 고의에 내용에 포함되고¹⁴⁾, 그 인식여부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의 진실성 여부가 명

예훼손을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서도 고의의 인식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지 문제된다.

만약 진실성에 대한 인식여부가 고의에 포함된다 고 한다면, 고의, 과실이 없다는 위 대법원의 판결의 태도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즉,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의 대부분은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피고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에도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보도하였다면, 피고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만이 문제된다 할 것인데, 과실은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원고의 청구원인이 피고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주장한다면 피고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는 인정될 것이고, 단지 공익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이 이해한다면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하는 고의, 과실은 고의, 과실의 이중적 지위¹⁵⁾를 인정하는 다수의 형법학자의 견해에 따라 엄격하게 나누어 본다면 구성요건적 고의, 과실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법이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사건에서도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고의에는

13) 위 판결은 역사드라마에 있어서 상당성 판단의 기준으로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1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형법 제309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 역시,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731 판결).

15) 책임판단의 대상은 결의에 의하여 행위로 발전하는 법적으로 비난받는 심정에 의한 행위이며, 따라서 책임은 행위 속에 나타나는 심정으로 인한 행위의 비난가능성을 의미하고 심정은 비난가능성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지만 그것이 책임요소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동시에 책임요소가 되는 이중적 기능을 가지게 된다(이재상(2003). 앞의 책, p. 296).

공연히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여부는 그 인식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¹⁶⁾하고 있으므로(민사상의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은 과실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과실은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인데도 진실이라고 잘못 믿은 과실 또는 공표한 사실의 진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아니라, 예컨대 어떤 사람이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오기하는 등 표시상의 과실이나, 종업원의 비리나 불륜 관계에 대한 허위제보서 등을 잘못 보관하여 타인에게 유출되는 경우 등 공표과정상의 과실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¹⁷⁾), 진실 혹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연히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이상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구성요건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판결에서 고의,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것을 구성요건적 고의, 과실이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 책임고의, 과실

형법학계의 다수의 견해처럼 상당성 문제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엄격책임설을 제외한 어느 학설을 취하든간에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범의 성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고,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을 취할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탈락되어 과실 책임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그대로 손해배상사건에 적용해본

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는데, 공익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고, 공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이 아니어서 위법성은 조각되지 아니하나,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는 적법의를 가지고 법에 따라 행위한다고 믿고 있는 경우이어서, 그러한 의사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책임고의가 탈락하게 되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만이 문제된다 할 것인데, 행위자의 오인에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구성요건적 과실 또는 책임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대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당성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문제로 해석하는 한 위 판결에서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의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책임고의, 과실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대다수의 판결에서 상당성의 유무에 대한 원칙적 판단기준에 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¹⁸⁾”라고 실시하고 있어 일견 행위자의 주관적 착오의 가능성 및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위 97다19038판결에서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

16)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17) 한위수(2004, 봄). 공인의 명예훼손소송 관련 국내 판결의 경향. 『언론중재』 통권 제90호. p. 24.

18) 대법원 2002. 5. 10. 2000다50213 판결.

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는 점”을 상당성 판단의 한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외의 다수의 판결에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¹⁹⁾, 표현방법²⁰⁾을 상당성 판단의 한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는 등 대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당성 판단의 기준들을 살펴보면 대법원이 상당성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대법원은 이를 행위자의 주관적인 착오의 문제로 취급한다기보다는 그 판단의 기준으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과의 이익형량에 따른 위법성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그 표현에 있어 오해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상당성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로 접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나. 검토

형법이 공익성을 위법성조각사유의 한 실체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에 규정된 위법성조각사유를 민사상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도 그대로 인정하는 현재의 태도를 유지하는 한 민사상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고의, 과실이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는 다수의 판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고의, 과실을 구성요건적 고의, 과실과 책임고의, 과실로 구분해서 논의한다는 것도 부자연스

럽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는데 공익성은 인정되지 않고 상당성이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에 공익성의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상당성을 고의, 과실의 요소로 본다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부당한 결론이 발생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현행 형법 하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안에서 진실성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위 위법성조각사유만으로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어 판례는 상당성을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로 추가로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상당성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오고 있는데, 이와 같이 상당성을 민사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V. 상당성 이외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일부 엮보이는 판결들

1. 상당성의 적용상 문제점²¹⁾

전형적인 절대권인 생명권, 소유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그 침해행위가 있으면 위법성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의 권리, 이른바 인격권은 위 생명권, 소유권과 달리 훨씬 추상적인 권리이며 그 침해의 결과도 명확하지 않은 권리라 할 것이고, 또한 그 침해행위는 일

19)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20)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16634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21) 이 부분은 전일원,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을 참조하였다.

반적으로 표현행위의 일부로서 행해지는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원칙에 비추어 그 침해행위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 위법성까지도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 관계에서 발전된 상당성 요건은 명예훼손행위가 있는 경우 일단 위법성을 추정하고, 상당성 요건의 해당여부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이 그대로 민사관계에서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법성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현행 형법체계가 유지되는 한 형사소송에서는 위와 같이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여도 상당성의 적용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사건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면 민사소송에서는 위도식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새로운 위법성 판단의 준칙을 적극적으로 설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상당성 이외의 판단기준을 실시하고 있는 판결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판 결

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에서 직권면직 된 총 21명의 전직 국가정보원 이사관, 부이사관들로서, 국가정보원의 직권면직처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9. 7. 3.경 '국가사랑모임'(약칭 '국사모')이라는 단체를 조직한 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발표 당일인 2002. 8. 5.경 새천년민주당(약칭 '민주당')의 대변인이었다.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검찰수사의 주체, 그 진행과정 등과 관련하여,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정치적 공방이 치열하였다.

2002. 8. 5. 아침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한나라당의 배후에 국가정보원 출신 정보, 공작 전문가들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어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 출신 회원들로 구성되어 한나라당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던 이른바 '국사모'의 정체를 밝히자는 등의 내용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표명하자고 그 의견을 모았다.

이에 피고는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2002. 8. 5. 이회창 후보 아들들의 병역비리 의혹 및 이에 대한 검찰수사의 공정성 촉구 등과 관련하여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논의결과를 기자들 앞에서 정례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중 "한나라당 내부의 정치 공작팀을 즉각 해체하라. 한나라당 내부와 그 주변에 과거 안기부에서 정치공작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움직이며 끊임없이 암약해 온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도 공작을 계속하고 있고, 그 공작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회창 후보 아들들 병역비리와 그 은폐의혹을 규명하려는 검찰 등의 노력을 방해하고, 오히려 진실을 얼버무리고, 호도하고, 은폐하려는 공작이 이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모 의원이 이들의 총책으로 보인다. 이들 조직을 즉각 해체할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이른바 「국사모」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들을 통해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모 의원의 실체는 무엇인지 밝히고, 이 공작팀을 즉각 해체하라. 이런 시대착오적 공작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정당이 공작팀을 운영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한나라당이 처음이다"라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문화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 일간지에 이 사건 발표를 포함한 위 논의결과가 게재되어 보도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이 사건 발표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발표의 내용처럼 '국가사랑모임'이 한나라당의 정치 공작팀으로서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수사 등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그 자유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발표에 즈음하여 국가정보원 등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들에 대하여 '국사모'와 한나라당의 관계 등에 관한 각종 의혹이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계속 제기되었던 사실과 이 사건 당시의 정치적 공방내용, 이 사건 발표의 경위,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대변인이던 피고의 이 사건 발표는 위 병역비리 의혹의 진실 여부, 검찰수사의 공정성 및 검찰수사에 대한 압력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 부수하여 이미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되었던 '국사모'와 한나라당의 관계와 관련된 의혹 등에 관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발표한 것이어서 그것이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판시내용

"이 사건 발표처럼 정당 대변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정치적 논평이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처부할 뿐 그 주장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에서 정당 상호간의 정책, 정견,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 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나.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1) 사실관계

갑은 을과 병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고 속여 액면 2,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받아 가 이를 할인한 후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을과 병을 1994. 10. 13. 성남경찰서에 고소하였다.

갑은 위 고소사건의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같은 달 28. 을과 병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였다.

위 두 사건은 병합되지 아니한 채 각각 수사가 진행되다가 경찰 고소사건도 성남지청에 송치되었고, 성남지청의 담당검사는 갑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1994년 말경 위 두 사건에 대하여 각각 기소중지결정을 하였다.

그 후 갑의 소재가 발견되자 검찰 고소사건이 1996. 12.경 재기되어 을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97. 3. 21. 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그런데 갑은 1998. 9. 3. 성남지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되어 있던 경찰 고소사건에 대한 재

기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의 주임검사가 된 원고는 1998. 9. 24. 을을 소환하여 갑과 대질신문을 하였으나, 을은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호소하기만 하였을 뿐 원고나 참여계장에게 자신이 같은 범죄로 이미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다.

원고는 을을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범죄 후 5년 동안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을을 일단 긴급체포하여 조사를 마쳤는데, 을이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간청하자 원고는 긴급 체포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을을 귀가조치시켰다.

그 후 을이 약속한 기한까지 갑과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소환에도 불응하자, 원고는 경찰에서 송치된 수사기록상의 범죄경력조회 외에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결정된 후 을에게 새로운 전과사실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따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등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998. 10. 23. 을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1999. 2. 5. 위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을이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다음 공판기일이 1999. 3. 12.로 지정되었는데, 을은 1999. 3.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성남지국 사무실로 피고 정을 찾아가 자신이 동일한 사건으로 이중 기소되었다고 제보하면서, 그가 원고나 참여계장으로부터 조사 받을 때 이미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검사에게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말했다니 웃더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정은 을을 취재한 다음, 1999. 3. 3. 원고를 찾아가 '을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확정판결문까지 제시하며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받았다고 변소하였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불법 구금하였다가 그래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자 이중으로 기소하였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에 원고가 '을이 동일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은 채 피의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합의기간을 달라고 호소하여 주임검사로서 업무착오를

일으키게 된 것이며, 검사로서는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 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이중 기소할 검사는 없고, 그러한 일은 검사로서는 자살행위이다. 오해로 인한 왜곡보도를 삼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정은 참여계장과 고소인과의 결탁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위 해명을 믿지 아니하고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를 방문하였는데, 형사1부장검사로부터도 다시 한 번 진상에 관한 설명과 함께 오해에 기한 성급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당부를 받았으나, 원고와의 약 40여 분간에 걸친 대화를 촬영하고 녹음한 내용을 편집한 후,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 하에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보도국으로 보냈고, 보도국은 1999. 3. 6.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이를 방송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인터뷰를 방영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진실이 아닌 이 사건 인터뷰의 내용을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시내용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방송보도의 핵심은 검사인 원고가 피의자에 대한 전과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중 기소를 하였다 는 직무상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고, 이 사건 인터뷰는 이중 기소가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취재원으로서의 근거를 밝히기 위하여 삽입한 것인 점, 피고 정은 취재를 위하여 원고에게 찾아가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해명과 함께 ‘사소한 실수에 불과하다’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기자가 무슨 사실을 확인하느냐, 당신이 수사관이냐’라고 답변하였고, 또 원고는 ‘을이 조사 당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진술을 전혀 한 바 없다’라고 진술하는 한편으로 ‘피의자가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을이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검사에게 말하였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으로서 기자가 이를 정확하게 조사·확인하기는 어려운 영역에 속한다고 보여 지고, 피고들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인터뷰의 내용에 대한 원고의 반론을 인용하여 ‘담당검사는 사건이 고소인 소재불명으로 기소 중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을이 처벌을 받은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라는 취재기자의 설명을 함께 보도함으로써 그 진위 여부에 대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점, 이 사건 방송 보도는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터뷰의 방영은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나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3가합7839 판결

(1)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2002. 7. 29.부터 2003. 9. 30.까지 매주 월, 화요일에 ‘아인시대’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총 124회에 걸쳐서 텔레비전으로 방영하였고, 원고 들은 임화수의 처, 자녀, 친손자, 외손자들이다.

이 사건 드라마는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해방 이후 좌, 우익의 극한 대립 및 6·25 전쟁을 거쳐 1960년대까지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주인공인 김두한을 중심으로 한 이정재, 유지광, 임화수, 시라소니 등 당시 인물들의 일대기를 통해 당시의 정치현황과 그에 따라 부침하였던 주변 인물들을 그리는 방법으로 역사적 사실을 극화하여 표현하고 있는 역사드라마로서, 논픽션 드라마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픽션적 요소가 상당 부분 가미되어 있다.

(2) 판시내용

“특정인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이 있게 되는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중 어느 것을 더 보호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신빙성 등은 물론,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의 이익형량, 드라마가 독자적인 세계를 이루어 픽션으로 승화된 정도, 그 실제 인물이 주인공인지 주변인물인지 드라마에서 차지하는 비중, 작가의 명예훼손 또는 비방의 의도의 유무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사소한 부분이 아닌 드라마 전체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망인을 소재로 한 역사드라마에 있어서는, ① 역사적 사실의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채

해석에 의한 보완과 어느 정도의 추측이 가하여질 수밖에 없고, 또한 작가의 시대관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며 그 평가 또한 새로운 역사적 비판을 통하여 수정되는 점, ② 형법에서는 생존자와 달리 사자(死者)의 경우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는 점, ③ 망인에 대한 유족의 경애·추모의 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감되어 가는 반면 망인에 관한 사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역사적 사실로 이행하여 간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호되어야 하는 점, ④ 망인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로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역사적 사실에 관한 재조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점, ⑤ 특히, 드라마의 경우는 다큐멘터리와 달리 대본과 연출에 의한 창작물이므로 그것이 아무리 논픽션 드라마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인물의 재창조나 줄거리의 구성에 있어 작가나 연출자의 상상에 의한 각색이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드라마의 현실감이나 시청자들에 대한 흥미와 감동을 위하여 작가나 연출자에 의해 어느 정도 실제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면이 부가되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며,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드라마의 장면이 반드시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망인을 모델로 한 역사 드라마의 경우, 드라마의 작가나 제작자가 역사적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의 근거 자료 또는 정황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그 자료 또는 정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설정된 등장인물의 캐릭터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아니 하고,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그 자료 또는 정황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추측, 풍자 내지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적시된 사실이 중대한 허위로서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서울고등법원 2005. 7. 12. 선고
2004나85882 판결

(1) 사실관계 : 위 판결과 동일

(2) 판시내용

“역사적 인물을 모델로 한 드라마가 그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모순, 충돌하는 양자 간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사적 사실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 일반 대중의 욕구는 증대되는 반면, 모델이 된 망인에 대한 유가족이나 일반인의 추모감정은 점진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청자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과 건전한 판단을 위한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창작활동의 자유를 역사적 인물인 망인의 인격권의 보호보다 우선시 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언론매체의 보도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이유는 없고,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제작, 방영에는 기본적으로 허구를 전제로 한 일반 드라마에 비하여 가능한 한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언론기관의 보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드라마로 인한 명예훼손의 책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위법성조각사유에 정한 기준이 일응 적용된다”.

“창작활동의 자유는 언론기관의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에 비하여 그 제한의 강도가 보다 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빈번하게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나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 진위

가 밝혀지지 않거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반인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새로운 자료나 해석 등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드라마에서 묘사된 사실이 역사적으로 진실한 것인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또한 드라마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재조명함으로써 단순한 흥미를 넘어 시청자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선도하고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점과 드라마 제작자에게 항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인 이해사항에 관하여서만 드라마를 제작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 자체가 어느 정도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성’이라는 개념이 적시된 사실이 과연 창작물인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적 사건과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 등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진실성과 공익성은 실질적으로 별도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 요소들이 전부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언론 보도의 경우와 그 의미가 달라지거나 그와 관련된 기준이 완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역사적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망인이나 그 유족은 단순한 풍문, 근거 없는 추측에 의한 왜곡된 평가나 사실적시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드라마를 시청하는 일반 대중 역시 역사 드라마에 방영된 내용을 그대로 역사적 진실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반 대중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해서라도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 아울러 제작자는 그와 같은 자료나 근거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확인 작업을 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작업의 토대 위에서 설정된 역사적 사

건의 해석이나 인물에 대한 캐릭터가 침해되지 않는 한 도 내에서 드라마의 현실감이나 시청자들의 흥미와 감동을 위하여 제작자가 상상을 통한 각색을 하고 연기가 이를 표현하였다면, 비록 그와 같은 드라마의 내용이 실존인물의 인격권을 일부 손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드라마의 제작진이 그 드라마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드라마 제작이 창작활동의 일환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드라마의 제작진에게 불법행위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둘iker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임화수는 이미 동일한 소재를 다룬 서적이거나 드라마 등을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거의 공적인 인물이 되어 있고, 드라마의 내용 중 임화수와 관련된 주요부분은 주인공 김두한을 비롯한 등장인물 등을 통하여 당시의 시대상황을 그리고자 한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전개와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드라마의 작가나 제작자가 임화수와 관련된 드라마의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에 가까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의 자료 또는 근거가 있고, 작가나 제작자가 근거자료의 진위를 망인의 주변인물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 충분한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드라마의 일부 내용이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없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설정된 캐릭터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고 있고,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그 자료 또는 근거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추측, 풍자 내지 과장을 통한 극적 재구성으로서 작가, 제작자 및 연기자의 창작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실에서 제출된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드라마에서 적시된 사실이 중대한 허위로서 고인에 대한 경애 또는 추모의 정을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드라마로 인한 명예훼손의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서울고등법원 2003. 8. 21. 선고
2002나22153 판결²²⁾

(1) 사실관계

원고는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MBC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는 회사로서 'MBC 뉴스데스크'(이하 뉴스데스크라 한다)라는 뉴스 프로그램을 매일 21:00경에 방영한다.

2001. 1.경 방송광고시장의 개방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언론사 상호간에 논쟁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2001. 1. 11.자 동아일보에 위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사를 게재하자, 피고는 같은 날 뉴스데스크에서 '동아일보 탄죽걸기'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신문광고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에서 그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취지의 비판보도를 하였다.

피고는 뉴스데스크에서 '동아일보 탄죽걸기'라는 제목의 보도에 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방송보도를 하였다.

“동아일보의 자본은 99년 말 현재 4,000억 원대, 부채는 3,600억 원으로 한국, 중앙일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동아일보는 지난 96년 한통프리텔 주식 174만주를 44억 원에 사들여 3년 만에 1,000억 원대로 불렀습니다. 주식값이 무려 20배나 넘게 오른 셈입니다. 그래서 88%로 나온 부채비율은 주식투자자로 얻는 1,948억 원의 평가이익을 자본에서 빼게 되면 168%에 이릅니다. 동아일보

에는 자사가 보유한 한통프리텔이라는 기사가 적지 않았습니니다.

금융기관에서 쓴 이자로 돈을 빌려다가 주식투자로 번 돈이 영업이익의 절반이 넘습니다. 관련기자들이 윤리적으로 주식을 사지 않는데 반해 정작 신문사는 주식투자로 재미를 톡톡히 본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문사가 재테크에 나서더라도 어느 누구도 비판하거나 제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고는 1996.경 PCS 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한통프리텔 주식 50만주(전체 지분율 0.57%, 취득가액 4,478,840,000원)를 취득한 이후 유상증자를 받아 79,380주를 더 취득하였다(1999. 12. 31.기준 보유주식은 579,380주이고, 시가는 101,721,746,000원이다).

(2) 판시내용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서 언론사들이 이를 통하여 국가기관, 단체, 개인에 대하여 비판적 기능, 경고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범위도 그 만큼 넓어져야 할 것인바, 언론사간의 광범위한 상호비판은 언론의 부패를 막는 내재적인 안전판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태도나 입장이 자신과 다를 때 올바른 여론형성의 틀을 깨트리지 않는 한 이를 비판하여 견제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또 이러한 비판은 폭넓게 수인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

22) 위 판결에서는 공익성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보도를 함에 있어 앞서 본 공익적 목적 이외에 부수적으로 원고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소 내포되어 있음이 엿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바와 피고의 이 사건 방송보도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형성을 위하여 언론사의 논조 또는 그 운영 행태 등에 관하여 언론사간 건전한 상호비판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방송보도는 위와 같은 상호비판의 일환으로 보여 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송보도의 공익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대법원은 2006. 3. 2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03다52142 판결).

궁하여서도 아니 된다”.

“원고가 은연중에 언론사로서 힘을 행사한 결과 썬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제기 부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이 부분 방송보도는 위와 같은 의혹제기 차원을 넘어 원고가 언론사로서 부당하게 힘을 행사하였다는 단정적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은 점, ‘실질적으로 거의 안 남지’, ‘고생만 하는 거지’ 등의 표현에서, 금융관계 종사자들은 은연중 언론사의 힘에 영향을 받아 대출조건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넉넉히 추지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일반 기업들보다는 썬 이자로 대출을 받아왔으며, 공적 존재인 언론사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악의적인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혹제기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썬 이자와 관련된 사실적 시와 의혹제기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음, 이 부분 방송보도에서 원고가 1996.경 취득한 한통프리텔 주식은 50만주이고, 그 후 유상증자 등으로 79,380주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원고가 174만주를 44억 원에 사들였다고 적시하여 원고가 취득한 한통프리텔의 주식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부분 방송보도는 피고가 취득한 한통프리텔의 주식수가 얼마나 되고, 그 주식을 1주당 얼마에 취득하였느냐에 중점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보도 당시 ‘동아일보 한통프리텔 주식으로 20배 평가이익’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면서 강조하였듯이 취득한 주식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관계없이 44억 원에 취득한 주식이 3년 만에 1,000억 원대로 20배 늘어나 막대한 평가이익을 거두었다는 점에 중점이 두었다고 여겨지고, 원고가 주식 174만주를 44억 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식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의 1주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꼬집어 적시하지 아니한 이상, 상법상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은 액면가 이하로 발행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액면가 이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더구나 당시에 원고만이 다른 여러 컨소시엄 가입자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아 액면가 이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까지 볼 여지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시청자가 이 부분 방송보도를 통하여 원고가 한통프리텔 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대량 취득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부분 방송보도가 시청자에게 원고가 액면가 이하로 한통프리텔 주식을 대량 취득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는 바, 결국 이 부분 방송보도에서 원고가 취득한 주식수를 사실과 달리 보도한 것은 사소한 부분에 오류가 있거나 다소 수치를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고, 주요 부분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VI. 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상당성 요건이고, 상당성에 대한 판단으로 대다수의 명예훼손사건이 해결되고 있는 현실에서 상당성의 판단 기준으로서의 유용한 기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기관이 피고로 되는 명예훼손사건에 있어서는 언론기관의 업무행위에는 필연적으로 명예훼손적 사실의 보도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언론기관의 정당한 업무행위의 결과로 인한 명예훼손행위가 형사적 또는 민사적으로 당연히 위법하고, 단지 공익성, 진실성 내지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

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동일한 차원의 법익임을 고려하여 그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들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형태가 언론기관 사이의 명예훼손사건 등 예전과 달리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상당성 요건의 도식적 적용으로는 그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상당성 요건의 틀에 전적으로 얽매이지 말고,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더욱 세부적이고 타당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정비한다면 지금과 같이 불법행위의 성립여부를 위법성의 판단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 등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인종 차별 방송 심의로 본 호주 언론의 자율규제

곽 기 성

호주 시드니대학교 교수, 언론학

2005년 12월 초, 전 세계의 언론은 호주에서 발생한 인종 폭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국내 언론 역시 분노한 호주인들의 표정을 담은 로이터 사진과 함께 다민족, 다문화 사회이지만 인종 갈등이나 대립이 전무한 평화로운 나라로 인식되어 온 호주에서의 폭동 소식을 상세히 다룬 바 있다. 이처럼 세계 언론이 이례적인 호주의 인종 폭동 사태에 관심을 보였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1900년대 초 호주 연방이 수립된 이래 1960년대까지 호주가 국가 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백호주의(White Australian Policy)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한 시대착오적 분위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폭동은 금방 진압되었지만, 1년여가 지난 금년 3월, 호주 방송 규제기구인 호주 통신 방송 위원회(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는 당시 폭동기간 동안 한 특정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이 인종 차별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함으로써 청취자들로 하여금 특정 민족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고 이것이 결국은 폭동을 조장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본고에서는 호주 언론의 규제 기구를 간단히 소개하며, 문제가 된 프로그램의 내용과 심의 여파를 다룬다. 그리고 이번 결정으로 드러난 호주 방송 규제에의 기본 틀, 즉 자율규제의 문제점과 규제기구의 역할을 살펴본다.

I. 호주의 언론 규제기구

호주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 형태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각 매체의 관련사들이 집단적으로 행하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이다(표1 참조). 방송의 경우, 두 개의 공영 방송사(ABC: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SBS: Special Broadcasting Service)는 각기 독자적인 자체 현장에 의한 개별적 자율규제를 행하고, 그 밖의 지상파 텔레비전, 라디오, 유료방송 등 상업 방송사들의 자율규제는 같은 유형의 방송사별로 행해지는 집단적인 형태이다. 방송법에 따라 모든 유형의 방송은 자체적으로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을 만들어 이를 호주 통신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통신 방송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하며, 또한 윤리강령 준수여부에 대한 심사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 조사해야 한다. 준수여부에 대한 심사는 시청자나 청취자는 물론, 방송사도 의뢰할 수 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그리고 신문) 간의 교차소유가 허용되고 있지 않은 호주 방송 소유구조의 특성상, 호주 텔레비전 방송사와 라디오 방송사는 각기 다른 자율기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자율 규정 역시 각기 다르다. 텔레비전 자율기구는 FreeTV이며, 라디오 자율기구는 상업 라디오 방송 협회(CRA: Commercial Radio

Australia)이다. 신문과 잡지의 경우는 호주 프레스 평의회가 정하는 실천강령에 준한다. 한국의 경우 인쇄매체와 방송 내용에 관한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지만, 호주의 경우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중재 기구가 따로 없이 각 규제 기구가 불만 처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중재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호주의 언론 자율기구 및 규제/심의 기구〉

	자 율 기 구	심의/규제 기구
신문, 잡지	Press Council	Press Council (프레스 평의회)
방 송	텔레비전: FreeTV (상업 텔레비전 방송 협회) 라디오: CRA (Commercial Radio Australia) 유료 방송: ASTRA (Australian Subscription Television & Radio Association)	ACMA (통신 방송 위원회)
광 고		Advertising Standards Bureau(광고 협회)

1. 호주 프레스 평의회

(APC: Australian Press Council)

호주 프레스 평의회는 인쇄매체인 신문과 잡지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율단체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성 그리고 엄격한 도덕성 추구를 주요 목적으로 1976년 출범하였다. 언론의 자유라 함은 언론의 취재, 보도 자유라기보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독자의 알 자유'를 뜻한다. 언론의 책임과 도덕성은 당연히 독자의 이익과 공익을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다. 프레스 평의회가 행하는 주요 기능은 독자들의 불만/불평 창구로서, 책임 있는 독립적인 언론 그리고 수준 높은 고질의 저널리즘을 추구한다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프레스 평의회는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Australian Press Council, 2006).

- 신문, 잡지, 인터넷 형태로 인쇄되는 내용에 대한 불평/불만 내용을 접수, 처리한다.
- 회원사들이 독자들의 불만 및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권장한다.
- 공익을 위한 정보 전달을 저해하거나 독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정치적, 사법적, 상업적 사안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이에 단호하게 대처한다.
- 표현의 자유와 정보 수집의 자유 등 언론 이슈에 대해 정부와의 대화는 물론 공청회나 포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연구 및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관련 이슈를 일반인에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프레스 평의회는 1976년 설립된 이래 주요 언론사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적지 않은 골목을 겪어왔다. 우선은 호주의 정통 언론사인 『페어팩스』(Fairfax)가 1982년에야 가입했고, 루퍼트 머독 소유의 『뉴스 리미티드』(News Limited)는 1980년 탈퇴한 후 1987년 재가입했으며, 「지역신문협회」(Australian Suburban Newspaper Association) 역시 수차례에 걸쳐 탈퇴-재가입하는 등 회원사들이 유동적인 행태를 자주 보여 왔다. 이런 유동적 현상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것은 1987년 당시 기자들의 대변 기구인 「호주 기자협회」(AJA: Australian Journalists Association)가 프레스 평의회에서 탈퇴한 것이다. 1987년 총선을 앞두고 애덜레이드의 한 신문이 논설을 통해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당(Liberal Party)을 지지하는 글을 실었는데, 이에 대해 당시 여당인 노동당(Labour Party) 정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프레스 평의회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평의회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당시 평의회 회장은 정부의 이런 처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사임하였으며, 이 때 탈퇴한 기자협회는 현재까지도 프레스 평의회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프레스 평

의회는 모든 신문, 잡지사들이 가입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배제하고 있다. 즉 평의회의 원칙과 철학이 자사의 논조와 상이하고 언론 업무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협회에서 탈퇴할 수가 있다.

프레스 평의회는 회원사인 신문, 잡지사의 재정후원으로 운영되며, 이사회가 회원사로 대표되는 방송 자율기구인 FreeTV의 경우와는 달리, 평의회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형성되어 있다. 2007년 현재 평의회 위원은 총 22인이며, 이 중 12명은 회원사를 대표하고 나머지 10명은 비 언론인이다. 이 외에 프리랜서 기자(3인), 편집인(2인) 그리고 언론인 협회가 소속되어 있는 MEAA(Media, Entertainment and Arts Alliance)를 대표하는 1인이 더 포함된다. 회원사를 대표하는 12인은 수도권에서 발행되는 중앙지, 지방지, 지역 신문 등 모든 종류의 신문사를 대표한다. 비 언론인은 경력, 사회봉사도, 경험,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선출되는데, 호주 8개 주의 각 주에서 최소한 한 명씩 선출되며 성별 측면에서 볼 때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현재 비 언론인 10인 중 여성은 6명이다.

위원장은 과거에 언론직에 종사한 적이 없는 언론과는 무관한 사람 중에서 선임되며 전통적으로 전직 대법원장 등 주로 법조계 출신의 인사들이 이사장직을 수행해왔으나, 2000년 새로 부임한 신임 이사장 케니스 맥किन(Kenneth McKinnon)은 대학 부학장 출신으로 최초의 비 법조인 이사장이 되었다. 부 이사장은 이사회와 일반인 출신 위원들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다수의 일반인을 평의회의 주요 결정기구에 참여하게끔 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잣대에 준하여 강화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평의회는 1996년 그동안 접수된 독자들의 불평, 불만을 바탕으로 신문, 잡지사의 실천강령적인 'Statement of Principles'의 내용을 수정한 바 있다.

실천강령은 신문, 잡지사들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협회가 불만내용을 처리할 때 근거하여 적용하는 일반원칙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ustralian Press Council, 2006).

- 1) 허위 내용이나 근거가 불분명하고 정확치 않은 내용을 확인 없이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
- 2) 기사화 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특정인을 명예훼손 한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정정 혹은 사과기사를 발표해야 한다.
- 3) 독자의 사생활과 개개인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사생활 문제에 관련된 사항이라도, 이 사항이 공익적으로 중요한 이슈임이 명백할 때에는 이를 기사화 할 수도 있다.
- 4) 정당치 못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정보는 공익의 절대적인 관심사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고는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 5) 논쟁의 소지가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분명한 논조를 취할 수 있으며, 이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사실 기사와 의견 기사를 구분해야 한다.
 - 사실을 보도치 않거나, 거짓 보도해서는 안 된다.
 - 사실을 어떤 형태로든 왜곡해서는 안 된다.
 - 특정 광고주 등 상업적 이익이 기사 보도나 의견기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 6) 신문과 잡지는 다양한 취향을 추구할 수 있으나, 그 취향이 독자에게 불쾌할 정도로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 7) 특정 인종, 종교, 민족, 국가, 성, 장애인, 신체적 질병 그리고 결혼 유무와 특정 연령층을 불필요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익의 관점에서 중대한 시안일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를 할 수 있다.
- 8)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비난의 대상일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넌을 통하여 균형 있는 기사를 실어야 한다.
- 9) 프레스 평의회가 판결을 내린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신문이나 잡지사는 지면을 통해 이를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

〈독자 불만 처리과정〉

독자들은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 사설, 삽화 등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 특정 기사에 대한 불만은 호주 기자협회가 소속된 호주 언론, 예능, 예술 협회(MEAA: Media, Entertainment & Arts Alliance)산하의 사법 위원회(Judiciary Committee)가 맡고 있다. 특정 기사, 사설, 혹은 삽화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독자는 우선적으로 해당 신문사나 잡지사에 문제되는 사항을 전달하고, 이런 사안에 대한 해명 내용에 대해 납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사가 출판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프레스 평의회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불평/불만의 전달 및 처리과정에서 프레스 평의회는 모든 독자들에게 그 과정이 손쉽고, 경제적 부담을 전혀 지우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불만 처리 신청자가 변호사를 통하여 불만을 전달하는 경우, 변호사는 처리과정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되며, 또한 궁극적으로 해당 불만 내용을 다루는 사람은 최초 불만 신청자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인쇄매체에 대한 불만 건수는 당연히 잡지보다는 신문이 압도적으로 많고, 프레스 평의회가 구별하는 불만 내용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다.

프레스 평의회에 접수된 불만은 그 내용에 따라 평의회 산하의 불만위원회(Complaints Committee)에서 이를 검토하게 되는데 불만위원회 임원에는 일반인이 반드시 포함된다. 불만위원회에서 검토된 불만 사항이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해당 기사를 실었던 신문사나 잡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해당사는 이에 이의가 없으면 이 사실을 매체에 게재해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평의회 판결을 인정하지 못할 시에는 사설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문과 잡지에 대한 일종의 감시 기구라고도 할 수 있는 프레스 평의회는 효과적 기능 수행

에 대한 문제점들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그 중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평의회가 가질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거의 미비하다는 점이다. 우선 방송 감시기구인 호주 통신 방송위원회와는 달리, 프레스 평의회는 강령을 위반한 매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한, 방송 인가권과는 달리 신문이나 잡지의 발행을 금지시킬 수 없는 것은 물론, 규율을 다반사로 위반하는 편집자나 발행인에 대해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스 평의회는 감시기구로서의 위상을 충실히 유지해 왔다. 평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인쇄매체를 상당히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 규정상 평의회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매체는 이를 반드시 게재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서 야기되는 부수적인 번거로움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신문사나 잡지사로서는 해당 이슈를 더욱 더 신중히 다룰 수밖에 없고, 이것은 그 과정에서 독자들에게 비치는 이미지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2. 호주 통신 방송 위원회(ACMA: Australian Communication and Media Authority)

호주 통신 방송 위원회는 기존의 방송위원회(ABA: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와 통신위원회(ACA: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를 통합하여 2005년 7월 출범한 기구로 방송, 인터넷, 무선 통신, 통신 분야를 규제한다. 호주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의 통합은 통신과 방송 그리고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스펙트럼을 탄력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융합에 따른 규제변화를 필연적으로 인정했고, 그 가운데에서도 방송/통신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스펙트럼을 효과적으로 조정/관리해

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통합을 추진케 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2007년 현재 위원회 임원은 총 7인으로, 위원장 1인(상근), 부위원장 1인(상근) 그리고 5인의 평위원(1인: 상근, 4인: 비상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위원들의 경력과 전문 분야를 보면 방송 관련 2인, 통신 관련 2인, 경쟁위원회 출신 1인으로 다양하다.

ACMA의 방송 관련 규제영역은 다음과 같다.

- 스펙트럼 조정 및 관리
- 방송 인가권 행사
- 방송의 다양성 및 콘텐츠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업 방송사의 소유 규제
- 특정 이슈에 대해 프로그램 기준 혹은 인가 조건 내용을 고안한다.
- 방송 종류별로 행해지는 자율 실천강령 내용이 지역사회를 보호하도록 유도 개발

〈시청자/청취자 불만 접수 및 처리〉

시청자나 청취자가 특정 방송(ABC와 SBS 등 공영 방송도 포함)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우선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해당 방송사에 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방송사의 답신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다시 ACMA에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만 내용이 실천 강령에 관한 위반 사항일 때는 해당 방송사에 우선적으로 제출하나, 실천 강령과 관련 없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불만 내용을 ACMA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텔레비전 캡션
- 담배 광고
- 정치 광고
- 선거물

- 커뮤니티 라디오의 스폰서 공고
- 의약 광고
- 어린이 방송 규정, 호주 콘텐츠, 엔티 사이포닝(스포츠 중계권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

방송법(11조)에 따라, ACMA는 모든 불만 안전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 또한 개인적인 정보가 법정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보고서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 특정인(불만 제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공표할 시에는 ACMA는 그 특정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조사 보고서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출시키지 않는 것이 ACMA의 일반적 관행이다.

II. 2005년 12월 방송에 대한 불만 내용과 ACMA의 심의 결과

2005년 12월 11일 5,000여 명의 호주 젊은이들이 크로놀라 해변가에 모여 중동계로 보이는 젊은이들에게 폭력을 가했고 이런 상황은 다음날까지도 계속되었다. 이 난동 중에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이후 난동은 곧 진압되었다. ACMA는 이 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불만 신청자들은 2005년 12월 5일부터 9일 사이에 방송된 “Breakfast with Alan Jones”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이 폭력을 조장하고 특정 인종 출신(레바논 출신 및 중동계)을 비방하고 이들에 대한 반감을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해당 방송사인 2GB에 공식적인 항의서를 제출했으나, 이에 대한 2GB의 답신이 불충분하다며 이를 다시 방송 규제 기구인 ACMA에 제출하였다. ACMA는 항의 내용을 1년여 넘게 검토하여 지난 3월초 최종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다.

문제가 된 방송사는 2GB 채널의 상업방송사로, 소

유주는 Harbour Radio이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Breakfast with Alan Jones"라는 토크백(talkback) 프로그램으로,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방송되는데, 주로 청취자들이 전화통화로 호주 사회의 일상적인 제반 시사 이슈에 대해 진행자와 대화를 나누며, 진행자의 개인적인 의견은 물론 사회 각 분야 인사들과의 인터뷰와 논의도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당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알란 존스(Alan Jones)는 호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방송인 중 한 명으로 그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항상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다. Jones는 이전에도 그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수차례 문제를 일으킨 바 있는데, 예를 들면 '1993년의 호주인'으로 원주민이 선정되자 이를 모독적이라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었고, 수차례에 걸쳐 사회적, 정치적 발언이 문제화되어 법정 소송을 당하기도 한 그야말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방송인이다.

접수된 총 8개의 안건 중에는 문제가 된 방송 내용 중 일부가 (시드니가 속해 있는)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NSW)주에서 적용되는 반 차별법(Anti-Discrimination Act 1977, NSW)에 위반되는 것으로 제기되었다. 현행 방송법(Broadcasting Service Act 1992) 2조 8(1)(g)항은 '상업 방송사는 각 주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반 법에 위반되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항은 방송 허가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ACMA는 우선 반 차별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반 차별법 20(1)항은 '특정 인종에 대해 혐오감(반감), 경멸감, 심한 조롱의 대상으로 조장하는 것은 불법(unlawful)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될 경우 대부분은 벌과금이 부과될 뿐 범법행위로 간주되진 않는다. 동 법은 민사상의 처벌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차별 행위나 태도가 어느 정도의 수위에 해당되는지 우선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차별 행위나 태도가 차별 대상에 대한 신체적인 위협을 포함하고 있는지, 혹은 신체적 위협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민사상 처벌을 추진할 경우 해당 주의 검찰 총장(State Attorney-General)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방송의 경우 반 차별법 하에 민사상 처벌이 행해진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ACMA는 이번에 접수된 안건들을 인가 조건 조항에 적용하여 심의하지 않았다.

ACMA의 심의과정 중 가장 근간을 이룬 기준은 CRA(Commercial Radio Australia: 상업 라디오 방송 협회)의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이다. 1930년 출범한 상업 방송사 협회는 상업 방송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만든 기구로 2002년 기존의 FARB(Federation of Australian Radio Broadcasters)에서 CRA로 개명되었다.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규제는 방송법이 정하는 인가조건에 준하며, 동시에 CRA가 자발적으로 만든 실천 강령에 따라 행해진다. 실천 강령의 내용은 방송 규제기구인 ACMA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강령 내용은 정기적으로 검토된다. 현 강령은 라디오 방송사, ACMA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2년 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2004년 9월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으며, 금년(2007년) 말 공식적인 재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강령이 얼마나 자주 재검토될 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ACMA는 필요시에는 공식적인 재검토 기간이 아니더라도 재검토 요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인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ACMA는 심의과정에서 방송 내용이 상업 방송사 실천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했는데, 프로그램 수칙 부분의 중상, 비방에 관한 1.3(a)항과, 인종 차별 방송을 금하는 1.3(e)항이 적용되었다. 실천 강령 1.3(a)항과 1.3(e)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a) 폭력이나 잔혹한 행위를 선동, 조장, 혹은 권장할 소지

가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A licensee must not broadcast a program which is likely to incite, encourage or present for its own sake violence or brutality)

1.3(e) 연령, 민족,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혐오감/증오감을 조장하거나 증상할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A licensee must not broadcast a program which is likely to incite or perpetuate hatred against or vilify any person or group on the basis of age, ethnicity, nationality, race, gender, sexual preference, religion or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ACMA가 접수한 총 불만 건은 8개였는데 이 가운데 3가지 항에 대해 일종의 '유죄'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5가지 항은 '무죄' 결정을 내린 셈이다. 유죄 결정을 내린 3가지 내용과 ACMA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불만사례 1. 12월 7일 방송된 프로그램이 폭력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아래의 내용을 방송했다.

(청취자 J씨와의 통화 후에, 진행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

진행자 : J씨의 말이 맞습니다. J씨는 경찰과 시의 대응이 다분히 미온적이라 합니다. 사태 진정을 위한 행동은 취하지 않고 말만 앞세운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레바논계 말쑥꾸러기들이 크로놀라역에 당도할 시에 바이커족(biker gangs)들로 하여금 이 녀석들을 맞게 하는 겁니다. 바이커족들은 물론 비난도 받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비겁한 레바논계 녀석들이 바이커족을 보는 순간 놀라서 허겁지겁 기차로 되돌아가는 장면은 입장료를 내고 볼 정도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을 TV 카메라에 담아 저녁 뉴스 시간에 방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녀석들의 부모, 가족, 친구들이 이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호주 사람들이라면 이런 쓰레기 같은 녀석들에 대해 이해나 관용을 보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ACMA는 보통 청취자라면 위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폭력을 행하게끔 자극시키고, 폭력을 권장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고,
-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폭력을 행사하도록 고무하고,
- 폭력 사용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충분히 보여 질 수 있다.

ACMA 보고서는 레바논계 기차 승객들을 겁주기 위해 바이커족을 데려오자고 한 제안은 레바논계 혹은 중동계인들이 호주인들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갱 집단을 만들었고, 이들은 법을 존중하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무기력 하다고 하는 다른 코멘트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CMA가 보충자료로 제시한 방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업이 경찰인 청취자가 보내온 편지를 진행자가 읽음)

진행자 : 이름을 밝히지 않아 달라는 한 경찰관이 보내온 편지 내용입니다. 저는 16년 동안 경찰직에 몸담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중동계 젊은이들은 호되게 버릇을 고쳐줘야만 말귀를 알아들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녀석들은 회초리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더욱 더 악화될 것입니다. 경찰로서는(강압적으로 진압하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제도 때문에 이를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으로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순 있겠지만, 법을 위반하는 순간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중동계 녀석들은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몽둥이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 녀석들은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법정에 불러 나와서도 웃는 녀석들입니다.

즉, 바이커족 초대를 승인한다는 것은 폭력을 권장하고 따라서 폭력을 승인한다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 위반 이유이다.

불만 사례 2. 2006년 12월 7일 방송된 프로그램이 민족, 인종, 국적에 근거하여 레바논계 혹은 중동계 소수 민족에 대한 혐오감/증오감을 조장하거나 이들을 중상할 소지가 있는 아래의 내용을 방송했다.

(청취자 J씨와의 통화 후에, 진행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

진행자 : J씨의 말이 맞습니다. J씨는 경찰과 시의 대응이 다분히 미온적이라 합니다. 사태 진정을 위한 행동은 취하지 않고 말만 앞세운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레바논계 말썽꾸러기들이 크로놀라역에 당도할 시에 바이커족(biker gangs)들로 하여금 이 녀석들을 맞게 하는 겁니다. 바이커족들은 물론 비난도 받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비겁한 레바논계 녀석들이 바이커족을 보는 순간 놀라서 허겁지겁 기차로 도망가는 장면은 입장료를 내고 볼 정도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TV 카메라에 담아 저녁 뉴스 시간에 방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녀석들의 부모, 가족, 친구들이 이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호주 사람들이라면 이런 쓰레기 같은 녀석들에 대해 이해나 관용을 보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GB는 알란 존스의 코멘트가 몇몇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해명했다. 하지만 ACMA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인 예로 들며 피크닉 지역을 중동계가 독차지

하고 있다는 코멘트는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고 했다.

진행자 : (청취자의 이메일을 읽음) 이곳 크로놀라에 사는 사람들은 중동계 사람들 때문에 이곳 피크닉 지역에 가지 않습니다. 중동계 사람들은 위험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영웅인 호주인 인명 구조대의 도움을 받죠. 제발 우리 미래의 호주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그냥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레바논 깡패'와 '중동계 사람'을 '호주인'과 따로 분리해 지칭함으로써, '레바논 깡패'와 '중동계 사람'을 '호주인'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CMA는 위의 방송 내용에서 '레바논 깡패'와 '중동계 사람'을 빈번하게 언급한 것은 명백히 특정 인종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불만사례 3. 2006년 12월 8일 방송된 프로그램이 민족, 인종, 국적에 근거하여 레바논계 혹은 중동계 소수 민족에 대한 혐오감/증오감을 조장하거나 이들을 중상할 소지가 있는 아래의 내용을 방송했다.

(12월 8일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청취자 B와의 전화통화 내용)

청취자 B: 크로놀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태를 듣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폭력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저는 중동계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크로놀라의 문제 지역에 가 봤는데 중동계 사람들에 대한 경멸적인 말들이 회자되고 있었고 그들을 겨냥한 적대적인 선동행위들을 목격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이슈가 있지만 모든 문제에는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

진행자 : 글썄요. 경찰이 모든 걸 바로 잡고 사태를 진정시키지 않을까요?

청취자 B : 그럴까요? 하지만 모든 문제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진행자 : 네. 하지만 BBC 우리 양면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시드니 서부 지역에서 앵글 색슨계 청소년들이 부녀자를 성폭행 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양면성이라는 듣기 좋은 얘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프로그램은 전국 각지에 사는 부모들이 보내는 서신물이 쇄도하는데, 이 중 카톨릭, 프로테스탄트(개신교도), 앵글리칸(영국 성공회)에 대해 불평하는 경우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취해야 하는 입장은 이 사회는 모든 나라사람들의 이민을 환영하지만 정해진 조건과 기준을 충족시킬 시에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런 조건과 기준이 지금 제대로 충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비난받아야 할 몫이 있다는 등의 완곡한 표현들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시드니에 갱들이 있다는 것과 그 갱들이 모두가 특정 소수 민족 출신자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시드니 전역에 걸쳐서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고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읽어드린 서신 내용에서도 이런 사실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

한 청취자가 전화 통화를 통해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자 진행자는 ‘앵글로 색슨계 젊은 이들이 서부 시드니에서 여성들을 강간하진 않는다’며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듣기 좋은 ‘양면성’에 집착하지 말자며 청취자의 발언을 무시했다는 것이 ACMA의 판단이다. ACMA는 또한 위의 통화 내용 중 종교적인 요소와 이민자 사회의 수준이 언급됨으

로써 특정 인종과 종교를 비하하는 듯한 암시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부 시드니 지역에서 백인 여성 강간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이 레바논계로 밝혀졌고, 이 사건은 한동안 언론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ACMA는 상기 방송 내용이 그 강간 사건과 중동계 출신들의 범죄 행위 그리고 그들의 반(反) 사회적인 성향을 분명히 연계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III. ACMA발표에 대한 각계의 반응

ACMA의 발표 직후 2GB는 성명서를 내고 “해당 프로그램의 주 청취층은 이들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쉽게 흔들리거나 자극받지 않는 55세 이상의 호주인이다. 또한 ACMA에 불만이 전달된 시기는 ABC-TV에서 알란 존스 프로그램 원고의 일부를 방송한 직후이다. 게다가 불만 신청인들은 그 프로그램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다”라며 ACMA의 심의 과정에서 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GB의 모회사인 머쿼리 라디오(Macquarie Radio Network) 주식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는 존 싱글톤(John Singleton)은 ACMA의 이번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ACMA가 취할 조치에 대해 하겠다고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2GB와 알란 존스의 명예는 이미 상당히 훼손되었지 않은가? 더 이상의 조치가 없길 바란다(cited in Bodey, 2007)”.

알란 존스 역시 프로그램의 극히 일부분만을 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보고서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의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은 폭동 당시 내가 읽었던 수많은 이메일 중 단지 3개의 이메일에 불과한 것인데 내가 그 이메일을 읽은 이유는 폭동에 분노한 청

취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그 내용을 내가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나로서는 단지 청취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토크백 쇼의 특성상 몇몇 화난 청취자들의 목소리를 대독했을 뿐이다. 폭동기간 동안 나는 단호하고 효과적인 경찰의 대응을 촉구했고, 청취자들에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신신당부했다 (cited in *ABC Media Watch*, 16 April 2007)".

호주 프레스 평의회와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데이빗 플린트(David Flint)는 난폭한 레바논계 갱 집단들이 크로놀라 해변가로 몰려가 인명 구조원을 폭행함으로써, 젊은 호주인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맞섰을 뿐 호주 언론이 이런 사태 악화를 부추겼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알란 존스를 옹호했다.

알란 존스와 오랜 동안 개인적 친분을 쌓아온 존 하워드(John Howard) 수상은 "나는 알란 존스가 호주 사회에서 편견을 조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많은 호주인들이 생각하는 바를 잘 대변해 주는 탁월한 방송인이다"라며 Alan Jones를 옹호했다(*The Australian*, 11 April 2007). 또한 야당 당수인 케빈 러드(Kevin Rudd) 역시 "알란 존스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앞으로도 참여할 것"이라며 알란 존스의 무고함을 간접적으로 비추었다. 양 당의 총수가 ACMA의 결정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금년 말 연방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호주 앵글로 색슨 주류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알란 존스를 쓸데없이 비난하여 유권자들의 표를 잃을 필요가 없다는 저의에서 나온 평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반면 ACMA의 판결이 상당히 관대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ACMA가 심의한 안건이 모두 8건이었는데 이 중 다섯 건은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즉, 그가 방송했던 대부분의 내용이 인종 차별이나 폭력을 조장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2월 6일 방송된 내용

중 한 청취자가 '그 녀석들 중 한 명만 쏘면 전부 도망갈 것'이라 하자 진행자는 '네'라며 가볍게 웃어 넘겼다. 이에 대해 ACMA는 알란 존스가 웃으면서 답한 이 내용은 청취자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대화를 종결하려는 의도였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12월 8일자 내용 중 진행자는 '이번 일요일은 레바논인들에게 보복하는 날이니 모든 호주인들은 크로놀라 해변가로 모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프로그램 진행 중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다. 이에 대해서도 ACMA는 호주 지역 사회에서 여러 종류의 소요 및 갈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반복해서 읽었다고 해서 알란 존스가 폭력을 조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ACMA가 발표한 내용은 불만 내용 중 최소한의 내용만을 밝힌 미약한 보고서라고도 볼 수 있다.

지난해 NSW(New South Wales)주 경찰청이 크로놀라 사태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는 사태 당시 2GB를 포함한 언론 매체들이 인종 차별적이고, 부정확하고, 과장된 표현들을 사용하여 폭동을 선동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형사법을 적용하진 않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워드 수상과 야당 당수가 알란 존스를 옹호하는(즉 ACMA의 발표를 무시하는) 발언은 현재 보수 성향이 대체로 강한 호주 정치권의 저변에 아직도 인종주의와 국수주의의 물결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인 자유연합당 그리고 야당인 노동당은 지난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의 강력한 대 테러전에 합세해 반 이슬람, 반 중동이라는 '마녀 사냥'에 집착해 왔는데 이런 이유로 그들의 정책을 방송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지해 온 알란 존스를 보호해 주려한다는 견해도 있다 (Michaels, 2007).

사실상 9.11 테러 사태 이후 호주의 외교 정책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 테러 정책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하워드 수상의 친미 일변도 노선은 더욱 강화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 내 무슬림 지도자 중 한 명인 셰익 엘힐라리(Sheik Taj el-Dene Elhilaly)는 국내·외에서 공공연히 반 호주적인 발언을 일삼아 호주 언론은 물론 정치인들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그는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들이 옷을 단정치 않게 입으면 성폭행 표적의 대상이 된다'며 호주에서의 이슬람교 차별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었고, '모든 무슬림들이 이란이 외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투쟁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일삼았다. 정치권에서는 호주 시민권자가 어떻게 그런 반 호주적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엘힐라리를 비난하였는데, 야당은 그가 지니고 있는 시민권 적법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대법원장에게 요청했었고, 이민성 장관은 그가 호주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살고 싶은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고 했다. 호주의 전국지인 『The Australian』지는 엘힐라리의 발언은 호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정치권의 비난에 동참했다.

이런 모든 상황의 전개를 고려해 볼 때, ACMA보고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과 해석은 9.11 테러 사태 이후 한층 강화된 미국과의 공조를 합리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의도는 루퍼트 머독 소유의 전국지인 『The Australian』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ACMA 발표 직후 동 신문은 사실을 통해 알란 존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고, ACMA의 결정이 호주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를 뿌리는 계기라 힐난했다. 그러나 무슬림 지도자인 엘힐라리의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언론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반면 방송 주무 부처인 통신성의 헬렌 쿠난(Helen Coonan) 장관은 "자율 실천 강령 내용에 문제가 있

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할 것이다"(Coonan, 2007)라며 금년 9월부터 시작되는 재검토 기간 중에 보다 강경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실천 강령에 포함될 것임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

IV. 결론

ACMA는 2GB에 대해 취해질 제재 조치를 검토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ACMA가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를 대략 세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다. 첫째는 2GB의 방송권을 취소하거나 인가 조건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둘째로는 ACMA와 2GB 경영진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벌과금과 법적 소송 가능성을 포함하는 내용을 상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강제력은 없지만 사전 검열제를 실시하여 2GB로부터 향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받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한 효과적인 것으로 두 번째 방법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인 방송 인가권에 관한 제재는 결국 방송사로 하여금 문을 닫으라는 것이고, 세 번째 방법은 ACMA의 위상이 너무 미미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알란 존스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이런 과도한 조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번 ACMA보고서를 계기로 제기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이슈는 호주의 방송 자율규제가 과연 얼마나 잘 행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 범위에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하는지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규제기구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규제는 가능한 한 삼가는 것이 보편적이다. 현 자율규제 하에서 ACMA의 역할은 미비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1990년대 말 언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캐쉬 포 코멘트(cash for comment) 사건 때 ACMA(당시 ABA: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미 잘 나타난 바 있다. 캐쉬 포 코멘트는 말 그대로 유명 방송인이 광고주나 스폰서로부터 그 방송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호의적인 코멘트를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당시 2UE 라디오방송의 인기 토크쇼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던 알란 존스와 존 로즈(John Laws)는 콰타스(Qantas) 호주 항공사, 시드니의 스타 시티(Star City) 카지노 등 특정 회사와 방송 홍보를 조건으로 수차례에 걸친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방송인이나 방송사에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었다.

이번 ACMA의 유죄 결정으로 호주 방송규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1992년 이전까지 호주의 방송은 당시 정부 규제 기관인 방송평의회(ABT: Australian Broadcasting Tribunal, ABA의 전신)의 통제 하에 법적 구속을 받아 왔다. 1992년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들은 최소한의 통제와 함께,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비해 영향력이 미약하다는 그릇된 가정 하에 그간의 ACMA의 상업 라디오방송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 왔으며, 방송사의 자율규정과 병행하여 방송위원회 통제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이전까지 정부의 방송통제를 경험한 바 있는 방송사들에게 1992년 이전에 가해졌던 것과 같은 정도의 통제가 재개된다면 이는 방송규제의 역행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력한 방송통제가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ACMA의 상업 라디오에 대한 간섭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ACMA의 고민은 자율규제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간섭을 행할 것이냐는 데에 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 변수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이에 대해 ACMA가 얼마만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방송 규제의 핵심 관건이라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ABC-TV(2007). *Media Watch: Alan Moans*, 16 April. www.abc.net.au/mediawatch/transcripts/s1898662.htm (Accessed on 18 April 2007).
-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2006). *Investigation Report No.1485*, Sydney: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 Bodey, M.(2007). 'Singleton Savages Watchdog', *The Australian*, 12 April.
- Bodey, M. & Kavelas, P(2007). 'Guilty Jones Attacks Media Watchdog', *The Australian*, 12 April.
- Day, M.(2007). 'There Must Be a Reckoning for Jones' Vitriol', *The Australian*, 12 April.
- Australian Press Council(2006). *Objects, Principles and Complaints Procedure*, Sydney: Australian Press Council.
- Commercial Radio Australia(2004). *Codes of Practice and Guidelines*, Sydney: Commercial Radio Australia Ltd.
- Coonan, Helen(2007). *Media Release: Senator the Hon Helen Coonan, Minister for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Canberra.
- Michaels, Fergus(2007). *Australia: Bipartisan Support for Media Instigator of Cronulla Race Riot*, 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Fourth International (ICFI), 18 April 2007. www.wsws.org/articles/2007/apr2007/acma-a18.shtml (Accessed on 26 May 2007)
- The Australian*(2007). 'Howard Defends Outstanding Jones', 11 April.

언론조정 신청에서 보인 ‘피해’ 주장과 취재관행의 문제

김민남

부산 중재위원,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고 또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 10일 부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민남 위원(부산 중재위원,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이 『언론조정 신청에서 보인 ‘피해’ 주장과 취재관행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부산 지역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종주 중재부장(부산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은 주제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I. 들어가는 말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구제 방법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한국은 법원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 등의 조정과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을 갖추고 있다.

중재위원회라는 법정기관을 활용한 언론피해 구제제도는 반론권 제도가 일반화 된 서구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한국 법체계의 독특한 제도로, 법원이 아닌 기관에 의해 분쟁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일종이라 할 것이다.

중재위원회의 조정제도 실효성 여부에 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중재위원회의 중재가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견해에서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인 언론피해구제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에 이

르기까지 편차가 크다(Lee, 1998).

이러한 논의들이 포괄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의 입법 배경이 되었다. 지난해 이 법의 몇몇 조항에 대한 일부 언론사들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가처분 결정 조항을 제외하고는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약간의 파동은 있었지만 언론중재법은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를 둘러싸고 신청인인 ‘피해자’와 피신청인인 언론사 사이의 주장을 조정하는 조정심리사건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언론피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의식이 상당 수준 향상되었거나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언론사들이 반론, 정정보도 때로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을 받는 경우 궁극적으로 언론사의 명예나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제논문

고 취재 관행 등 제작 과정상 문제점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부산 중재부의 경우, 2005년 조정신청건수가 35건이었던 것이 2006년엔 42건으로 늘었다. 이러한 구체적 사건의 조정심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 당사자 사이의 법익이 상충되는 경우 비교재량하여 적절한 수준의 조화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III. 언론의 사회세력화와 공적 규제

1. 언론의 속성과 권력화

언론에 대해 공적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이 갖는 정보매체로서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언론은 그 특성상 사적 활동을 통해 공적 효과를 내는 이중성을 갖는다. 즉, 언론활동의 결과물은 정신적 산물인 동시에 경제적 상품이다. 언론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언론활동을 통해 나오는 정신적 산물 역시 상품으로 판매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언론이 생산한 정보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언론은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이윤을 얻기도 하지만 많은 공중이 적은 한계비용으로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다원화되고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정부활동이나 여타의 공공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권리를 대행해주는 공중의 대리자로 역할하고 있다.

공적인 기능이 강조되는 속성을 지니는 언론은 현대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증대되어 점차 권력화되고 있다. 이것은 다양하고 수많은 매체에 의한

기사보도의 편재성(偏在性), 기사취재와 편집에서 나타나는 언론인들의 공명성(共鳴性), 중요기사 등을 비롯한 기사 보도의 반복성(反復性)이라는 또 다른 언론의 속성과 무관치 않다.

2. 공론장으로서의 언론

하버마스에 의하면 '공론장'이라는 용어는 18세기 독일에서 등장한 시민사회의 카테고리이다. 현대에 있어서도 공론장과 관련 있는 개념들, 즉 '여론', '공중', '공적 영역-사적 영역' 등은 사회를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열쇠고리적 언설(言說) 또는 담론으로 역할을 한다. 동시에 현대의 여러 제도, 법 등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질서의 기본이념을 이끄는 중요 개념이기도 하다.

하버마스는 현대사회의 대중매체는 상업적인 목적과 관련, 그 덩치는 커졌지만,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첫째, 매스미디어가 공적 영역의 능동적 토론의 주요 대상이었던 정치를 수동적인 '구경'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대규모로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주요 공론장으로서 기능해야 할 대중매체가 상업성을 갖게 됨으로써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장이 경합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대중매체의 변질은 '난상토론을 통한 의사형성'이 '홍보', 'PR', '여론조사' 등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언론이 권력화 된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론장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입장이다. 오늘의 우리 언론을 성찰적으로 들여다보는데 대단히 유용한 시각이라고 하겠다.

3.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등의 조화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조 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위해 사회부조리를 적극 보도해야 할 언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가 상충하는 경우 상호 조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법익임을 의미한다.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진실성, 상당성 그리고 공익성을 입증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즉,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는 공익성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 보도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이거나 공인에 관한 것일 경우 면책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규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의 성격이 짙은 법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상충되는 법익의 조화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조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Ⅲ. 언론에 의한 ‘피해’ 사례와 취재 관행

1. 언론에 의한 ‘피해’ 주장 사례

〈사례 1〉 인격권 침해 및 손해배상

카드 빚 등으로 생활고를 겪던 신청인이 빚을 독촉하는 친동생을 엽기적으로 살해했다고 보도했으나 대법원 판결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신청인이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 A언론사는 피의자의 신청인을 직접 만나 진위여부를 확인하거나 신청인 가족 등에 대해 취재하지도 않은 채 기사를 게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고 신청인은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피신청인 즉 언론사의 취재 및 제작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우선 이 사건이 지니는 엽기성과 함께 사회에 준 엄청난 충격에 비추어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의 추적 그리고 추후 보도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둘째로 피신청인은 당시 담당 지방 주재기자가 휴가 중이어서 충분한 취재를 못했다고 하고 있다. 경찰수사 발표만을 그대로 믿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만나거나 가족 등 정황을 두루 살펴봐야 할 충분한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언론의 취재속성상 마감시간에 쫓기고 타매체와의 속도경쟁 등을 해야 하는 측면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취재, 제작과정에서 흔히 발견되는 잘못된 관행이 때로는 언론사에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다행히 중재부의 조정·조화 노력 등으로 쌍방 합의에 의한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으로 결말이 이어졌다.

〈사례 2〉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

신청인이 2명의 고한에게 아파트 입구에서 납치되어

주제논문

성폭행 당했다고 보도하면서 CCTV 화면에 비친 신청인의 모습을 방영했다. 신청인은 CCTV 화면을 사전에 신청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보도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고, 어떠한 화면 보호 처리도 없이 보도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피신청인 즉 언론사의 취재 및 제작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우선 피신청인은 CCTV 화면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편집요원들의 견해도 동일하여 그대로 보도했다고 하고 있지만 어떠한 화면보호처리도 없이 보도함으로써, 신청인의 신변보호나 인격권보호 등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둘째, 성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보도 과정에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성폭행으로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보도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게 된다.

언론사의 취재속성이나, 기자들의 과도한 업무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언론사의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것이다.

〈사례 3〉 명예훼손 및 반론보도

경찰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제조하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경주빵’은 가짜이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신청인은 ‘경주빵’이라는 명칭은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그 명칭만으로는 타인의 상표권의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자신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피신청인 C언론사의 제작과정상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언론사들은 K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보도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신청인은 K통신사 취재기자에게 사실 확인 후 보도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피의자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K통신사 취재기자의 말에 의존한 것은 잘못된 취재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점이다.

이 사건의 경우는 다행히 중재부의 조정 등으로 쌍방 합의에 의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결말이 이어졌다.

〈사례 4〉 명예훼손 및 손해 배상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수입·가공한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흡소핑에 판매했다고 보도하자 신청인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경찰발표만을 믿고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 받았음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우선 피신청인, 즉 D언론사가 경찰의 공식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공익을 위해 보도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도에서 신청인의 상표가 그대로 방송되어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피의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언론이 지켜야 할 취재윤리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둘째로 피신청인은 일본산 고등어를 공급한 공

급업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확인을 위해 공급업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보도대상이었던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경찰수사 발표만을 그대로 믿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만나거나 정황을 두루 살펴봐야 할 충분한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이 사건의 경우는 중재부의 조정 등이 있었으나,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2. 취재 관행

관행이란 언론인들이 일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형식화되고 일상적이며 반복되는 일과 행태를 의미한다. 그렇게 형성된 관행은 기자 개인이 일을 수행하는 도중에 그리고 일의 수행을 통해 즉각적인 주변 환경을 형성한다.

뉴스가치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기사화 방식, 나아가 정보를 얻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제반 과정에 나름의 관행들을 발달시킨다.

이렇듯 일상화된 취재 관행은 내·외적 여건 등으로 쉽게 바뀌어 지지 않는다. 반츠와 그 동료(Bantz, et al.)들은 이러한 관행들이 고도화된 언론 조직일수록 융통성이 결여되어 최종 결과물에 대한 기자의 개인적인 참여와 통제를 어렵게 한다고 보았다.

취재 관행은 언론사의 물리적 제한점들을 극복하고 언론보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달한 것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의 요인이 되고 있다. 먼저, 사실 미확인 보도이다. 기자들은 사실 확인이 덜 필요한, 공신력 있는 취재원 특히 조직화된 취재원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시간적·공간적·재정

적 제약을 받는 기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취재원을 선택하고 사실 확인이 덜 필요한 공신력 있는 조직화된 취재원을 선호한다(장호순·오수정, 2001). 언론에 의한 피해 주장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신력 있는 취재원인 경찰, 검찰이나 행정관서 등의 발표에 의존하여, 사실 확인 및 현장 접근을 소홀히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 언론은 비교적 취재원의 관변 의존적 성향이 여전히 크다고 하겠다.

둘째, 조직론의 관점에서 볼 때 신문사들의 취재 조직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상호의존적이다. 특히, 뉴스대상을 평가할 수 있는 확고한 외적 기준이 없는 경우, 독자적인 취재보다는 패거리 보도를 선택하고 다른 경쟁기자들의 선택에 따르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의존 관행은 보도의 유사성과 획일성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IV. 결론 : 조정심리제도의 활성화와 언론 활동의 조화

언론은 정부활동이나 여타의 공공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권리를 대행해주는 공중의 대리자로 역할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사회의 감시자'로서, '사실을 전달하는 중개자'로서 그 기능이 부여되어 왔다. 이처럼 사적 존재양식의 언론에게 공적 임무가 강조되는 언론은 현대 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증대되어 핵심적 사회 세력화되고 있는 측면과도 무관치 않다. 자기 권력의 강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언론은 때로 인격권 등을 침해할

토 론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공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는 보호되어야 한다. 언론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재산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로서 언론중재제도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형법과 민법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법원에 의한 재판에 호소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는 방법은 피해자에게 많은 비용과 시간의 투입을 요구한다. 또한 언론사에게도 법적 불안정 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자유로운 비판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방법(ADR)의 하나인 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제도는 사실 확인, 현장접근, 취재 대상의 의견이나 입장 확인 등의 절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언론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조정 신청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취재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언론의 취재시스템 개선으로 인격권 침해가 예방된다면 언론활동이 촉진되고 자유로운 비판기능이 확대됨으로써 언론자유를 신장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지역 언론의 경영상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극히 부분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의해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에 이를 정도이다. 심각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지역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공적 사명과 역할을 다하려고 안간힘을 다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하는 절박한 문제도 스스로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

토 론

사 회 고 종 주
부산지법 부장판사

윤한석(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구현의 관건은 역시 언론보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요즘 언론은 미담기사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사건, 사고 기사처럼 흥미를

유발하는 기사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대한 보도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언론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게재하는데 지나치게 인색한 경향이 있다. 잘못 보도한 것에 대

해서는 그에 상응한 보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박정진(부산광역시 여성연대회의 대표) : 언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언론은 사실보도에 충실해야지 허위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과거 부산시에 재직할 당시 본인 확인 없이 일방적인 기사가 보도되어 곤욕을 치른 적 있다. 당사자에게 확인만 했더라면 오해 없이 잘 해결될 일이었는데 언론이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기사화했고 이 과정에서 언론사와 감정적 대립까지 갔다. 당시 오보도 오보지만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보도 이후 언론의 태도였다. 잘못된 취재관행은 또 다른 부가적인 피해를 양산해낸다. 사실 확인에 미흡하고도 그 결과에 책임지려하지 않으려는 취재 관행은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희길(부산MBC 사회부장) : 토론회 주제 논문에 예시된 4건의 조정신청사례는 공교롭게도 모두 사건 기사에 해당한다. 예시된 4건 모두 수사기관과 얽혀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조정신청 사례는 저희 방송국에서 보도한 것이므로 그에 한정해서 언급하겠다. 우선 이 사건의 취재원인 수사기관의 수사가 허술한 측면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 건은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 즉 공익적 가치가 큰 보도라는 점에서 접근한 기사였다. '공익보도'라는 측면에서 접근했기에 익명을 보장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 신청인은 우리의 보도

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기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사권이 없는 기자들로서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것은 취재관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자들이 기사화하는데 많은 취재노력을 한다는 사실도 알아주었으면 한다.

박상현(국제신문 편집부국장) :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인데 특히 시민단체의 언론에 대한 시각이 확연히 다름을 오늘 절감했다. 사건 기사의 경우 언론이 진실, 사실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과 상당성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럴 때는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요즘 취재환경은 정말 열악하다. 심지어 정부도 언론에 조직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나서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자노릇 못해먹겠다는 푸념도 나오지만 많은 기자들이 더욱 정확하고 신중하게 기사를 쓰려 노력하고 있다. 사건보도 시 피해자 인권보호 등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이재희(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 언론이 선정적인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아동 성폭력, 가정폭력, 연예인의 폭력 사건과 관련된 보도에서 피해자의 인격권이 심하게 침해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특히 연예인 폭력사건과 관련해 언론사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하지만 대부분 언론은 이를 거절한 채 보도하고 있다.

토 론

또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편에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여 노출을 꺼려한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적극적으로 언론보도를 문제 삼아 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자신들의 무죄를 항변하고 언론은 이를 가감 없이 수용하기도 한다.

취재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최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면서 기자 개개인이 저야 하는 부담이 매우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앞에서 언급했던 폭력사건의 황당한 합의를 양산하는 주범이 아닌가 생각한다. 언론사들이 기자 개개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오보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찬승(전국모범운전자 부산지부장) : 우리 단체는 시민이 인터넷에 올린 허위의 내용을 언론사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화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무보수 봉사단체로 활동 중인데 치명적으로 명예를 손상당한 경우였다. 언론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보도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동우(한국언론재단 부산사무소 위원) : 최근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나 조정 신청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언론보도가 많이 위축되었다는 말을 기자들로부터 자주 듣는다. 그만큼 취재환경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이 공익을 앞세워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사익

을 최대한 보호하되 이 두 이익 간에 대립이 있는 경우 언론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역 언론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만 언론환경은 수용자가 만들어가므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좀 더 지역 언론에 애정과 관심을 가질 때 지역 언론의 위기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혜경(부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최근 한 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잔인하게 구타당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언론은 ‘잔혹한 우정’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아 사회기사로 게재했다. 우정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가혹하게 목숨을 잃은 경우였는데 언론은 이를 미화하는 듯 선정적으로 보도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은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받아야 했다. 당시 피해자 가족은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려 했지만 경찰, 검찰 조사 등 각종 조사 때문에 언론보도에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신청하려 했으나 기간도과로 각하된다는 얘기를 듣고 청구를 포기했다.

사건기사 대부분이 이처럼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제2, 제3의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아무렇지도 않게 기사를 게재하는 경향이 있다. 기자는 이런 사건 기사를 쓸 때 피해자와 남은 가족 입장을 배려하여 기사화하였으면 한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신청기간을 더욱 연장해야 한다고 본다. □

피의자 보도와 인격권

이 상 도

영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 머리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대형 사건이 터질 때 피의자 보도의 문제점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얼마 전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에서 용의자와 그 가족의 신원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키고 피의자 보도에 대한 경종을 울려 주었다. 나아가 2004년 12월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례처럼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사회생활까지 어렵게 하는 등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공인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신원이 공개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언론에 의한 범죄 혐의 또는 범죄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으로 범죄 보도는 개인의 명예, 초상, 프라이버시 등의 인격권 침

해를 수반하게 되고, 피의자의 유·무죄 혹은 증거 가치를 예단케 하는 보도는 형사절차상의 공정성을 침해하여 여론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이는 범죄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 권리는 인격권 내지 형사절차와 서로 충돌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범죄 피의자는 늘 약자의 지위에 있기 마련이다.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는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포죄, 명예훼손죄, 사생활 침해 등과 관련한 민·형사적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법기관의 범죄 사실 공표와 관련한 피의사실공포죄로 처벌된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거의 사문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공익성과 진실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어 언론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언론매체에 보도될 경우에는 형사절차상에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구현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피의자 보도와 관련한 피의자 가족 및 사생활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가 인격권 측면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논의한다. 피의자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한 사례와 판례, 우리 언론의 보도태도를 살펴보고, 피의자 보도의 한계를 중심으로 우리 언론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짚어 보고자 한다.

2.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 보도 사례 및 판례

조선일보는 최근 '버지니아 공대 참사' 사건을 보도하면서 용의자 조승희 씨 누나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해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조선

일보는 지난 4월 20일자 A9면에 '너무 다른 누나 / 해외 인턴 참가...9·11 희생자 돕기 / 현재 국무부 용역서비스 지원사에'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조 씨와 세 살 터울인 누나의 실명과 나이, 학교, 직장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2003년 태국에서 찍은 사진(얼굴 부분 모자이크 처리)까지 공개했다(미디어오늘, 2007년 4월 20일자). 조선일보는 또, 조 씨의 누나가 2003년 대학시절 학교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담을 교내 신문에 게재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정도의 정보라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편 '버지니아 공대 참사' 사건을 보도하면서 조승희 씨가 미국 방송사에 보낸 사진을 여과 없이 게재한 신문사가 무더기 경고를 받기도 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월례회의를 열어 "버지니아 참사 용의자 조승희 씨가 만든 동영상과 스틸사진 가운데 인명을 해칠 수 있는 권총이나 칼 또는 망치를 들고 살의와 증오가 담긴 눈빛으로 자해하거나 상대를 저격 또는 가격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한 28개 신문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고를 받은 곳은 연합뉴스와

전국 단위 종합일간지 10곳 모두를 비롯해 경제지 5곳, 스포츠지 4곳, 지역일간지 8곳 등이 포함됐다. 신문윤리위는 "정작 이를 처음 보도한 미국 NBC는 이들 사진 등을 보도한 이후 시청자들로부터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지나친 상업성과 선정성에 편중된 '황색보도'라는 비난을 받고 이의 방영을 자제하기로 했음에도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은
마련되어 있으나
유명 무살해

국내 통신과 신문들이 이 같은 사진을 여과 없이 게재한 것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자칫 모방범죄를 부추길 우려와 나아가 신문의 품위와 신뢰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6월 발생한 경기도 연천 GP의 수류탄 투척·총기 난사 사건의 경우에도 일부 언론이 피의자 김 모 일병의 신상을 공개하고, 평소 게임을 즐겼다는 점과 범행의 연관성을 추론하는

흥미위주의 추측성 보도를 하는 등 사태의 책임을 한 개인에게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2005년 6월 20일자 사회면 '김 일병은 누구 입대 전 실연...정신병력 없어'에서 김 일병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주소와 사진, 실명을 모두 공개했고, 가족관계도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입대 전 실연 경력까지 소개해 실연과 범행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도 남겼다. 조선일보는 사망한 박 모 상병과 애인의 사진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했다. 서울신문도 같은 날짜 가판에 김 일병의 사진과 실명, 가족관계까지 소개했다가 배달판에서 사진만 삭제했다. 동아일보도 21일자 '김 일병, 내성적이고 컴퓨터 게임 즐겨'에서 가족관계와 성장과정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일심희 사건' 피의자 가족들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상대로 각각 9,000만 원씩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의 처 구 모 씨,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의 처 김 모 씨 등 3명은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구속자들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재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구속자들의 가족과 회사를 게재하는 등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말하고 “중앙일보 또한 구속자들의 실명과 사진 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언론의 관행적 보도 행태인 “경찰이 ○ 모 씨에 대해 ○○○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식의 보도에도 제동이 걸렸다. 인천 지방법원 민사6부(재판장 김수천 판사)는 지난 2003년 12월 12일 이주협 전 민주노총 민주택시노련 해고특위위원장이 인천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 신문 ‘오마이인천’의 보도로 외부에 알려진 이번 판결은 구속영장 신청을 기점으로 경찰조서를 인용 보도하는 범죄 보도의 취재관행에 일침을 놓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들이) 경찰 내부분서를 열람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비공식적인 확인절차를 밟은 것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신문사들)에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각각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원고(피의자)와의 면회를 허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피의자인 원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피고 측의 취재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구속영장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취재 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서 더 나아가 ‘충분한 취재 의무’와 ‘반론 게재의 구체적 범위’를 적시(揭示)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5월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등이 입게 되는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언론기관은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하고, 구속영장 사본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그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익명보도와 관련 “실명이 아니더라도 두 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해도 (기사내용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됐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언론의 보도 행태와 폐해

우리 언론의 범죄 보도 경향에서 폭로 보도, 혐의 보도, 선정적 보도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이진국, 2002). 먼저 폭로 보도를 살펴보면, 우리 언론에서 살인, 강도 등 전통적인 개인 범죄를 보도하는 경향은 줄어들었지만, 각종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비리 등 우리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범죄 유형들이 기사의 가치를 높이 인정받고 있다. 최근 들어 탐사보도 기법이 발전하면서 수사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는 보도들이 과거에 비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안의 중요성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차별적으로 언급되고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보도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어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다른 우리 언론의 보도 경향은 혐의 위주로 보도된다는 점이다. 보도 내용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단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는 관행 때문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일간신문의 80% 이상의 기사가 재판 전(前) 단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박용규, 2001). 용의 단계 내지 수사 단계의 혐의 보도에 치중하는 이유는 주된 취재원이 경찰과 검찰이며, 경찰이나 검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비교적 수사결과 홍보에 적극적인 반면, 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찾는다. 독자들도 피의자 검거 이후의 과정에는 관심이 크지 않은 것도 한 이유이다. 혐의 위주 보도의 문제점은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후조치에 의한 원상회복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장 내지 잠입 취재도 피의자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 위장 내지 잠입 취재는 기자가 취재대상 직업의 종사자 또는 이용자로 가장하여 취재하거나 기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취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위장 취재가 성행하는 원인은 정상적인 취재방법으로는 취재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위 몰래카메라에 의한 위장 취재는 TV뉴스나 시사매거진 프로그램에서 흔히 나타나는 취재기법이다. 비교적 손쉽게 사진이나 관련 서류, 진술 등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윤리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취재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카메라 속에 담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보도된 혐의 사안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만든다(이재경, 1997). 많은 언론들이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취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잠입 취재, 탐사 취재 등의 방법으로 범죄에 접근한다. 잠입 취재 또는 탐사 취재는 언론에 의한 권력통제 기능 및 사회 안정화 기능 등 순기능적 측면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가해지며 나아가 폭로일변도의 취재원 확보는 언론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점에서 언론의 역기능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리사건 등과 관련하여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의 내밀 영역이 침해되어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보도 내용도 언론사와 기자들의

피의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그들이 범한 범죄의 행위 묘사가 여과없이 보도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

편집 작업에 의해 얼마든지 왜곡될 위험성도 있다.

선정적인 보도는 청소년의 모방 범죄 등 일탈행위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범죄 보도 과정에서 언론매체는 피의자의 무죄추정권이나 인격권에 대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사건의 본질에 대한 조명보다는 흥미와 자극적 요소를 강조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중범죄의 경우, 언

론의 보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문이 없지만 피의자의 인격적 이익과 그들이 범한 범죄 행위의 묘사가 여과 없이 보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의 상업성과 영리성은 언론사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이에서 비롯되는 기자들의 경쟁의식은 범죄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보다는 수용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보도에 초점이 모아지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4. 피의자 보도의 한계

범죄 사건의 보도는 일반적으로 공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혐의 보도는 엄격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혐의는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도를 하면서 누군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표현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보도 내용의 진실여부를 불문하고 피의사실에 관한 보도 자체만으로 피의자나 그 주변인물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에 언론사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보도 내용도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임

병국, 2005). 피의자 보도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장발부와 공소제기 등 수사절차와 공판 및 상소절차를 거쳐 확정에 이르는 전 과정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 보도는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상황에 유의해야 하며, 진행 중인 단계를 넘어 혐의의 정도를 높이려는 보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건 담당 경찰관이 내부적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취재기자에게 피의사실을 알려주고 수사기록까지 건네 준 경우에는, 기사가 부적법한 제보에 기초하여 작성될 수 있다. 혐의사실에 불과한 피의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우에는, 그 기사 내용에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서울고등법원 1997. 7. 15. 선고 99나17731판결, 수원지방법원 1999. 2. 25. 선고 98가합19427판결). 이들 판례는 우리 언론의 보도 한계를 제시한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당해

범죄와 관련이 없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사적인 사항이나 피의자의 가족 등 주위의 인물에 관한 보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혐의자나 피의자와 사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은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흥밋거리는 국민의 알 권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공인은 실명, 사인은 익명보도’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공적 인물(공인)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범죄 보도의 경우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은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익명보도를 하여야 한다(박재선, 2006). 법원은 범죄 보도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대한 신원이나 초상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인이나 범죄자에 관한 보도가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익명보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판결). 공인의 범죄 보도에 있어서는 ‘공적 인물론’에 따라 범인이나 범죄혐의자 실명이나 초상의 보도 등으로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 법원은 비록 일상적인 범죄라 하더라도 그 혐

의자가 공인인 경우에는 사회적 중요성을 갖게 되거나 주목을 받게 되므로 실명이나 초상 보도가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부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익형량이 요구되는데, 이 때 공적 인물이나 공공의 이익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보도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또한, 언론은 피의사실을 보도할 때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하고 수사할 방침이라는 요지 정도의 보도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수사결과 혐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것처럼 단정적으로 서술하면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1997.1.17 선고 96나4659, 96나4666(병합)판결). 언론사가 타 신문사의 기사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만을 열람하여 보도한 것은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하여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판결).

공익성이 인정되는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 개별적인 이익형량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보도행위의 적합성과 필요성 및 균형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보도에서 언론이 부담하는 주의 의무는 범죄 사건의 진실성, 사건의 내용, 사건의 발원지 등과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의 조화와 균형을 꾀하려는 입장에 있다. 보도된 사실이 허위라 하여도 그것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언론기관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면책된다는 이른바 상당성의 법리를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판례 원칙으로 확립하고, 한편 언론 보도의 경우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언론기관에 원칙적으로 진실 확인 작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은 이러한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공직후보자 등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전과 등 사적인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함으로써 보도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반면, 일반 사인에 대하여는 범죄 사실 보도의 경우

에도 익명보도 원칙을 준수하도록 천명하는 등 인격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면, 독일의 경우 인격권 영역을 내밀(內密) 영역(Intimsphäre), 비밀 영역(Geimsphäre), 사적(私的) 영역(Pri-vatsphäre), 사회적 영역(Sozial-sphäre), 공개적 영역(Öffentli-ckheitssphäre)으로 구분하여 견

**범죄혐의 보도는 엄격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야하며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적 사항 보도는 하지 말아야**

해가 제시되고 있다(김재형, 1999). 내밀 영역은 인간의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을 뜻하는데, 성적(性的) 영역에 관한 사항으로 제3자의 침입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비밀 영역은 이성적으로 평가할 경우 공공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될 인간의 생활 영역이다.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 비밀스러운 전화 내용, 사생활에 관한 일기, 직업적·영업적 기록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영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고, 동의한 방식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사적 영역은 가족, 가정, 친구, 친척과 같이 친밀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영역으로, 결혼 전 이야기, 부부간의 다툼, 종교적 신념 등이 이에 속한다. 사적 영역은 내밀 영역과 달리 절대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며 사적 영역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와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이익형량을 하여야 하는데, 제반사정에 비춰 정보의 이익이 당사자의 개인적인 이해보다 우월한 경우에는 언론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적 영역에 관해 공표하더라도 적법할 수 있다. 사회적 영역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개인의 생활 영역으로, 직업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이에 속한다. 사적 영역보다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보도 여부에 관한 결정권이 유보되어 있는 영역이다. 공개적 영역은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식하여야 할 인간 생활의 영역이다. 사회·정치적 영역, 국가 영역이 이에 속하며 이에 관한 보도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개적 영역에서 녹취한 개인의 대화나 사진을 영리목적의

로 이용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분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좀 더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프라이버시는 미국에서 생성되었는데, 프로서(Prosser) 교수는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을 (1) 원고의 신체적·장소적·개인 영역에 대한 침입 또는 그 사적 사항에 대한 침투 (2) 사생활의 공개 (3) 공중에게 개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 (4) 성명 또는 초상 등에 대한 침해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인에 대한 보도라 하더라도 허위보도의 경우에는 언론사에 대하여 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인격권에 명예권, 초상권, 성명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미국과는 달리 초상권, 성명권을 제외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5. 맺음말

언론은 피의자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선, 형사 사법기관의 비공식적 확인이나 정보 제공에 의존하여 기사화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보도할 내용을 신중하

게 검토하는 언론매체의 주의 의무 의식이 필요하다. 보도대상자에게 반론의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언론에만연한 경쟁풍토의 보도관행은 심층적 보도관행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범죄 사건 자체를 보도하는 것과 범죄관련자의 신원 관련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는 일반적으로 범죄 사건 자체에 있고, 관련자의 초상까지 알 권리가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공인의 경우에는 초상권 보도의 이익이 존재하지만, 초상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지 의문스러운 사례에는 관련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초상 보도가 자제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 관계 소송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점차 정리되어 가고 있고, 초기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소액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근래 들어 위자료 인정액수의 상승 현상도 눈에 띄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결코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만,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흥미위주의 무책임한 보도를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거운 책임을 물음으로써만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언론기관 역시 국민의 인격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는 국민들의 법의식이 높아지면서 법과 제도적 구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많은 언론사들이 자문 또는 고문변호사를 두어, 과거에 비해 언론사들의 보도대상자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 여부에 많은 관심을 쏟고 크게 개선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의자 보도의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인격권 보호에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피의자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는 보도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서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춰야하는 요청이 있다. 피의자 보도에 따른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언론의 보도 관행을 개선하고 민·형사상 구제 제도의 정비 등도 중요하다. 그러나 언론 보도로 인한

피의자의 인격권은 한번 침해되면 사후구제조치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언론사들이 사전에 피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억지력이 무엇보다 강조된다.

필자는 언론이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에 따르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청에 맞춰 무거운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의자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 언론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부담하게 하면 언론사가 보도내용에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실효적으로 억지하게 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이다. 언론은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관점에서 영·미법상의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악의적·반사회적·비도덕적인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제도로 실제 손해배상 외에 추가적으로 형벌적 성격으로서 엄청난 손해배상액을 물리는 제도이다(이민영, 2006).

미국이나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책정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법을 개정하여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

피의자의 인격권은 한 번 침해되면 원상회복이 무척 어려우므로 언론은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노력 기울여야

영·미법상의 제도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당장의 도입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언론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높여 무거운 경제적 손실을 부담케 하는 방향으로 민사재판이 운영되면 실질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언론사의 경영에 영향을 줄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면 언론사는

피의자 보호 등의 인격권 침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세심하게 검토함으로써 피의자 인격권 침해에 관한 억지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김선택(2004). 언론보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고려법학』, 43권.
 김재형(1999).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서울대학교 법학』, 39권1호. 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김형진(2000). 언론보도와 인격권, 특히 명예훼손에 대하여.
 박용규(2001). 한국 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범죄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5권 2호.
 박재선(2006). 공인은 실명 가능, 사인은 익명보도, 『신문과 방송』, 2006년 6월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참고자료』.
 이민영(2006). 개인정보권의 침해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보통신정책』, 제18권 8호.
 이재경(1997). 위장취재와 몰래카메라 취재보도의 윤리적 문제점, 『언론중재』, 1997년 여름호.
 이진국(2002).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임병국(2005).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출판.

「프로그램 변경은 취재협력자의 기대권 침해」

- 도쿄 고법, NHK 등에 손해배상 판결 -

중군위안부 문제를 취급한 NHK 교육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취재에 협력한 시민단체 등이 프로그램의 변경에 의해 신뢰 이익(기대권)을 침해당했다고 NHK와 2개의 제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도쿄 고등법원은 지난 1월 29일 재하청(再下請) 제작회사에만 100만 엔의 지불을 명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NHK를 포함한 3개사에 총 200만 엔의 지불을 명했다. 재판부는 NHK가 “국회의원들의 의도를 존탁(忖度=남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리는 것)하여 지장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했다”고 지적, 시민단체의 기대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했다. 기대권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고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으나, 어떠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앞으로 취재·보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전쟁과 여성에의 폭력』일본 네트워크(바아네트)가 중심이 되어 열린 민간 법정 등을 문제 삼은 ETV 2001시리즈 「전쟁을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추궁되는 전시성(戰時性) 폭력」으로, 제작을 NHK 엔터프라이즈 21(이하 NEP)이 수주하고, 취재는 재하청 제작회사인 「도큐멘터리·재팬」(이하 DJ)이 담당했다.

판결에 의하면, DJ는 취재 의뢰 시에 여성 법정의 기록성을 중시한 프로그램이라는 취지의 프로그램 제안표를 바아네트에 넘기면서 그 취지를 설명했다. 바아네트는 이를 신뢰하고 취재를 응낙, DJ의 요구에 응해 사전에 내부취재라든가 당일의 촬영장소 등에 대해 특별한 편의를 제공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NHK의 프로그램 교양부장의 “객관적·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교양 프로그램으로서의 관점이 결여되어있다”는 판단에 의해 재편집 되었는데, 통상 시사(試寫)에는 입회하지 않는 방송총국장, 국회담당의 종합기획실 담당국장 등의 지시에 의한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는 44분의 프로그램이 40분으로 편집되어 방송되었다.

바아네트 측은 NHK 측을 신뢰하고 많은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당초의 프로그램의 취지를 크게 이탈한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어 방송되었다”고 주장했으며, NHK 측은 “취재대상자의 기대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의무는 없으며 그러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편집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이에 대해 1심 도쿄 지법은 2004년 “취재 시에 신뢰를 하게끔 설명을 한 점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DJ의 기대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NHK와 NEP에 대해 “프로그램 편집은 방송사업자에게 보장된 방송 프로그램 편집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침해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려, 바아네트 측과 DJ는 항소했다.

항소심은 2005년에 결심예정이었으나, 그 직전 아사히신문이 NHK 간부가 프로그램 방송 전에 자민당 의원과 회동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프로그램 제작자의 내부고발도 이어져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아네트 측의 요구에 따라 고등법원은 심리를 속행했으며, 기대권 침해와 함께 프로그램 변경에 정치적 압력의 영향이 있었는지의 유무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취재대상자의 기대권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양분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악용과 보도기관의 과도한 위축을 걱정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개별적인 사정이며 일반화 될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NHK는 즉시 상고했으며 이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신문연구』, 2007년 3월호)



도 프라이버시권과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촬영의 방법은 몰래카메라 촬영에 해당하며 “정당한 취재행위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 다나카 씨 측의 선거활동에 정신적 고통 등의 지장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문협회보』, 2007년 2월 27일자)



TV 프로의 해외 시청 서비스는 방송국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

- 도쿄 지법, 금지청구 인정 판결 -

선거사무소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행위 범위 일탈한 위법

- 일본 니이가타 지법 나가오카 지부 판결 -

선거사무소를 몰래 촬영 당했다고 田中眞紀 참의원 의원(자민)과 동 의원의 후원회 등이 후지(富士)텔레비전에 대해 총 2,5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니이가타(新潟)지방법원 나가오카(長岡)지부는 선거 활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 후지 텔레비전 측에 36만 엔의 지불을 명했으며, 항소가 없어 판결은 확정되었다.

판결에 의하면, 후지 텔레비전은 2004년 참의원 선거 때 동년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니이가타현 나가오카시에 있는 다나카 씨의 선거사무소를, 맞은편 민가에 설치한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이에 대해 다나카 씨 측은 선거활동의 자유 외에

해외 등에서 일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 디지털 가전(家電·하마마쓰시)에 대해 NHK와 민간방송 9개사가 서비스의 금지를 청구한 가처분 재판에서 도쿄 지방법원은 지난 3월 30일 이 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서비스는 「ロクラクⅡビデオデッキレンタル」(록락Ⅱ 비디오텍 렌탈)로 일본 디지털 가전이 독자적으로 제조하여 판매·대여하는 2대의 하드디스크 레코더「록락Ⅱ」을 사용한다.

모기기(母機器)는 동 회사가 일본 국내에 설치하고, 이용자는 해외 등에서 자기기(子機器)를 조작하여 프로그램을 녹화 혹은 시청하는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재판부는 방송국의 복제권,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와 유사한 가처분 재판에서 2005년 11월 エフエービジョン(에페비전·千葉縣松戸市)의 「녹화

네트」의 금지가 知財 고등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다. 한편 소니의 시판제품을 이용한 나가노 상점의「まねきTV」(마네끼 = 초대, 초청이라는 뜻)에 대한 금지 청구는 기각된 바 있다.

(『신문협회보』, 2007년 4월 24일자) □

“언론의 자살보도가 모방 자살을 불러 올 수 있다”

- 자살 예방 단체 주장 -

한 자살 예방 단체가 인터넷 신문에서 자살을 보도하는 것이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PCC의 개정된 윤리강령 제5조항에 따르면 언론들은 자살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사용된 자살 방법에 대한 과도한 세부 사항을 피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자살 예방 자선단체인 ‘파피루스’는 채팅방에서 자신의 자살을 방송한 케빈 윗트릭 사건을 인용하면서 “자살 보도에 관한 PCC의 윤리 강령은 실질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파피루스’의 위원장인 앤 패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 보도의 자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자살을 모방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지만 이미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론이 묘사한 타인의 자살 방식을 보면서 자신도 같은 방식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앤 패리는 “윗트릭의 사건에서 『선데이 브로드시트』의 보도 태도가 특히 불만족스러웠으며 여타 지역 언론 역시 때로는 매우 선정적인 타블로이드 신문들과 비슷하게 보도했다”고 말하고 “특히 지역 언론들은 지역의 소식을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특성상 더욱 자세한 정보를 기재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윗트릭 사건을 보도했던 『선데이 머큐리』의 편집장인 데이비드 브룩은 “이번 사건은 인터넷에서 방송돼 이미 대중에게 공개되고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윗트릭의 행동을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가장 잔인한 세부사항들은 제외시켰고 입수되었던 사진도 인터넷상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또한 그의 자살보다 그의 자살을 훑쳐보던 인터넷 유저들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셰필드 대학의 원로 강사이자 작가인 토니 하콕은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중요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는 “예를 들어, 경찰의 관리 하에 있던 사람이 자살을 한 것으로 주장되고 그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다면 이는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개인 한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삶을 버리는 것일 경우 이를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며 자살 사건 보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브룩은 “다만 자살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며 “우리는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 알아야 할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Press Gazette 2007년 4월 13일자) □

「취재원 비닉 위해 증언 거절할 수 있다」

- 도쿄 고법, 거듭인정 -

지난 2006년 10월 3일 일본 최고재판소와 도쿄

고등법원이 「취재원 비닉을 위해 증언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한데 이어 도쿄 고법이 다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미국의 건강식품회사의 과세처분에 대한 보도의 촉탁증인신문과 관련, 월간지 「테미스」(테미스사 발행)의 편집인 등이 취재원에 관한 증언을 거절한 사안의 당부(當否)를 둘러싼 항소심에서 도쿄 고법 제24민사부는 지난 2월 22일 “기자의 취재원 비닉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지난해 10월 3일의 최고재판소 결정을 인용, 1심 결정보다 광범위하게 증언 거절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재의 시기 등 10개의 질문에 대해 “다른 질문과 겹쳐서 보면 정보원의 특정(特定)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 새롭게 증언거절을 인정했다. 식품회사 측이 상소를 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지난해 8월 15일 취재원 비닉을 이유로 취재원에 관한 증언을 거부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의 기자 2명에 대해 증언을 명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어 9월 21일에는 증언을 거부한데 대해 법정모욕죄를 적용, 수감명령을 내려 일본 법원들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신문협회보』, 2007년 3월 6일자) □

BBC의 예정보도에 사전금지명령 영국 왕립법원, “수사에 지장 있다”

영국의 여당인 노동당이 선거 자금의 용자를 받으면서 보증인으로 상원의원을 추천했다는 의혹에 관한 보도를 예정하고 있던 BBC에 대해 왕립법원은 “수사에 지장이 있다”는 법무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3월 2일 방송의 금지를 명했다.

BBC는 보도를 보류했으나, 6일자 『가디언』지를 시작으로 다른 매체들이 BBC가 예정했던 내용을 보도하게 됨으로서 금지는 해제되었는데, 당초의 BBC의 자세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리도 있었으며 법무장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치개입’의 비판도 적지 않다.

법정모욕죄를 이유로 한 보도의 사전금지는 테러 관련 사건에서는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나 기소 전에 내려지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BBC는 용자의혹의 보도를 위해 런던경찰청 등에 ‘사실 확인과 상대방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취재를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수사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법무장관에게 보도의 금지를 요청했던 것이다.

(『신문협회보』, 2007년 3월 13일자) □

테러조직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서 입증취재 없고 진실 상당성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

-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일본 사이다마현(埼玉縣)에 사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이슬람 모하멧 히무(남)와 그가 경영하는 회사가 니혼(日本) 텔레비전에 1,000만 엔의 손해배상과 7개 신문에의 사죄광고 게재를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 민사 제16부는 2006년 10월 27일 일부의 보도에 명예훼손이 있음을 인정, 니혼 텔레비전 측에 220만 엔의 지불을 명하고, 사죄광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문제가 된 것은, 동사가 2004년 5월 26일과 27일에 방송한 『뉴스대시』, 『NNN24』 등의 프로그램인데, 재판부는 이 프로 가운데 “원고 허무가 위조 프리페이드 카드(prepaid card)의 밀매로 억(億) 단위의 이익을 올려, 그것이 알 카에다 관련 조직에 흘러들어간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에 대해, 충분한 입증취제도 없었고 진실 상당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니혼 텔레비전 측은 항소하지 않았으며, 판결은 확정되었다.

(『신문협회보』, 2006년 11월 21일자) □

일본의 신문·방송들 기사 도용, 날조로 곤욕 임원급 징계로 책임 추궁

최근 일본의 신문사들과 방송사들은 사실과 기사, 프로그램의 도용, 날조 등으로 큰 곤욕을 치루고 있으며, 사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임원급 편집간부들이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는 등 언론의 불신이 확산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기사 도용, 프로그램 날조 등으로 사장이나 임원급 이상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 한국의 경우와는 극히 대조적이다. 다음은 그 중 몇 가지 사례다.

사례1) 사설 도용으로 신문사 사장 사임

『아마나시』 일일신문사는 지난 2월 20일 전 논설위원장이 집필한 사설에 『고베신문』과 『서일본신문』의 사설과 유사한 기술(記述)이 10군데 정도 확인된 데 이어 새로이 15건의 도용(盜用)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野口榮一 회장

겸 사장이 사임을 표명했으며, 전 논설위원장은 해고됐고, 西川勝仁 상무이사를 이사로 강등시키는 한편, 편집국장에게는 3개월 감봉(20%)의 처분이 내려졌다. 사실 역시 2월 21일부터 게재가 중지됐다. 4월 1일부터 재개됐다.

(『신문협회보』, 2007년 2월 13일, 27일자, 4월 3일자)

사례2) 아사히신문, 기사 도용으로 편집국장 경질

『아사히신문』사는 지난 2월 6일 사진기자에 의한 기사 도용 문제로 사내조사 결과, 『요미우리신문』과 『니이가다일보』의 기사를 도용한 2건의 새로운 도용이 더 있었다고 발표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까지 있는 총 3건의 도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기자를 해고하고, 武内健二 제너럴매니저(GM) 겸 도쿄 본사 편집국장과 사진센터 매니저를 각각 감봉, 해직했다. 이 밖에도 임원대우 편집담당과 제너럴에디터 겸 도쿄 본사 편집국장, 사진센터 차장 등에게 각각 감봉, 견책, 경고처분 등을 내렸다.

(『신문협회보』, 2007년 2월 13일자)

사례3) 프로그램 날조로 간사이(關西) TV 사장 사임

간사이 텔레비전 방송은 지난 2월 28일 정보 프로그램 「發掘!あるある大事典Ⅱ」의 날조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총무성에 제출, 날조를 예방할 체제를 구축할 책임은 “편성국·제작국 담당임원, 전무, 최종적 책임자인 사장에게 있다”고 경영진의 책임을 명기하는 한편, 새로이 3건의 날조의혹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3일에는 千草宗一郎 사장이 사임하고, 出馬迪男 회장, 角和夫 대표취체역, 山本紘 전무 등

3인은 임원보수 20% 3개월 분을 반납했으며, 상근 임원은 엄중주의처분, 그 밖의 임원, 감사역 전원이 당기(當期)의 임원상여금을 자진 반납기로 하고,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되는 재생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했다. 4월 19일에는 민간방송연맹 임시총회에서 제명처분까지 받았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둘러싼 제명으로는 처음이다.

문제의 발단이 된 「納豆(나두=끈적끈적하게 발효한 콩)다이어트」 방송분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인식을 표시했으며, 보고서는 사장이 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새로운 3건은 「충격! 된장국으로 살이 빠진다」(2006년 2월 19일 방송)외에 「유산소운동의 신이론」(2005년 10월 16일 방송)과 「당신의 다이어트 과일은 어느 쪽? 귤 or 사과」(2006년 10월 22일 방송) 등인데, 해외 연구자의 코멘트에 당사자의 의도와는 다른 일본어를 덮어씌우는 등의 표현이 있었으며 “방송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인정했다.

(『신문협회보』, 2007년 3월 6일자, 4월 10일, 17일, 24일자)

사례4) 『텔레비전 도쿄』도 영상 날조, 사장 감봉

『텔레비전 도쿄』는 지난 1월 6일 방송된 건강정보 특별프로그램 「올해야말로 깨끗하게 해 줄거야! 정월 비만해소 대작전」에서 텔런트의 손가락 끝이라고 소개한 영상이 실제로는 디렉터의 것이었다고 지난 2월 20일 발표했다.

菅谷定彦 사장은 다음 날 21일의 정례회견에서 “영상의 날조라고 받아들여져도 어쩔 수 없는 심각한 사태”라고 사죄하면서 자신의 감봉 20%(1개월)을 포함한 관계자 4명에 대한 처분을 발표했다.

문제의 영상은 요가를 체험한 텔런트가 그 전후의 혈류(血流)의 변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요가 체험 후의 텔런트의 손가락 끝의 모세혈관으로 소개한 영상이, 실제로는 디렉터의 것이었다. 디렉터가 편집단계에서 한층 더 변화를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촬영한 영상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PD도 사전 점검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며 외부의 지적에 의해 밝혀졌다.

(『신문협회보』, 2007년 2월 27일자)

사례5) 『니이가다일보』도 『아사히신문』 사설 도용

『니이가다일보』사는 지난 2월 21일 북한의 납치 문제를 취급한 사설에서 『아사히신문』의 사설로부터 도용한 부분이 있어 이를 집필한 논설위원을 총무부로 대기발령했다고 공표한데 이어 3월 8일에는 새로이 6건의 사설 도용이 발각되어 관련자를 해고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것은 2006년 11월 21일자 사설 「납치피해 인정, 계속 실종자의 조사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이다. 조사 결과 6군데가 유사하여 도용으로 판단했으며, 본인도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조사 결과 새로이 밝혀진 6건의 도용은 “사실관계의 기술이 흡사할 뿐 아니라 그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내용의 전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도용은 『아사히신문』에서 3건, 『마이니찌신문』에서 2건,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 1건으로 되어있다. 이 사건으로 사장은 보수월액 30%(5개월)을 반납하기로 했으며, 그 밖에 많은 임원들과 간부들이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신문협회보』, 2007년 2월 27일자, 3월 13일자) □

언론조정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대학교가 교재파일을 특정 출판사에
유통시키는 등 해당 출판사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000000대학교
피신청인 : KBS-1TV
종 재 부 : 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1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BS-1TV : 「취재 파일4321」 프로그램 (2007년 1월 7일 22:20)

내 용 : ▷기자 : 최근 교수들의 논문 표절 시비가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에도 지적 재산권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교수들이 쓴 저작물을 일반 출판사에서 아무 동의도 받지 않고, 그것도 20년 넘게 그대로 표절해 왔다

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등록돼 있는 000 000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중략)

00대 교재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한 서점입니다.

새 학기를 맞아 새로 나온 교과서와 함께 똑같은 제목의 참고서들이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고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00대에서 법철학과 법 사상가를 강의하는 법대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00대 법대 동료 교수와 함께 오랜 동안 준비해 온 책의 집필을 마쳤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학문을 방송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 법철학 교과서.

그런데 이 교수는 놀랍게도 자신의 책이 출판되기도 전에 흡사한 내용의 책이 참고서로 이미 시중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법철학 참고서는 교수가 학교에서 출판한 교과서 보다 오히려 먼저 인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 저자의 책이 나오기도 전에 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참고서 안에는 집필자들이 고안해 낸 독특한 용어와 도표가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교수들이 미처 고치지 못했던 틀린 글자도 그대로입니다. (중략)

○○대 교과서는 ○○대의 자체 출판부와 교수 사이의 저작권 계약에 따라 출판부에서 인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서 출판사에선, 이에 대해 저작권 협의 없이 교과서를 일부 표절 했다는 사실은 시인합니다.

참고서 업체와 ○○대 출판부 사이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는 말도 그래서 나옵니다. (중략)

더구나 해당 출판사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 씩, 모두 1억 원을 학교에 발전 기금으로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요구해서 낸 것이라고 출판사는 주장합니다.

▷이○○(○○출판사 대표) : “학교에서도 그동안 저희 보고 발전기금 낼 수 있겠느냐. 기금 안내서에 보면 세제상이나 기타 특별한 우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던 말이에요. 그러면 업자로서 학교를 상대로 해서 책을 만들어 먹고 사는 이런 회사에서 그나마 거절할 수 없잖아요.”

○○대 측은 오랜 관행인 표절 문제가 다시 불거져 자 곤혹스러운 분위깁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사는 지난 1월 7일 「취재보도4321」 프로그램에서 “20년간 계속된 ‘교재 베끼기’” 제목으로 ○○○대 교재를 무단으로 베껴 판매하고 있는 Y출판사의 행태를 보도하는 가운데, Y출판사 참고서의 발행일이 ○○○대 출판부 교재의 발행일보다 빠르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파일 유출의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출판과정상 정확한 발행일을 미리 기입할 수 없어 출판사들이 관계적으로 대략적인 날짜를 기입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일 비교는 발행시기를 비교하는데 적절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

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좀 더 정확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서점 입고일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 ○○대 출판부 교재의 서점 입고일이 Y출판사 참고서의 입고일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 “○○대 출판부에서 출판한 교과서보다 Y출판사 참고서가 먼저 인쇄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방송사는 지난 1월 7일 「취재보도4321」 프로그램에서 “20년간 계속된 ‘교재 베끼기’” 제목으로 ○○○대 교재를 무단으로 베껴 판매하고 있는 Y출판사의 행태에 대한 보도 가운데 ○○○대 교재의 제작 과정에서의 파일 유출 가능성과 Y출판사와 대학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파일 유출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이미 검찰조사를 통해 단서를 포착하지 못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그 어떤 유착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저작권을 침해하고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Y출판사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대 교재 베끼기 관련보도
- 내 용 : 본 프로그램은 지난 1월 7일 「20년간 계속된 ‘교재 베끼기’」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 출판사 ‘법철학’ 참고서가 ○○○○○○대 교재보다 먼저 시중에 나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 측은 해당 교재의 서점입고일은 그 출판사 참고서보다 빠르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2월 23일 오전 9시부터 3월 2일 오전 9시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취재파일 4321> 홈페이지 초기 화면 '공지사항&게시판'란 첫머리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KBS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기사를 검색,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와 위 보도문이 함께 나오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보도문을 게재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손해배상청구 및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홈페이지 : 『○○○○○○대 교재 빼끼기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3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조합이 임의로 정관을 변경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 ○)

피신청인 : 충청신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1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충청신문 : 『○○○ 농협 복마전 물의』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6일자 1면)

내 용 : ○○○농협이 조합원들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고 조합 설립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외부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조합원들이 강한 의혹을 제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 ○구 ○○○동소재 ○○○농협(조합장 김○○)은 지난해 11월 28일 조합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임의로 변경해 그동안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부지점 토지매입과정과 부실채권정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던 조합원들을 타 지역에 살고 있다는 명목으로 20여년간 몸담아온 조합원의 대의원출마 등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조합의 정관변경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60명 중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타지역 제외에 관한 안건이 정관변경에 포함돼 표결 결과 출석 대의원 54명 중 29:25로 2/3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는 것이다.

조합원 S씨 등에 따르면 불법정관으로 이들을 대의원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지난해 6월경부터 대의원선거에 대비 조합 반대파 대의원들을 제거하고 우호적인 사람들로 채우기 위해 그동안 조합운영에 이의를 제기한 대의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갈아치우기 작업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또한 K씨는 조합간부들이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사로 있는 몇 곳은 투명하게 하면서 일부대의원들(반대파)이 있는 지역은 당일 대의원선거

를 치룬다고 연락해 즉석뽑기식 선거를 치르고 어느 지역은 아예 연락도 취하지 않고 대의원을 선출했다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월 26일자 1면 『○○○ 농협 복마전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 농협이 농협운영과 관련하여 불법정관 변경, 조합원의 권리제한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2005년 7월 1일 변경된 농협법에 의거 2008년말을 기준회계년도로 선정하고 자산이 500억을 넘을 경우 2011년 회계감사를 2012년 1월과 2월 사이에 받도록 되어 있으나 ○○○ 농협은 수감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정관변경의 경우 총회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표결에서 부결되었으면서도 통과를 시켰다고 보도하였으나, 당시 정관 변경안은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표결 처리된 안건은 정관 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의결이 아니라 대의원간의 의견 대립이 있는 일부조항을 조정하는 의결로써 일반 의결로 표결 가능하므로 정관 변경은 합법적이며 유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일부 조합원의 정관 변경 유효성에 대한 민원 제기로 농협중앙회 법무지원부에 질의한 결과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의원 선거시 일부지역에서 통지를 하지 않고 즉석 뽑기로 선거를 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대의원 선거 10일 전 각 영농회 마을회관과 관할 지점에 공고문을 게재하였으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의원 선거에 관한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 농협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충청신문 2007년 2월 26일자 1면 “○○○ 농협 관련” 보도 중 다음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달라 반론합니다.

「조합 설립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2005년 7월 1일 변경된 농협법에 의거 2008년말을 기준회계년도로 선정하고 자산이 500억을 넘을 경우 2011년 외부회계감사를 2012년 1월과 2월 사이에 받도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는 규정을 위반한 바 없습니다.

「정관변경의 경우 총회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표결에서 부결되었으면서도 통과시켰다는 기사내용에 대해」

당시 정관변경안은 참석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부결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 정관변경안 중 세부조항을 조정하기 위한 의결사항이 있어 과반수 이상의 일반 표결방식으로 의결한 것인데 이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오해가 있어 농협중앙회 법무지원부에 질의한 결과 정관변경이 유효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대의원 선거시 일부지역에 통지를 하지 않고 즉석 뽑기로 선거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

대의원 선거 10일 전 각 영농회 마을회관과 관할 지점에 공고문을 게재하였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의원선거에 관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며 선출방식도 농협정관 131조에 의거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반론보도인 ○○○농협 조합장 김 ○ ○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신문 2007년 3월 14일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기사제목크기는 소제목크기(지금까지 외부회계감

사...)의 고딕체로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신문 : 『○○○ 농협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1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지난 2006년 12월 18일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음주 뒤 목욕하던 40대 사망”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12월 17일 오전 10시경 연산동 모 찜질방에서 숨진채 발견된 강 모 씨는 평소 혈압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강씨의 사인을 뇌졸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사망한 신청인의 형이 평소 혈압이 높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부산조정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KNN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1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 N N : 「KNN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2006년 12월 18일 07:57)

내 용 : 술을 마신 뒤 목욕을 하던 40대 남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어제 낮 10시쯤 부산 연산동 한 목욕탕에서 49살 강 모 씨가 쓰러진채 숨겨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강씨가 평소 혈압이 높았던데다가 술을 마신 뒤 무리하게 목욕을 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합의사항

• 보도문

지난 2006년 12월 18일 뉴스와이드 “음주 뒤 목욕하던 40대 사망” 보도 관련 속보입니다. 12월 17일 오전 10시경 연산동 모 찜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강 모 씨는 사인에 의문을 품은 유족들이 사인 규명을 요구한 결과 평소 혈압이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의 보강수사결과 강씨의 사인은 뇌졸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KNN 라디오 2007. 3. 22. 18:00 뉴스프로그램에 방송하되, 보도문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NN-R : 「KNN 6시 뉴스」 프로그램 (2007년 3월 22일 18: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경찰은 연구원주택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구청 공무원 8명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후략)

연구원 주택의 불법 시공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형질변경을 해주고 건축인·허가를 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 ○ ○) 외 2인

피신청인 : 충청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충청투데이 : (1) 『‘연구원 주택’ 12명 사법처리』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7일자 1면)

내 용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녹지를 훼손하며 건축 중인 대전 ○○구 ○○동 소재 ○○○○의 연구원 동호인주택 ○○○○빌과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공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 관련자 12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북부경찰서는 16일 연구원주택을 시공한 업체의 대표 A씨에 대해 주택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시공업체 관계자 B씨와 특구본부 간부 C씨, 전 연구원 D씨 등에 대해선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 『‘투기 누더기’ 막았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7일자 3면)

(전략) 한 경찰 관계자는 “연구원주택은 애초부터 지어질 수 없는 건물로 온갖 불·탈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A씨 등은 녹지지역에 동호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1개 세대당 100여만 원의 금품을 주고 ‘가짜 건축주’를 모집해 인·허가를 받은 뒤 자연녹지인 ○○○○을 불법으로 개발해 땅값 상승과 분양 등으로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은 행정소송 패소를 근거로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이 대덕특구 불법개발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7년 1월 17일자 1면 『연구원주택 12명 사법처리』, 3면 『‘투기 누더기’ 막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녹지를 훼손하며 건축 중인 대전 ○○구 ○○○ 소재 우성이산의 연구원동호인주택 ○○○○빌과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공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 관련 12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당시에 사법처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후 2007년 3월 3일 검찰 수사결과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관련기사 3면에서 시공업체와 ○○구청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은 그동안 “편법은 인정하지만 불법은 없다”,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강변해 왔으

나 경찰은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가짜건축주를 모집하고, 불법 형질변경을 통한 주택 건축으로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공무원들은 불법형질변경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A씨 등은 녹지지역에 동호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1개 세대당 100여만 원의 금품을 주고 ‘가짜 건축주’를 모집해 인·허가를 받은 뒤 자연녹지인 우성이산을 불법으로 개발해 땅값 상승과 분양 등으로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은 행정소송 패소를 근거로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이 대덕특구 불법개발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은 대덕특구 불법개발에 앞장서지 않았음이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89,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1월 27일자 1면에 『‘연구원 주택’ 12명 사법처리』, 『‘투기 누더기’ 막았다』 각각 제하의 기사 중 제1면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녹지를 훼손하며 건축 중인 대전 ○○구 ○○동 소재 우성이산의 연구원 동호인 주택 ○○○○빌과 관련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시공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 관련자 12명이 누더기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확인 결과 공무원들의 경우 당시에도 사법처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후 2007. 2. 28.자

로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결정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제3면에서 시공업체와 ○○구청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편법은 인정하지만 불법은 없다”는 등의 강변을 해왔다고 보도하는 등 ○○구 공무원들이 마치 불법형질변경에 관여한 듯한 내용과 시공업체가 금품을 주고 가짜 건축주를 모집해 인허가를 받은 뒤 수십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구청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이 대덕특구 불법개발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구청 공무원들이 불법형질변경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대덕특구 불법개발에 앞장서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음을 밝힙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투데이 2007년 4월 2일자 2면에 2단 이상의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1면의 부제목(시공업체 대표…)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투데이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병원 노조 집행부가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정보도)

사건번호 : 2007충북조정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학교
 ○○병원지부 (지부장 전 ○ ○)
 피신청인 : 중부매일
 증 재 부 : 충북증재부
 접 수 일 : 2007. 3. 23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중부매일 : 『○대○병원 노조 CCTV ‘논란’』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4일자 4면)

내 용 : 보건의료원노동조합 ○○대학교 ○○병원지부가 지부 사무실과 인접한 휴게실에 CCTV를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병원 측과 노조원들에 따르면 13일 이 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이 노조 집행부 측에 조합비가 입금된 통장 공개를 요구하던 중 휴게실에 설치된 CCTV용 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선은 노조사무실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부사무실 내부를 찍은 동영상 일부가 발견됐다.

비상대책위 소속 조합원들은 “노조 집행부가 자신들과 반대편에 서있는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분명하다”며 노조 집행부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 측 역시 “해당 휴게실은 휴게실 겸 회의실로 마련된 것으로 경영회의 등 주요 회의가 열리는 것은 물론 그동안 일부 여직원이 탈의실로도 사용해 온 장소”라며 “법적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집행부 관계자는 “노조지부 사무실의 사건장치가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에 의해 훼손된 적이 있어 이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를 검토

했으나 카메라는 연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병원 노조는 노노간 심한 갈등으로 현 노조 측이 전 지부장을 공금횡령에 대한 의혹과 업무방해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전임 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현 집행부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진정해 일부 관계자가 기소되기도 했다.

또 전·현직 노조 간부가 다툼을 벌여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 등 조합원간의 갈등으로 각종 고소, 고발과 진정, 소송에 휘말려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보는 2007년 3월 14일자 사회2면 『○대○병원 노조 CCTV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조사결과, 이 선은 노조사무실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부사무실 내부에서 찍은 동영상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경찰 및 병원관리자, 노조관계자 등의 입회 하에 확인한 결과, 선만 발견되었을 뿐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았고, 컴퓨터나 기타 동영상기록장치와는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비대위 측의 요구로 별도의 노조 컴퓨터에서 조합사무실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해당 휴게실은 휴게실 겸 회의실로 마련된 것으로 주요 회의가 열리는 것은 물론 일부 여직원이 탈의실로 사용해 온 장소라며 법적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병원 측의 입장을 보도하였으나,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는 설치된 바 없으며 휴게실이 탈의실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임 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현 집행부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진정해 일부 관계자가 기소되기도 했다고 한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부제목 : ○대○○병원 노조 CCTV ‘논란’ 관련
- 본 문 : 본지 지난 3월 14일자 4면 「○대○○병원 노조 CCTV ‘논란’」 제하의 기사 중
 - ‘경찰 조사 결과, 이 선은 노조사무실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노조지부사무실 내부를 찍은 동영상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은 선만 발견되었을 뿐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았고 컴퓨터나 기타 동영상기록장치와는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대위 측의 요구로 별도의 노조컴퓨터에서 조합사무실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당 노조휴게실은.....경영회의 등 주요회의가 열리는 것은 물론...그동안 일부 여직원이 탈의실로 사용해 온 장소’라고 보도한 내용은 휴게실이 탈의실로 사용된 바 없어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현 노조관계자는 휴게실이 병원 회의실로 사용된 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전임노조집행부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집행부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진정해 일부 관계자가 기소되기도 했다는 내용은 아무도 기소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부매일 2007년 4월 5일자 2면에 2단상자기사로 게재하되, 부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와 같은 면(10장 1묶음에 15만 7천 200원...)갈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와 같게한다.

또한 위 정정보도문을 중부매일 인터넷판(www.jbnews.com)에 2007년 4월 4일 오후 10시부터 3주

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연결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부매일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특정 신문에 대한 기고 및 인터뷰를 금지하는 국정홍보처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청무직 공무원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0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기 숙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조선일보 ‘일사일언’ 필자의 붓 꺾은 정권』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15일자 A35면)

내 용 : 조선일보 문화면을 펼치면 ‘일사일언’이 있다. 200자 원고지 너 장짜리 짙막한 글이어도 1933년 생겨 74년을 독자와 함께 호흡해 온 고정란이다. 매달 네 명씩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필진으로 참여해 일상 속 살아가는 애기와 삶의 지혜를 번갈

아 잔잔하게 펼쳐낸다. ‘일사일언’ 74년 역사에 일찍이 없던 일이 벌어졌다. 3월 필자 중 한 사람이 지난 6일과 13일자에 글을 실은 뒤 “하도 ‘위쪽’에서 뭐라고 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며 기고를 포기했다. 이 필자는 문화관광부 산하기관 원장이다. 그는 “내가 ‘관 쪽’에서 일하는 이상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이 기관장이 말한 ‘위쪽’이 누군지는 새삼 밝힐 필요도 없다. 국정홍보처는 2005년 특정 신문에 대한 공직자 기고와 인터뷰를 금지하는 지침을 모든 부처에 보냈다. 청와대는 조선일보에 글을 실거나 인터뷰를 한 중앙인사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등에게 경위를 따지고 내부 감사보고서와 경위보고서를 요구했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조기숙씨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에게 항상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열려 있다”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15일자 오피니언란에 『조선일보 ‘일사일언’ 필자의 붓 꺾은 정권』이라는 제목으로 홍보수석 조기숙씨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에게 항상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열려 있다”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기숙 씨는 누구에게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다만 정책홍보기준이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열려있으므로 인권침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발언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지난 3월 15일 A35면에 실린 『조선일보 ‘일사일언’ 필자의 붓 꺾은 정권』 제하의 사실 중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조기숙 씨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에게 항상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열려 있다’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했다”는 내용에 대해 조기숙씨는 “정책홍보기준에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인권침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며 사퇴 종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4월 25일까지(토, 일요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면에 보도하되, 제목과 본문의 활자는 피신청인이 통상적으로 게재하는 ‘반론보도문’의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용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이 위 보도문을 게재한 경우,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부매일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9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참여정부가 사회복지지출비중을 축소해 삶의 질이 더 나빠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07

청 구 명 : 정정보구

신 청 인 : 기획예산처 (장관 장 병 완)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향신문 : 『노 정부 공공지출 줄어 삶의 질 더 나빠졌다』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일자 1면)

내 용 : 참여정부가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양극화 해소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5.7%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도 OECD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를 제외하고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3월 2일자 1면에 『노 정부 공공지출 줄어 삶의 질 더 나빠졌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현 정부가 2003년 공공사회지출비율을 2001년보다 축소하여 삶의 질이 더 나빠졌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2003년 공공사회지출을 좌우하는 정부의 예산·기금편성은 2002년에 이전 정부에서 결정하였으므로 참여정부가 결정하지 않았으며 2006년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비율은 2003년 5.7%로 2001년

5.4%보다 0.3%포인트 증가하였으므로 참여정부가 2003년 공공사회지출을 축소함으로써 삶의 질이 더 나빠졌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혀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
- 본 문 : 경향신문 3월 2일자 1면 『노 정부 공공지출 줄어 삶의 질 더 나빠졌다』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결과, 2003년 공공사회지출 관련 예산·기금편성은 이전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고, 새롭게 변경된 GDP산정방식에 따르면 2001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비율은 5.4%이고 2003년에는 0.3%포인트 증가한 5.7%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4월 11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2007. 3. 13자 2면 ‘알려왔습니다’와 같은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충천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대해 매립장 인근 지역주민 90%가 찬성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웅천발전협의회 (회장 최 ○ ○)
 피신청인 : TJB-TV
 종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8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TJB-TV : 「뉴스 스테이션」 프로그램 (2007년 3월 6일 18:00)

내 용 : (전략)

▷유PD : 보령산업폐기물 매립장 재허가 공방 사태를 짚어봤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산업폐기물이란 무엇인가. 산업폐기물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같은 쓰레기이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어서 정부는 환경보호차원에서 분리수거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립해야 되는 산업폐기물만 해도 하루에 대전 300톤, 충남 2,800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립장은 현재 충남 당진 단 한곳에 불과해 지역폐기물 상당량이 외지로 반출되는 실정입니다. 먼 거리만큼 처리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보령시에서도 지난 96년부터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운영되어 왔으나 2001년 이후 허가갱신이 안 되자 매립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매립장은 현재 폐허로 방치된 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침출수 처리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당초 사업자는 허가갱신노력 끝에 사업이 부도난 뒤 사망했고 새로운 업체가 사업을 이어받아 인·허가를 내려 했으나 그것 역시 벽에 막히자 관리책임주체가 없는 셈입니다. 당초 1, 2차 사업지는 15,000평 3차 사업지로 3만 평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보령시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전임지

에서 준보전임지로 현장을 용도변경까지 해 준 상황에서 사업은 7년째 공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령시가 1, 2차 사업허가를 내주고도 3차에 와서 불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관광보령의 이미지에 먹칠한다, 보령시의 폐기물 발생량이 적다, 지형이 불균형된다. 이는 법규정에 명시된 문구가 아닌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중략)

▷유PD : 그렇다면 과연 관광보령 이미지라는 주장은 합당할까, 보령시에서는 바닷가 갯벌 체험장 바로 옆에 생활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작년에 개설했습니다. 강력한 주민반대여론을 뚫고 그것도 대표적 관광지 바로 옆에 쓰레기처리장을 추진한 보령시의 정책을 보면 뭔가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최○○ : 저희들이 비행기 폭격장이 있습니다. 그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죠. 그 뿐만 아니라 보령화력이 대한민국 최대 규모 보령화력이었어요. 거기서 생산되는, 배출되는 온·폐수나 아황산가스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공기를 마시고 있죠. 그런데 더군다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매립장이 그것조차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한 얘기 아니냐 저희는 그런 주장입니다.

▷유PD : 달갑지 않은 환경시설을 반대한다는 정서에는 충분히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폐기물매립장과 가장 인접해 있는 마을주민의 약 90%는 인·허가 찬성입장입니다.

▷황○○ : 저런 걸 생태공원화해서 사업종료 되면 그것도 관광자원으로 쓰려고 하고 그렇게 회시하고 있었는데 갖은 지들이 노력을 해 봐도 저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되지도 않고 시에서 저걸 좀 어떻게 잘 좀 해서 저희 마을도 좀 소득창출도 되고...

▷유PD : 상당수의 주민들은 매립장을 이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데 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은 침출수 처리장인데 사업을 인수한 업체가 2년간 가동

하다가 지난 연말부터 연간 2억 원의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가동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침출수는 지금도 하루 평균 8톤이 흘러나옵니다. 장마철에는 하루 60톤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침출수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폐기물을 뚫고 나온 물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코를 찌를 정도로 심각한데 시설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이 지난 3월 6일 18시 「뉴스 스테이션」 프로그램에서 웅천폐기물 매립장 허가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주민들이 찬반 여러 갈래로 민심이 흩어져 있고, 보령시가 폐기물 매립이 중단된 매립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존임지에서 준보존임지로 용도변경까지 해 준 상황에서 3차 허가를 불허하여 사업은 7년째 공전하고 있으며, 매립장을 방치하여 지금도 하루 평균 8톤의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장마철에는 하루 60톤까지 나올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 건과 관련해서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보존임지를 준보존임지로 용도변경한 것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현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폐기물 매립장은 차수막을 바닥에 설치하여 폐기물 매립 후 다시 차수막을 덮은 다음 그 위에 복토를 하고 잔디와 나무를 심도록 설계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침출수의 양이 감소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의 부도 이후 보령시에서 침출수의 관리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침출수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대전방송이 지난 3월 6일자 오후 6시 「뉴스 스테이션」 프로그램에서 웅천폐기물 매립장 허가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주민들이 찬반 여러 갈래로 민심이 흩어져 있고, 침출수 처리장에서 침출수는 지금도 하루 평균 8톤이 흘러나오고, 장마철에는 하루 60톤까지 나올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웅천발전협의회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 건과 관련해서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웅천 주민들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침출수는 하루 8톤 미만으로 흘러나오고 있으며, 사업자의 부도 이후 보령시에서 침출수의 관리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침출수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TJB 대전방송 2007년 4월 13일 오후 6시 「뉴스 스테이션」 프로그램 말미에 방송하되, 제목은 청색화면에 흰자막으로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TJB-TV : 「뉴스스테이션」 프로그램 (2007년 4월 13일 18: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OECD 검토단이 3불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1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피신청인 : 조선일보
 종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8
 처 리 결 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대학자율 막는 3不정책 없애야”』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6일자 A1면)
 내 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대해 대학 입시의 ‘3불 정책’을 사실상 없애라고 조언했다. 3불 정책은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부금 입학제는 절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OECD는 최근 공개한 ‘한국 고등교육(대학) 보고서’에서 “한국의 3불 정책 등이 포함된 획일적인 입시는 젊은이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자신의 방법에 따라 뽑을 수 있다면 미래가 밝은 학생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 OECD는 “3불 정책이 투명한 다른 제도의 준비 없이 지나치게 빨리 없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건을 달았다. (후략)

(2)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 교육 혁명안 내놓으라』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7일자 35면)
 (전략) OECD 교육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학 입시의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못하게 한 ‘3不 정책’부터 없애라고 했다. 대학에 신입생을 어떻게 선발할지 결정권이 없는데 어떻게 경쟁력 있는 학생을 뽑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OECD는 ‘고등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대학행정은 그 위원회에 맡기고 교육부는 손을 떼라는 말까지 했다. 빌 게이츠가 수학과 과학 교육을 혁명해야 미국이 살아남을 수 있

다고 역설하고 있는 동안 한국 교육부는 고교생들이 ‘수학·과학·기술·가정’ 중에서 한 과목만 선택해도 된다는 교과목 개편안을 발표할 정도이니 그럴 만도 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가 2월 26일자 1면 『“대학자율 막는 3不정책 없애야”』와 27일자 35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 교육 혁명안 내놓으라』 제하의 기사에서 “OECD가 우리 정부에 대해 대학 입시의 3불정책을 사실상 없애라고 조언했으며, 고등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대학행정은 그 위원회에 맡기고 교육부는 손을 떼라고 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요청해 왔습니다.

OECD 검토단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등교육 관리시스템이 향상되지 않은 현 체제 하에서 3불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면서 ‘3불정책부터 없애라’고 한 바 없으며, 또한 발전적인 규제를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 고등교육위원회 신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곧 바로 고등교육위원회를 신설하라고 한 것이 아니며, 고등교육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면 교육부는 규제 책임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는 것이며 OECD 검토단이 대학행정은 ‘고등교육위원회’에 맡기고 교육부는 손을 떼라고 한 바가 없다고 교육부는 알려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본 문 : 지난 2월 26일자 1면 및 27일자 35면의 OECD보고서 내용 기사와 사실과 관련해 교육부는

동 보고서가 3불정책의 문제점을 일부 지적하고 있지만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지는 주의해야 하고, 또한 고등교육위가 교육부 역할을 모두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제도개선안 중 하나로 예시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4월 10일까지 토요일을 제외하고 조선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2월 26일자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OECD, 한국정부에 조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 및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9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산자부가 방폐장 유치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산업자원부

피신청인 : 대구MBC-TV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대구MBC-TV : 「포커스 M」 프로그램 (2007년 3월 16일 23: 30)

내 용 : ▷김병창 기자 : 무려 19년이나 끌어온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해서 정부는 지난 2005년말 주민투표에 앞서 유치지역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정부의 태도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는 듯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주시민들은 차라리 방폐장을 반납하겠다고 최근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의 문제점과 지역의 대응책을 취재했습니다.

방폐장 유치지역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2달여 앞둔 지난 2005년 8월 10일 당시 이회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경주시를 찾아와 시청회의실에서 시장과 시의원 유치단체회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은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 보다도 더 잘사는 곳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수원 본사나 양성자가속기, 특별지원금 3,000억원 보다도 유치지역지원사업이 훨씬 더 규모가 크라며 6조원 이상의 가용자금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회범 전 산자부 장관 : 산자부가 운영하는 게 2조 정도 됩니다. 2조 원 정도. 그리고 에너지에 관련된 자금이, 에너지 특별회계가 한 2조 4천억 정도되고, 전력기반기금이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가 사실은 가용재원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창 기자 : 간담회 바로 다음날 백상승 경주 시장은 방폐장 유치 신청을 선언했고 산자부장관의 발언은 주민설득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략)

▷김병창 기자 :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굳게 믿고 무려 90%에 가까운 찬성율로 유치한 방폐장, 그러나 환상은 불과 1년 반만에 여지없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2월 21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사업 간담회. 이 자리에 참석한 산자부 고위 관료를 상대로 경주시는 이회범 전 산자부장관의 약속을 지키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 산자부 이회범 장관님 그 부분은 그게 참... 곤욕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장관님이.. 그게 연고지가... 이곳이고 해서 상당히 애항심의 발로로서 상당히 의욕있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것을 백업해주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정부 예산의 틀과 법의 실정법의 틀을 그렇게 확실히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재량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창 기자 : 이같은 사태의 발단은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사업의 규모를 두고 경주시와 정부가 보인 엄청난 시각차이입니다.

지난해 6월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사업으로 118건의 88,526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지난 1월에야 알려졌습니다.

경주시가 요청한 대로 수용한 것은 겨우 6건, 금액으로는 요구액의 3.9%에 그치는 3,512억 원뿐입니다. 조건부 수용이 36건에 15,553억 원, 일부수용은 8건에 12,813억 원, 그러나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6개 수용사업 가운데 양북면 봉길리와 이일리간 지방도 929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양북 대종교에서 감포전충간 국도 31호선

확포장 공사는 방폐장 때문에 어차피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약속을 지켜라> 관련 정정보도문

• 본 문 : 대구MBC 방송은 지난 3월 16일 방송한 「포커스M」 프로그램에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약속을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2005년말 주민투표에 앞서 유치지역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부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약속한 사항은 완료되었거나 이행중입니다.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은 2006년 5월 9일 경주시 명의를 통장으로 이미 지급되었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은 2006년 12월 29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일대로 이전부지가 선정되었고 ▲양성자가속기사업은 2006년 3월 30일 경주시-한국원자력연구소간 업무협약 체결 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유치지역지원계획은 경주시 요청사업을 접수받아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지었으며, 조만간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방폐장 유치 당시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회범 전 산업자원부장관이 한수원 본사나 양성자가속기, 특별지원금 3,000억 원 보다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훨씬 더 규모가 크다며 6조 원 이상의 가용자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보도했으나, 이 장관이 “한수원 본사나 양성자가속기, 특별지원금 3,000억 원 보다 유치지역지원사업이 훨씬 더 규모가

크다”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으며, “6.2조 원 이상의 가용 자금”이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지원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지역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하여서도, 아직 지원 내용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관계부처 협의 결과, 지원가능 사업은 경주시 요청 원안 수용 6건 외에도, 조건부 수용 36건, 일부 수용 8건등 총 5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유치지역지원 사업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방폐장’ 지원 관련 산자부 반론보도문
- 본 문 : 다음은 반론보도문입니다. 본 방송은 지난 3월 16일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약속 지켜라’ 제하의 보도에서 정부가 2005년말 주민투표에 앞서 유치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경주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정부가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약속한 사항 중 ‘특별지원금 3,000억 원 지원’ 부분과 ‘한수원 본사이전’ 부분 그리고 ‘양성자가속기사업’ 부분은 이미 지원을 완료하거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2005년 8월 있었던 유치관련 장관 간담회에서 언급된 6조 원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이 액수는 가용예산 규모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지원규모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회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유치지역지원계획’이 다른 지원사업 예산규모보다 훨씬 크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덧붙여, 산업자원부는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유치지역지원사업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유치지역에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대구 문화방송 「포커스M」 프로그램 말미에 2007년 4월 20일까지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하단에 푸른색 바탕의 흰색 정지자막으로 게재하고 본문은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구MBC-TV : 「포커스M」 프로그램 (2007년 4월 20일 23:5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소속 노조원들이 망향휴게소의 노사분규에 개입하여 사측조치를 비난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4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본부장 최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2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매일경제 : 『아무데나 나서는 민주노총』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9일자 A39면)

내 용 : 노조가 경영진의 임원해고를 노조해체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회사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벌

어졌다. 또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망향휴게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노조원 30여명은 최근 사측의 인사조치에 항의하며 사무실 점거를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려던 사측 한 모 소장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노조원들은 10년 이상 휴게소장으로 일해 오던 최모 상무가 지난주 해임되자 반발해 왔다. 노조 측은 사측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임 소장 등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원들이 인사조치에 항의하는 대자보를 휴게소 주변에 써 붙이고 경리사무실 출입문을 폐쇄하는가 하면 내부 전산시스템을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휴게소 사무실을 찾아와 사측 조치를 비난하는 항의시위를 벌이며 이 사태에 개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망향휴게소 관련 민주노총 집회 사실과 달라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4월 19일자 인터넷 전자 기사 및 사회면에 『아무데나 나서는 민주노총』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휴게소 사무실을 찾아와 사측 조치를 비난하는 항의시위를 벌이며 이 사태에 개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은 ‘한미FTA무효! 고 허세욱 동지 민족민주노동열사장’에 참석한 후 망향휴게소에서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신분을 알 수 없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매장 및 관리사무소에 대기중인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을 들었을 뿐이며, 불법집회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최 모

상무가 지난주 해임되자 반발해왔다”고 보도하였으나 해임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사회부장 및 기사 작성 기자 중 1명이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구두로 유감을 표시하도록 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 내 용 : 지난 4월 19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충남본부 및 이민구 조직부장께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매일경제에서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권익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 내용대로 유감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모든 청구는 취하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한미FTA 협상의 전체적인 구도가 기만과 허위로 가득차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51
 청구명 : 반론청구
 신청인 : 농림부 (장관 박 흥 수)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07. 4. 2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경제 : 『이밥에 쇠고기』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0일자 39면)

내 용 : 협상은 끝나고 공치사만 남았는지... 모처럼 찬성표가 많아졌으니 대통령에서부터 실무진까지 박수를 받고도 싶을 테다. 이쯤해서 협상의 전체적인 구도가 기만과 허위로 가득차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도 쌀 시장을 지켜냈다”는 자화자찬이나 쇠고기 뼈조각으로 국제망신을 당하고도 개방일자를 놓고 여전히 더듬수를 놓고 있는 것도 그렇다.

30개월령 미만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70여개 국에 이르는데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뼈조각을 문제 삼아 전량 반송한 나라가 또 있었는지부터가 궁금하다. 소뼈라면 갈비나 등뼈 꼬리뼈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말이다. 살코기를 발라내면서 튀어 들어간 밀리미터 단위의 뼈조각을 문제 삼은 것부터가 실은 억지였다. 그것도 800상자를 이잡듯 뒤져 겨우 몇 건을 발견해냈다는 실로 악의적인 조사였다. X-레이로도 나오지 않자 상자를 풀어헤쳐 육안 검사까지 동원했으니 미리부터 ‘살코기’라는 단어에 함정을 깔던 것이다. 결국 한국은 믿지 못할 상대가 되고 말았고 서면 약속 따위의 모욕을 받아 쓴 나라가 됐다. 나중에 똑같은 보복을 당하면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항변할 것인지... (전략)

입만 열면 미국 소를 저주하는 광우병 문제는 더욱 그렇다. 일본이 전국을 뒤져 수백 만 마리의 소를 전수검사했던 것은 국제적 화제였지만 한국에는 광우병이 과연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도 불명이다.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 때문에 발병한다고 돼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정부 주장부터가 우선 믿을 수 없다. 유럽 측 통계에는 분명 한국에 동물성 사료를 수출했다고 돼 있는 것이 왜 한국 통계에는 없다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조차 나온 적이 없다.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역시 어물쩍 덮고 지나갔다. 더구나 한국은 사료의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닌가 말이다. 만일 축산 농가

로부터 광우병 발생 보고가 없었다는 것이 청정지역이라는 주장의 유일한 근거였다면 이런 우스개га 다 시 없다.

쌀 수입 문제도 다를 것이 없다. 한국은 소비량의 4%를 중국을 위시한 외국으로부터 매년 ‘의무수입’하고 있다. 일본이 이미 관세화를 통해 개방했고 대만 역시 시장을 열었다. 국제 가격을 무력화시키는 높은 관세로 개방하는 것과 낮은 특혜 관세로 의무수입하는 것 중 무엇이 실제 수입량을 줄이게 되는지 정밀한 계산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수입을 거의 안할 수도 있는 것을 소비량의 8%까지(2014년) 의무수입하는 일빠진 것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장래 개방 시점에 적용하게 될 관세율은 지금도 매년 착실히 내려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 말이다. 그러니 “이번에도 쌀은 막았다”는 주장은 쌀 문제를 2014년의 문제로 미루어 놓는 책임 회피일 뿐이요, 쌀을 성역화하는 또 다른 선언에 불과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2007년 4월 10일자 A39면 『이밥에 쇠고기』 제하의 칼럼에서 ‘한미FTA 협상의 전체적인 구도가 기만과 허위로 가득차 있으며 쇠고기 뼈조각으로 국제망신을 당하고도 개방일자를 놓고 여전히 더듬수를 놓고 있는 것도 그렇다. 한국에 광우병이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데 미국 소의 광우병을 문제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쌀의 경우 높은 관세로 개방하는 것과 낮은 특혜 관세로 의무 수입하는 것의 실익 계산 없이, 수입을 거의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소비량의 8%(2014년) 의무수입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뼈조각이 검출된 미국산 쇠고기를 방송한 것은 한·미 양국간 합의사항에 따른 것으로 우리정부의 정당한 조치이다. 미국이 금년 말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통제된 광우병 위험국(Controlled BSE risk country)’ 등급으로 평가 받더라도 WTO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위험평가’ 등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개방일자를 정할 것이다”라고 밝혀왔으며, 또 우리나라의 광우병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는 '96년부터 철저한 BSE 예찰검사('06년까지 18,855마리)를 실시하였으나 의심사례가 나온 적은 없다. 칼럼에서 제기한 광우병 원인인 동물성 사료 수입문제는 우리나라 관세청 사료 수입실적과 단미사료협회 사료수입추천실적을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는 영국 등 유럽으로부터 동물성사료(육골분)를 수입한 실적이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쌀 수입에 대해서는 “2004년 쌀 협상 당시 2005년 말 DDA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었으나 DDA협상 조기타결·지연여부가 불확실했다. 이에 WTO 보조금 및 관세의 감축수준 예측이 어려워 DDA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언제든지 수입물량의 증량 없이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면서 관세화유예를 선택한 것이다. 또 2005년부터 DDA 타결시까지 2005년도 관세율을 DDA협상의 결과가 발효할 때까지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농림부의 입장을 담은 담당 국장 명의의 기고문(200자 원고지 4~5매 내외 분량)을 작성하여 2007년 5월 10일까지 피신청인에게 전달하고, 피신청인은 이 기고문을 2007년 5월 20일까지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게재방식은 통상의 기고문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경제 : 『우리나라는 광우병 청정국』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2일자 30면)

내 용 :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협상이 이뤄졌지만 가장 뜨겁게 이슈화됐던 품목 중 하나가 쇠고기다.

특히 FTA 협상과 별개의 사안으로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협의로 진행됐던 쇠고기의 검역·위생 문제가 더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는 것이다.

지난번 세 차례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뼈 조각 문제로 인한 불합격 조치 등 지금까지의 검역조치는 과도한 것이 아니며, 미국 봐주기는 더욱 아니다.

우리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조치와 관련, 국내에서 광우병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국가며, 철저한 방역관리가 되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소 1만 9,000여 두를 검사했으나 광우병으로 확인된 소는 없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도부터 광우병이 다발하는 유럽 국가의 동물성 사료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유럽측 통계에서 동물성 사료가 우리나라로 수출됐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국내 관세청 통계 등을 통해서 수입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다.

금년 5월 말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다른 10개 국가와 함께 광우병 위험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WTO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입위험평가를 거쳐 대응할 것이다. □

최근의 국내 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문원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협상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인정함이 상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자 판결 (2006가합16537)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2007년 4월 12일 외교통상부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문화방송이 2006년 7월 25일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동원호 선박 선원들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론을 요구하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청구권자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야 한다.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소말리아 현지 및 해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원고는 범정부차원에서 해적들의 과거

납치사례와 소말리아 현지 정세 등 광범위한 정보분석과 전문가의 조언에 기초하여 협상에 노력하여 왔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론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함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동원호 선원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보도는 원고가 소말리아의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게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해 선원들이 납치된지 100일이 지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원고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긴 하나,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사건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소말리아 과도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6년 8월 24일 언론중재위원

회에 조정신청(2006서울조정333)을 하여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피고는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16537 정정보도 등

원 고 : 외교통상부

서울 종로구 도림동 95-1

대표자 장관 송 민 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홍 승 기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문화방송국빌딩

대표이사 최 문 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성 규

변론종결 : 2007. 3. 22.

판결선고 : 2007. 4. 12.

주 문 : 1.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별지 1 반론보도문 기재 방송방법에 따라, 같은 반론보도문 기재 방송내용을 방송하라.

2. 만일 피고가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이 판결이 선고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PD수첩” 프로그램에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을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 만약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로서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방송의 보도

1) 피고는 2006. 7. 25. 23:05경부터 24:00경까지 약 55분 동안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피랍 100일 소말리아 동원호, 조국은 왜 우리를 내버려두는가?」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방송의 내용

이 사건 방송은, 김영미 프로듀서가 2006. 7. 초경 소말리아 해적(이하 ‘이 사건 해적’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6. 4. 4. 납치된 동원수산 주식회사(이하 ‘동원수산’이라 한다) 소유의 동원호 선박의 선원들(이하 ‘이 사건 선원들’이라 하고 위 납치사건을 ‘동원호 사건’이라 한다)과 위 해적을 만나기 위하여 소말리아로 직접 찾아가 취재한 내용에 기초하여 이 사건 선원들이 현재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고, 그 가족들도 위 선원들의 안위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선원들은 납치된지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적으로부터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말리아 현지에서 원고 및 동원수산(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이 사건 해적 사이의 석방에 관한 직접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한 간접적인 협상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고 등은 이 사건 해적 및 소말리아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해적과의 협상에 나서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방송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가지 보도내용을 지적하면서 그에 관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바, 먼저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본 후, 원고가 지적하는 5가지 보도내용을 구분하여 각 그에 대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언론중재법 제16조)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론을 요구하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청구권자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는데, 사실적 주장과 논평·비평 등이 혼재하

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해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당해 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바,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래의 언론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언론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원고의 제①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제①주장

이 사건 해적은 동원호를 납치한 직후부터 언론인들의 현장 접근을 허용하고, 먼저 언론에 접촉하거나 언론에 관련 정보를 흘리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방송에서 소말리아를 취재하였던 김영미 프로듀서조차도 이 사건 협상에 이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언론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납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인질의 몸값을 높이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해적이 그러한 능력이 없는 집단인데도, 정부는 이 사건 해적이 언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해적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판단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이모현 프로듀서가 "지금 정부에서는 해적들이 협상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김영미 PD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

자, 김영미 프로듀서가 “그건 우리 정부가 동원호를 납치한 해적들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해적들은 언론을 끌어들이어서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그런 치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6. 4. 26. 납치범들의 성격이라든가 정체에 대해서는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는 장면에 이어 2006. 7. 4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납치범들이 동원호 관련 언론 보도를 인터넷을 통해 파악하면서 국내 여론의 움직임을 활용하고 있는 점이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한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정책홍보팀 관계자가 이 사건 해적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도한 후, “그러나 현지에서 본 상황은 달랐습니다. 해적본부에서 접할 수 있는 매체라곤 전파가 잘 잡히지 않는 구식 라디오 한 대 뿐, 인터넷은 커녕 노트북도 처음 보는 듯 신기했습니다. 외국채널과 정보력을 총동원해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과연 해적단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한 것일까”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①원보도’라 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제①원보도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①원보도는 원고가 이 사건 해적이 언론을 이용할 줄 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의 판단으로는 이 사건 해적이 언론을 이용할 정도의 치밀한 계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해적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의 원고에 대한 평가를 보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요구하는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을 보면, 그 주된 취지가 이 사건 해적이 언론을 이용할 줄 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닌, 원고가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분석 및 전문가의 조언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해적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평가적 내용에 대한 반박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제①원보도는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①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제②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제②주장

원고는 동원호 납치사건을 접하자마자 이 사건 해적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에 착수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해적과의 협상에 임하였기에 이 사건 해적과 소말리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아니하였고, 소말리아 현지에서 이 사건 해적과의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던 것은 이 사건 해적이 소말리아가 매우 위험하여 협상인이 납치 또는 살해될 가능성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해적들이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소말리아 현지에서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상이 지연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소말리아 현지에서 이 사건 해적과 직접적인 협상을 하지 아니하였고, 소말리아 현지 및 이 사건 해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건 협상이 타결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판단

가)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이모현 프로듀서가 “그런데 왜 아직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라고 묻자, 김영미 프로듀서가 “소말리아 현지에서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고 또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원보도는 소말리아 현지에서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기

때문에 협상이 아직까지도 타결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②의 1 원보도'라 한다)과 원고 등이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협상이 아직까지도 타결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②의 2 원보도'라 한다)으로 나눌 수 있어 각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를 나누어서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제②의 1 원보도에 대하여 원고는, 소말리아 현지에서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현지에서의 직접적인 협상을 위하여 협상중개인을 파견하겠다는 우리 측의 제안을 이 사건 해적이 거절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②의 1 원보도는 소말리아 현지에서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다는 사실적 주장과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표명 또는 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제②의 1 원보도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그와 관련한 의견표명 또는 평가의 부분에 관하여만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②의 1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이 아닌 부분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②의 2 원보도에 대하여 원고는, 범정부차원에서 해적들의 과거 납치사태와 소말리아 현지 정세 등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분석과 전문가의 조언에 기초하여 협상에 노력하여 왔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제②의 2 원보도 중 원고 등이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반론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반론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마. 원고의 제③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제③주장

원고는 소말리아 과도정부를 통하여 동원호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원수산과 이 사건 해적 사이에서 직접 협상을 하도록 하여 동원호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여 동원수산의 협상을 지원하였는바, 이슬람법정연대의 복진동향, 이들이 동원호 사건 해결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협상에 임하였고, 영국인 협상전문가를 고용하여 동원수산의 협상을 돕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말리아의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달라는 공식적인 협조 요청을 하는 정도 외에는 이 사건 선원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판단

원보도에서 지명된 사람이라도 그가 청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참조), 여기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원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되고, 이에 대한 반론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사건 참조).

갑 1호증, 을 1호증의 2,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정부는 사건 직후 선

원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라고 한 뒤, 그러나 과연 원고가 이 사건 해적의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고, ‘소말리아 과도정부 측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장관 접촉은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를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과도정부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영사와 관계자와의 전화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부가 최근까지 조속한 석방 노력을 촉구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소말리아의 과도정부, 그렇다면 이번 사태 해결에 과도정부는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을까. 과도정부의 수산부장은 지난 5월 초 지역 라디오를 통해 한국어선나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라고 보도한 후, 소말리아 수산부장관 핫산 압셀 빠라가 현재 과도정부는 해적들을 단속할 여력이 없고 과도정부는 납치된 자들을 도와줄 수 없는 사정이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과 AFP 동아프리카 담당기자인 알리무시가 “힘없는 과도정부가 발행한 조업허가권 때문에 한국 선원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난 7월 1일자 외교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사건 후 석 달이나 흐른 지금에도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게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라고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③원보도’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방송 전인 2006. 7. 24. 원고에게 동원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지도 않으며, 동원호 사건이 해외에서 자국민 납치사건이 벌어졌을 때 무능과 허위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듣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인터뷰 요청서를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③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사항은 원고가 소말리아의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게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하

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나, 여기에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가 이 사건 선원들이 납치된지 100일이 지나도록 원고가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원고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직접적으로 이 사건 선원들의 석방을 위한 협상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방송 보도의 경위,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③원보도는 원고가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소말리아 과도정부에 이 사건 선원들의 석방을 위하여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인정함이 상당하다.

바. 원고의 제④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제④주장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한 협상은 전화와 팩스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현지의 열악한 통신사정으로 인하여 전화, 팩스의 연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주고 받는 데에 몇 주일씩 소요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해적이 동원호 사건 이전에 납치하였던 다른 선박에 관한 협상도 전화와 팩스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당시에도 전화, 팩스의 연결에 어려움이 있었던바, 이러한 협상방법이 동원호 사건 해결의 장기화를 초래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선원의 석방에 관한 협상이 전화와 팩스로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팩스로 보내고 받는 데만도 몇 주일씩 소요되어 협상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판단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소말리아 해적단과 한국 협상단의 협상 과정은 전화와 팩스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구 3백여 명의 하라테레 마을에 단 3대 뿐이라는 유선전화기. 그런데 그나마도 연결 안 되는 때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한번 전화통화를 하려면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몇 시간씩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하라테레 마을에서 영어를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협상은 더더지고 있었습니다.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팩스 보내고 받는 데만도 몇 주일씩 소요되고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④원보도’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④원보도와 관련하여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한 협상이 전화와 팩스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전화, 팩스의 연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주고 받는 데에 몇 주일씩 소요되지는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협상 방법은 이 사건 해적의 다른 납치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것으로서 원고가 협상방법을 잘못 선택하여 동원호 사건의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서만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반론권자도 오로지 사실적 반박만 할 수 있고, 그에 덧붙여 반론권자의 의견이나 논평을 가미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제④원보도에 관하여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 중 원고가 협상방법을 잘못 선택하여 동원호 사건의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은 원고의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원고가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주고 받는 데에 몇 주일씩 소요되지는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반론 보도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사. 원고의 제⑤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제⑤주장

원고는 2006. 4. 7.부터 이 사건 선원들이 석방된 2006. 7. 30.까지 협상장소인 두바이에 동원수산의 협상 대표와 함께 원고의 협상지원대표를 파견하여 동원수산과 협상전략을 긴밀히 협의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다만 어떠한 국가도 돈을 목적으로 자국민을 납치한 납치범과 직접 국가의 이름으로 협상하지 아니하는 국제적 원칙 때문에 원고가 협상의 전면에 나서지 아니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한 협상의 실질적인 주체를 동원수산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판단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외교통상부는 지금까지 돈을 요구하는 납치단체와는 직접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라고 보도한 후, 원고의 영사과 관계자가 피고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협상하는 기본적인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동원수산이다”라는 말을 한 통화내용을 보도하였고, 이 사건 방송의 끝자락에서 “저희에게 보낸 공문에서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도 해적들과 직접 협상을 하진 않는다고 협상의 실질적인 주체를 동원수산으로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든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일개 회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라고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⑤원보도’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⑤보도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 이 사건 방송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⑤보도는 이 사건 해적과 협상을 하는 기본적인 주체는

동원수산이고,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해적과 협상을 할 수는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국민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당연히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해적과의 협상 주체를 동원수산이라고 칭하면서 협상에 대한 책임도 동원수산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협상의 주체에 관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비평을 보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요구하는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을 보면, 그 주된 취지는 해적에 의한 피랍3사건의 경우 정부가 해적들과 직접 협상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관례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사건 해적과 직접 협상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원호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해결시점까지 동원수산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동원수산에게 이 사건 협상의 모든 책임을 떠넘긴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⑤원보도는 피고의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⑤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인정되는 반론보도의 범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이 사건 제②의 2 원보도, 제③원보도, 제④원보도의 각 사실적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데, 원고가 구하고 있는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 중에서 위 각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적 주장 중 원고의 사실적 주장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내에서만 반론보도가 인정이 되고, 이를 넘어선 원고의 의견표명 내지 평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방송방법 및 방송내용은 별지 1 반론보도문의 기재와 같이 고쳐서 인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 중 일부는 피고가 원보도인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반론을 충분히 게재하였거나, 이 사건 방송 후 피고가 원고의 반론내용을 보도하였기 때문에 반론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고, 일부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의 주장 중 일부는 위 2항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에 관한 것인바, 이하에서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된 별지 1 반론보도문의 내용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나. 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이 나간 다음 날인 2006. 7. 26. 피고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지난 4개월 가까이 최선을 다해 온 노력을 매도하고 정부의 역할과 사건의 본질에 대해 오도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납치 직후인 지난 4월 7일 정달호 재외동포영사대사를 두바이로 파견한 이래 협상지원대표들을 교체하면서 협상전략을 협의하는 등 총력을 경주해왔다”라고 하면서 해적과 정부가 직접 협상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원칙이고 협상장소는 송금이 쉽다는 등의 이유로 해적들이 지정한 것이며, 이 사건 방송은 그간의 협상경과나 해적들의 요구사항 등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동원호 선원들이 조속히 석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원고의 반론 내용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의 목적이 모

두 달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언론사가 원래의 보도 이후 나중에라도 상당한 정도의 반론을 보도하여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충실히 하였다면 그 후에 별도로 피해자가 원래의 보도에 관하여 다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반론보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2006. 7. 26. 피고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을 보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을 피고가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에서 보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③원보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소말리아 과도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 이외에도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동원수산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에서 “정부는 동원호 선원들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동원수산 측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2006. 4. 26. 당시 외교통상부장관인 반기문의 발표내용을 보도하였는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위와 같은 피고의 보도로 인하여 충분한 반론보도가 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2006. 4. 26.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부가 동원수산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는 장면을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동원호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그 사건이 해결된 시점까지 계속하여 원고가 동원수산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반론으로 보도하여 달라는 취지임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반론으로 보도하였다고 하는 부분은

2006. 4. 26. 당시 원고가 동원수산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일 뿐이어서 이러한 보도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반론이 충분히 보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 그러나 한편 언론기관도 헌법 제21조에 기하여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반론보도문 게재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편집의 자유가 제한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활동을 위축시켜 보도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음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언론중재법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에는 언론사가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2호)을 두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하여야 한다.

2) 피고는,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팩스로 보내고 받는 데만도 몇 주일씩 소요되었다는 이 사건 제④원보도에 대하여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주고 받는 데 몇 주일씩 소요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반론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적 및 소말리아 현지에 대하여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는 등 결코 이 사건 해적 및 소말리아 현지에 대하여 정보가 부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반론도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역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간접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고도 주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대내외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기간 안에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여 피고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간접강제명령을 발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경 민
판사 이 창 경
판사 김 은 정

〈별지 1〉 반론보도문

1. 방송방법

중앙상단 화면에는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기사 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통상의 기사 보도 자막과 같은 크기의 글자, 줄 간격, 글자 간격의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방송내용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06. 7. 25. "PD수첩" 프로그램에서 2006. 4. 4.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동원호 선박의 선원들이 납치된지 100일이 지나도록 석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동원수산 주식회사의 위 해적들 및 소말리아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외교통상부가 소말리아의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게 동원호 선박 선원들의 석방을 위하여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 이외에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동원호 선박 선원들의 석방을 위한 공식협상문안을 하나 만들어 팩스로 주고 받는 데에만 몇 주일씩 소요되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외교통상부는 당시 동원호 선박을 납치한 해적들 및 소말리아 현지 사정에 대하여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는 등 결코 납치 해적들 및 소말리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고, 소말리아의 과도정부 측에게 동원호 선박의 선원들의 석방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별도로 동원수산 주식회사와 함께 선원들의 석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공식협상문안을 작성하여 소말리아 해적들과 팩스로 주고 받는 데에는 몇 주일씩 소요된 사실이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

판결 2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방송사는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의무를 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자 판결 (2006가합12856)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연구소와 연구소 소속 비상임 운영위원들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심판신청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지난 2006년 3월 26일 20시 「KBS 스페셜」 프로그램 「〈이해관계, 일자리의 위기〉 제1편 : 자본은 왜 파업하는가」 제하의 방송에서 “원고 연구소가 대표적인 외국계 투기 자본인 소버린에게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원고 장○○, 김□□ 등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소속되어 SK 그룹에 대하여 소액주주운동을 하면서 취득한 SK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그들이 운영위원으로 있는 원고 연구소가 SK 그룹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반대 측 당사자인 소버린에게 제공하였다”면서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공적 활동과 사적 이익의 충돌로서 비윤리적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자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해 원고들의 공정성과 도덕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는 그것이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바, 이때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은 요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방송보도가 허위의 사실에 대한 것인지 차례로 살펴본다”고 전제한 후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부분, ‘원고 장○○, 김○○, 김□□가 영리 목적의 원고 연구소에 소속되어 소버린에게 컨설팅 해 주었다’는 부분,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 상담을 해줬다’는 부분, ‘원고들이 SK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SK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소버린에게 팔았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정보도를 방송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6년 4월 2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6서울조정143)을 하였으며 조정 결과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판결문

사 건 : 2006가합12856 정정보도심판신청

원 고 : 1. ○○연구소

대표자 소장 김 △ △

2. 장 ○ ○

3. 김 ○ ○

4. 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 안

담당변호사 이 상 훈

Ⅲ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혁

변론종결 : 2007. 3. 22.

판결선고 : 2007. 4. 12.

주 문 : 1.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스페셜” 프로그램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피고가 위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각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스페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을 자막으로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이를 낭독하도록 하라.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각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연구소(이하 ‘원고 연구소’라고 한다)는 2001. 11. 21.경 설립된 민간연구소로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분석 등 연구활동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은 기업별 지배구조에 대한 여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원고 장○ ○, 김○○, 김□□는 모두 원고 연구소의 비상임 운영 위원들이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실행위원들로서 그들이 주축이 되어 원고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2) 피고는 국내의 대표적인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방송보도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방송보도

(1) 방송 일시와 해당 프로그램

피고는 2006. 3. 2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약 1시간 동안 “K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해관계, 일자리의 위기〉 제1편 : 자본은 왜 파업하는가”라는 제목의 방송보도를 하였다.

(2) 전체적인 구성 내용

이러한 방송보도에서 피고는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양질의 중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규 설비투자를 기피하고 해외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내 생산설비도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을 “자본의 파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것이 국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그러한 자본 파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바탕에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주주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국내 기업에 자리 잡은 주주 중심의 경영관행이 존재하고, 특히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성향의 외국인 자본 내지는 외국인 주주들이 이에 편승하여 해당 기업에 대하여 과도한 주주이익 실현을 적극적으로 요구함과 아울러 국내 지배주주에 대한 경영권을 공격함으로써 인하여 국내 기업의 소중한 경영자원이 그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투자에 사용되지 못하고 취약한 경영권 방어 등에 낭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결론으로 국내 우량 대기업들이 주주 중심의 경영관행을 탈피하여 대규모 일자리

를 창출할 수 있는 장기 모험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재계와 노동계가 경영권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상호 보장해 주는 대타협을 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3) 이 사건 방송보도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하면서 주주 자본주의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서 주도하여 이루어진 소액주주운동을 간단히 소개한 다음, 그 소액주주 운동가들, 특히 원고 장○○, 김○○, 김□□가 중심이 되어 원고 연구소를 설립하였다면서 이들의 이름과 사진을 화면에 보여준 후 원고 연구소가 공익적인 시민단체가 아니라 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기업별 지배구조 분석보고서 등을 유료로 서비스하는데, 원고 연구소가 대표적인 외국계 투기 자본인 소버린에게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원고 장○○, 김□□ 등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소속되어 SK 그룹에 대하여 소액주주운동을 하면서 취득한 SK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그들이 운영위원으로 있는 원고 연구소가 SK 그룹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반대 측 당사자인 위 소버린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공적 활동과 사적 이익의 충돌로서 비윤리적이라는 취지로 매우 비판적으로 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3 방송보도문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방송보도'라고 한다).

① “원고 연구소는 기업별 지배구조 분석보고서 등을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 “원고 연구소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특정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유료로 제공하기도 한다”(이때, 원고 연구소가 발간한 주식회사 에스케이에 대한 Proxy Information 보고서와 Company Report를 자료화면으로 방송하였다)

② (원고 김○○이 피고의 담당 PD의 질문에 “소버

린에게도 정보를 팔았는데, 그게 어떻다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답변한 회견 모습에 이어서) “이 단체는 소버린에도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③ (이어서 2004. 1. 19.자 “SK그룹 소액주주 운동 참여연대 기자간담회”에서 원고 장○○, 김□□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소버린이 SK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SK 경영진을 비판하는 소액주주운동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상기시킨 다음) “똑같은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영리 목적의 단체에 소속되어 분쟁의 한 당사자인 소버린을 컨설팅해 주고, 또 한쪽에서는 시민운동의 명분으로 소버린의 반대 측인 SK 경영진을 공격한 것이다”

④ (이어서 이에 대한 원고 연구소의 소장인 소외 김△△이 반론하는 회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정○○ 과학기술 정책연구원과의 회견에서 위 정○○이 “...원고 연구소가 만약에 소버린에게 정보를 유료로 서비스했고, 그 과정에서 (이때, 원고 장○○을 지칭하는 발언 부분을 삭제 처리함) 소버린 측을 만나서 상담을 해줬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취득된 새로운 정보들을 다른 한편에서는 소버린에게 팔고 있고, 이런 것은 위선적인 활동이다”라고 말한 내용을 방송하였다.

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조정 불성립

원고들과 소외 김△△은 이 사건 방송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6. 4. 20.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언론중재위원회는 2006. 4. 26.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7호증, 을 제1 내지 3, 9, 1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사실로 적시된 아래와 같은 부분들은 모두 진실이 아니고, 그러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방송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은 민간 연구소나 교수 내지 시민운동가로서의 공정성과 도덕성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방송보도를 정정보도문의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 연구소는 그 수익사업의 하나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와 개별 기업들에 대한 지배구조 분석 및 그 평가정보를 CG INFO라는 보고서 형식으로 원고 연구소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바, 소버린도 이러한 서비스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였기 때문에 원고 연구소가 다른 유료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소버린에게도 위와 같이 규격화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 연구소가 발간한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여러 보고서를 제공한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 원고 연구소가 마치 소버린으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의뢰를 받아 소버린에게 위와 같은 규격화된 서비스 이외에 다른 차별화된 보고서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방송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② 또한, 원고 연구소는 위와 같이 소버린으로부터 구체적인 별도의 자문의뢰를 받아 그 자문에 응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자료화면으로 보도

된 2004. 1. 19.자 “SK그룹 소액주주 운동 참여연대 기자회견담회”에서 원고 장○○, 김□□가 발언한 내용은 그 당시 SK 주식회사의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소버린과 SK 측과의 중재에 실패한 참여연대가 위 주주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취지였을 뿐 SK 경영진을 공격하는 취지가 아니었으므로, “똑같은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영리 목적의 단체에 소속되어 분쟁의 한 당사자인 소버린을 컨설팅해 주고, 또 한쪽에서는 시민운동의 명분으로 소버린의 반대 측인 SK 경영진을 공격한 것이다”라는 방송보도도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③ 또한, 원고 장○○은 2004년 3월 SK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소버린 측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원고 장○○은 소버린 측과 SK 경영진 사이의 중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이들 양쪽을 포함하여 SK의 체권단까지 모두 만났고, 그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소버린 측을 만나 SK 경영진과의 원만한 중재를 위해 노력했을 뿐이지 그 과정에서 소버린에게 SK 지배구조 등에 대한 개별적인 자문을 제공한 사실은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서 상담을 해줬다”라는 방송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고, 한편 이 부분 방송보도가 제3자인 소외 정○○과의 회견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지만 이 역시 피고가 이 사건 방송보도를 통해 직접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에 다름 아니며, 비록 원고 장○○을 지칭하는 부분이 삭제되고 방송되었으나, 그 동안 SK와 소버린의 경영권 분쟁의 진행경과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로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부분이 원고 장○○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방송보도에서 원고 장○○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④ 마지막으로, 원고 연구소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한 여러 정보서비스는 해당 기업의 공시자료나 정부 보유 자료 등 공개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원고 연구소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그 분석 내지는 평가 결과와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 연구소 또는 그 운영위원인 원고 장○○, 김○○, 김□□ 등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소속되어 SK에 대하여 소액주주운동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SK에 대하여 어떤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그 반대 측인 소버린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공격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취득된 새로운 정보들을 다른 한편에서는 소버린에게 팔고 있다”라는 방송보도도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고, 이 부분도 제3자인 소외 정○○과의 회견을 보도한 것이지만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피고가 이 사건 방송보도를 통해 직접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는 아래와 같이 모두 진실된 사실에 대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사실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논평의 일종으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룬다.

① 원고 연구소가 그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는 한정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특정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석자료인 Company Report 등을 제공하는 한편, 유료 회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문의를 받아 그에 답변하는 이메일컨설팅이 패키지로 제공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이메일컨설팅이 포함된 정보 서비스를 소버린에게 제공한 것 자체가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고,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고 고객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용어는 관련 업계에서 사용하는 관용어의 일종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일치된 사전적 정의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제공한 정보 서비스와 이메일 컨설팅에 대한 논평으로서 사실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연구소는 소버린에 대하여 유료로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원고 장○○, 김○○, 김□□를 비롯한 원고 연구소의 운영위원 내지 소속원들은 대부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소속되어 SK를 상대로 소액주주운동을 하면서 SK 경영진을 공격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부분 방송보도 역시 진실된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자료화면으로 보도된 기자간담회(이것도 원고들이 SK에 대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당일 기자간담회에서 SK 경영진을 공격한 사실을 보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은 명백함)에서 원고들은 SK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불참의사와 중립 선언을 밝히는 한편, SK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므로, 이 점을 지적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 상담을 해줬다”라는 방송보도는 무엇보다 원고 장○○을 지칭하는 부분이 익명처리된 정도를 넘어 아예 삭제되어 방송되었으므로 원고 장○○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떤 대가를 받고 구체적인 자문에 응한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컨설팅이라는 용어 대신 단순히 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 역시 진실된 보도이다.

④ 또한, 원고 연구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참여연대에 소속되어 SK에 대하여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그 구성원이 중복되고, 참여연대 소속원들이 중심이 되어 원고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원고 연구소가 발간한 여러 보고서 등이 위 참여연대의 시민운동에 활용되는 한편, SK에 대한 비밀정보(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시민운동

을 하는 과정에서 SK에 대한 비밀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소비린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가 없음)가 아니더라도 원고들은 SK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분석, 가공한 후 그 결과를 보고서 등의 형태로 소비린에게 유료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 부분 방송보도도 진실된 사실에 대한 보도이다.

나. 판단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는 그것이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바, 이때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은 요하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방송보도가 허위의 사실에 대한 것인지 차례로 살펴본다.

① “원고 연구소가 소비린에도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부분

㉠ 이 부분에 관하여는 무엇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사용된 “맞춤형 컨설팅”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방송보도가 허위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위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단어 내지 어휘가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어떠한 언론보도에서 사용된 단어 내지 어휘는 그 자체의 뜻만으로 그 의미나 취지를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적인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방송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컨설팅이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보유한 자가 다른 사람

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의뢰인에게 그 의뢰받은 사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수식으로 “맞춤형”이 덧붙여졌다면 이는 의뢰받은 내용이나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지식이나 정보의 내용이 의뢰인이 처한 개별 상황이나 여건 내지는 구체적이고 특정된 사안에 더욱 적합하도록 통상의 컨설팅과 비교하여 그 제공되는 지식이나 정보의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어서 다른 의뢰인에게 제공되는 그것과 차별화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② 구체적으로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어휘가 사용되기 이전에 피고는 “원고 연구소는 기업별 지배구조 분석보고서 등을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다음에, 이어서 “원고 연구소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특정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유료로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지적인 후 소비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이 사건 방송보도가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사용된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어휘는 전자, 즉 원고 연구소가 일반적으로 고객들에게 기업별 지배구조 분석보고서 등을 유료로 제공하는 정도의 서비스와는 달리, 원고 연구소가 특정한 고객, 즉 소비린으로부터 특정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별도의 자문을 받아 다른 일반적인 고객들과 차별하여 특정 고객(소비린)에게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③ 이 사건 방송보도가 전체적으로 원고 연구소 내지는 그 운영위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소속되어 SK에 대하여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시민운동을 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SK 경영진의 반대 당사자인 소비린에게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비윤리적인 자문행위를 하였다고 비판하는 취지이고, 그러한 취지에서 피

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 부분에 이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소외 정○○의 회견내용, 즉 “원고 연구소가 SK에 대한 시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새로운 정보들을 소비자에게 팔았다”라는 보도로 이 사건 방송보도를 마무리하였으며, ④ 이에 따라 이 사건 방송보도를 접하는 일반적인 시청자로서도 이 사건 방송보도를 통하여 원고 연구소 내지 그 운영위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대외적으로는 국내 대표적인 공익적인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SK 경영진을 비판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영리단체인 원고 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기적인 외국 자본인 소비린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의뢰를 받아 그에게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유료로 제공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사건 단어 내지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그것이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사용된 전·후의 연결상태와 그 맥락, 이 사건 방송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와 흐름 그리고 그것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과 의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어휘는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원고 연구소가 기업별 지배구조 분석 보고서 등을 고객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다른 일반적인 고객들과는 달리 특정 고객인 소비린으로부터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자문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행위를 하였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취지로 보이는 을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 위와 같은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어휘의 구체적인 의미를 전제로 하여, 과연 이 사건 방송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 연구소가 소비린에게 위와 같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본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9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21,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4, 35호증, 을 제4,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연구소의 정관(갑 제17호증)에는 원고 연구소가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정책, 실무관행, 정보의 조사, 연구, 평가 및 관련 자료의 발간 및 발표 등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되, 이러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출판, 컨설팅 등의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 실제로 원고 연구소는 아래에서 상세히 보는 바와 같은 Info Service와 함께 그와 별도로 상담(Consulting)업무를 제공하는 사실, ㉣ 그 중 위 Info Service는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여 원고 연구소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에게 Company Report(국내 53개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Issue Report(국내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쟁점에 대해 시의적절한 분석을 제공하는 보고서로서 개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요 쟁점과 성향도 포함됨), Proxy Information(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에 대하여 의결권행사방향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주총의안 분석보고서), 한국 기업지배구조 핸드북(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령체계, 주주의 권리, 의결권행사방법과 그 절차 등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참고서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임)을 제공하는바, 이러한 서비스는 다시 위 네 가지를 모두 제공함과 아울러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받아 그로부터 36시간 내에 원고 연구소가 답변을 하는 “이메일 컨설팅”(연간 10시간이 기본)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회비: 연간 1,200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그밖에 매주 1, 2회(연간 60건 이상) 정도 발간되는 Issue Report만을 즉시 이메일로 송부해 주는 서비스 상품(회비: 연간 700만 원)과 위 세 가지 유형의 보고서를 건당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상품 등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상품이 마련

되어 있는 사실, ㉔ 그런데 앞에서 본 Info Service 상품으로 그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위 세 가지 유형의 보고서들은 모두 유료 회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연구소가 직접 대상이나 주제를 선정하여 발간한 후 이를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송부해 주는 사실, ㉕ 소버린 역시 이러한 원고 연구소의 Info Service에 연간 1,200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한 유료 회원으로서 이러한 서비스 상품을 통하여 원고 연구소로부터 위 원고가 발간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Company Report, Issue Report, Proxy Information 등을 제공받은 사실, ㉖ 그리고 원고 연구소는 2004년 3월 SK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2004. 2. 25.경 소버린의 한국 대표인 James N. Fitter로부터, 그 무렵 소버린이 SK 사의 이사로 추천한 인물들에 대해 그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 발간한 원고 연구소의 Issue Report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들이 SK의 사외이사로 추천한 인물들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알리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그러나 원고 연구소는 2004. 3. 3. SK의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을 분석하여 의결권행사방향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발간한 Proxy Information에서 소버린 측이 사외이사로 추천한 3명 중 2명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종전 그대로 유지하였다), ㉗ 또한 그 후 원고 연구소는 2005. 3. 4. “최태원 SK 회장의 이사직 유지의 의미”라는 제목의 Issue Report를 발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05. 3. 4. 경 소버린의 한국 내 대리인인 소외 김○○으로부터 위 보고서 중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어 그 정정을 구하고 2005년 3월 SK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원고 연구소가 소외 최태원이 SK의 이사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은 후, 이에 대하여 2005. 3. 7.경 위 김○○에게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 관련한

보고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200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최태원이 이사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사실, ㉘ 한편, 원고 연구소는 이러한 Info Service와 별도로 특정 고객으로부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자문 내지는 용역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는 상담(Consulting)업무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위 Info Service의 연간 회비와는 달리 투입인원과 시간을 기초로 산정하는 보수를 별도로 지급받는 사실, ㉙ 이 사건 방송보도를 위한 취재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연구소의 소장인 김△△과의 회견에서 위 김△△ 역시 “원고 연구소가 위 Info Service와는 별도로 컨설팅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의뢰인으로부터 특정 회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한다”, “위 Info Service는 규격화되고 특별히 맞춤형이 아니므로 기업고객들도 허용하지만 컨설팅 부분에서는 기업고객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소버린에게 유료로 Info Service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해 “외국자본이나 국내자본이나 Info Service는 다 열려있다”라는 취지로 반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연구소는 자신들이 그 수익사업의 하나로 시행하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Info Service와 관련하여, 그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소버린에게 그와 같은 서비스 상품에 같은 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한 다른 유료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주제나 대상을 선정하여 발간한 기업지배구조, 특히 SK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제공하였고, 소버린이 가입한 위 Info Service에는 위 보고서 제공 이외에도 연간 10시간의 이메일 컨설팅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맞춤형 컨설팅”이란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으로부터 일반적인 유료 회원들과는 달리 별도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문 내지 용역수행을 의뢰받아 별도의 대가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의미인바(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연구소가 Info Service와 별도로 제공하는 상담업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정도의 자문업무 내지는 용역을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으로부터 의뢰받아 유료로 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Info Service에 관하여 세 가지 종류의 상품이 마련되어 있어 고객이 어떠한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상품 분류는 위와 같은 여러 종류의 보고서를 모두 제공받느냐, 아니면 그 일부 또는 보고서 1건씩을 별도로 구매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정도의 상품분류에서 기인한 차이만으로는 원고 연구소가 고객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위와 같이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 측과 2회에 걸쳐 이메일을 교환한 사실이 있으나 거기에는 소버린이 원고 연구소에 대하여 별도의 자문을 의뢰하거나 그에 대하여 원고 연구소가 별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 연구소가 그 무렵 발간한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홍보하는 취지가 전부이므로, 이러한 정도의 이메일 교환을 두고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Info Service와 함께 제공되는 이메일 컨설팅이라는 서비스가 소버린에게 제공되었으므로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 대하여 1:1 맞춤형 컨설팅을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Info Service와 이메일 컨설팅 서비스가 소버린에게 제공된 이상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 내지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버린이 원고 연구소의 Info

Service 중 기본형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소버린이 원고 연구소에 대하여 연간 10시간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원고 연구소가 답변하는 이메일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인정한 것처럼 분명한 사실이나, 이러한 이메일 컨설팅은 이미 원고 연구소가 발간하여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한 여러 가지 보고서들과 관련하여 그에 대하여 다시 유료 회원들이 원고 연구소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해 원고 연구소가 36시간 이내에 답변을 완료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서비스인 Info Service에 부수한 보조적인 사후 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이메일 컨설팅 서비스를 소버린이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자문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앞에서 자세히 살펴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어휘가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사용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단순한 평가적 요소라고는 볼 수 없으며, 설령 이 부분 방송보도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다소 평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 대하여 그로부터 구체적인 의뢰를 받아 SK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문행위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㉞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방송보도는 허위의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㉟ “똑같은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영리 목적의 단체에 소속되어 분쟁의 한 당사자인 소버린을 컨설팅해주고, 또 한쪽에서는 시민운동의 명분으로 소버린의 반대 측인 SK 경영진을 공격한 것이다”는 부분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부분 방송보도의 전후 맥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서 사용된 “컨설팅”이라는 어휘는 그 이전에 사용된 “맞춤형 컨설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표현임이 분명하므로, 앞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으로부터 별도로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그에 따른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방송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이상, “원고 장○○, 김○○, 김□□가 영리단체인 원고 연구소에 소속되어 소버린을 컨설팅해 주었다”라는 내용의 이 부분 방송보도 역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부분 방송 보도 중 “원고들이 시민운동의 명분으로 SK 경영진을 공격하였다”라는 부분도 허위의 사실에 대한 보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장○○, 김○○, 김□□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소속되어 소액주주운동의 일환으로 SK 경영진에 대하여 퇴임 내지는 해임 등을 요구하거나 그를 위한 정관계정을 요구하는 등 SK 경영진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부분 방송보도의 자료화면으로 사용된 원고 장○○, 김□□의 기자회견 당시 이들이 SK의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중립을 선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방송보도가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서 상담을 해줬다”는 부분

우선 원고 장○○이 이 부분 방송보도에서 피해자로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피고가 소외 정○○과의 회견을 방송하면서 원고 장○○을 지칭하는 위 정○○의 발언부분을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장○○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주요 위원으로서 SK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고, 특히 SK의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SK 측과 소버린 측과의 중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위 당사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를 대표하여 직접 소버린 측을 방문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언론에서 비교적 자세히 보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장○○이 해외에서 소버린을 접촉하는 데 소요된 경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등 원고 장○○과 소버린과의 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이 사건 방송보도를 접한 일반적인 시청자가 통상의 주의만 기울이더라도 이 부분 방송보도에서 소버린을 만나 상담을 한 것으로 지목된 주체가 원고 장○○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추인되므로, 원고 장○○은 이 부분 방송보도에서 피해자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실제로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서 “상담”을 해 주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여기에서도 위 “상담”이라는 표현이 과연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가 문제인바, 이 부분 방송보도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방송보도의 마지막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방송보도는 계속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연구소 내지는 원고 장○○, 김○○, 김□□가 공익적인 시민운동을 명분삼아 SK 경영진을 공격하면서도 그 이면에서 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소버린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에게 SK 지배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였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 “상담”을 해주었다라는 표현 역시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에 응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여기에서 사용된 “상담”은 그 이전에 사용된 “컨설팅”

내지는 “맞춤형 컨설팅”과 구분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서로 의논한다는 취지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방송보도의 전체적인 흐름과 취지,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 그로부터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장○○은 2004년 3월 SK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대립하고 있던 SK 경영진과 소버린의 원만한 중재를 위하여 그 의견이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하여 소버린 측을 면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부분 방송보도 역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한편, 이 부분 방송보도가 비록 제3자인 정○○이 발언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방송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나 거기에서 이 부분 회견내용이 갖는 맥락과 의미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정○○과의 회견을 보도한 것은 피고가 이를 통하여 자신이 직접 그러한 사실적 주장을 보도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④ “(시민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취득된 새로운 정보들을 다른 한편에서는 소버린에게 팔았다”

살피건대, 원고 연구소의 운영위원으로 있는 원고 장○○, 김○○, 김□□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소속되어 SK에 대하여 소액주주운동을 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들이 그러한 소액주주운동을 함과 아울러 영리 단체인 원고 연구소의 운영위원으로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Info Service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위와 같은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소비

린에게 유료로 팔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방송보도는 피고의 추측에 기초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방송보도 중에서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부분, “원고 장○○, 김○○, 김□□가 영리 목적의 원고 연구소에 소속되어 소버린에게 컨설팅해 주었다”는 부분, “원고 장○○이 소버린측을 만나 상담을 해줬다”는 부분, “원고들이 SK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SK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소버린에게 팔았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정보도를 방송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 상담을 해줬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에 아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청구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를 명하지 않기로 한다).

(3)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내용 및 보도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보도가 이루어진 시간대 및 해당 프로그램, 그 표현방법과 내용,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스페셜” 프로그램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

3. 간접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판결을 송달받고도 위에서 정한 기간 안에 위와 같은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기간 안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각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민
판사 이창경
판사 김은정

〈별지 1〉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006년 3월 26일 〈이해관계, 일차리의 위기〉 제1편 “자본은 왜 파업하는가”의 제목으로, 장○○, 김○○, 김□□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연구소가 외국자본인 소버린에게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시민단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새로운 정보를 다시 소버린에게 팔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연구소는 기업별 지배구조 분석보고서 등의 정보를 다른 고객과 마찬가지로 소버린에게도 유료로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이상으로 소버린에 대하여 특별히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 사실은 없으며, 또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새로운 정보를 소버린에게 판매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

판결 3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자료 또는 정황이 있고, 적시된 사실이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9.자 판결 (2006가합66611, 2006가합73756병합)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07년 5월 9일 장○○과 이○○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

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택상의 3녀인 장○○, 이승만의 양자인 이○○인 원고들은 피고 방송사가 방영한 드라마 「서울1945」에서 장택상과 이승만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어느 정도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드라마의 작가나 제작자가 소개로 삼은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의 근거자료 또는 정황이 있고, 적시된 사실이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그러한 근거자료 또는 정황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추측, 풍자 내지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적시된 사실이 중대한 허위로서 고인에 대한 명예, 추모의 정을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들이 여운형 암살 배후에 이승만, 장택상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마치 이승만, 장택상이 박창주를 통하여 여운형을 암살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명확하게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구를 기본으로 하는 드라마의 성격상 예술적 표현으로서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고, 원고 이○○이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이 친일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고 미군정의 후원을 받은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만이 친일경력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부터 일부 정치자금을 제공받았고 그 과정 등에서 미군정으로부터 다소의 후원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근거자료와 정황들이 존재하는 이상, 다소 과장되고 추측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거자료와 정황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일 뿐 왜곡이나 억측 또는 중대한 허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66611 손해배상(기)
2006가합73756(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 : 1. 장 ○ ○

2. 이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배 호 성

Ⅲ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혁, 임 상 혁

변론종결 : 2007. 4. 11.

판결선고 : 2007. 5. 9.

주 문 :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100,00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쟁 점

장택상의 3녀인 원고 장○○, 이승만의 양자인 원고 이○○는 피고가 제작, 방송한 드라마인 ‘서울 1945’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에서 장택상, 이승만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㉞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 장택상이 친일경찰 출신인 극중 가상인물 박창주를 통하여 여운형을 암살하도록 배후에서 지시한 것처럼 묘사됨으로써 허위 사실이 적시되었는지 여부(쟁점 ㉞)

㉟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이 친일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고 미군정

의 후원을 받은 것처럼 묘사된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망인의 인격권을 훼손하였는지 여부(쟁점 ㉔)

㉔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이 가상인물인 친일파 문정관의 딸 문석경을 수양딸로 삼는 것으로 묘사된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망인의 인격권을 훼손하였는지 여부(쟁점 ㉕)

2. 일반론

가.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술의 자유는 창작소재, 창작형태 및 창작과정 등에 대한 임의로운 결정권을 포함한 예술창작활동의 자유와 창작한 예술작품을 일반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예술표현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것인데, 이러한 예술의 자유도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와 명예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나 예술작품이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할 경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재가 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그 예술작품의 창작자를 상대로 그로 인한 침해의 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그 인물이 사망하였다면, 그 유족이 망인의 인격권 침해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 명예감정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동일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예술작품이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예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모순, 충돌하는 두 법익을 비교,衡量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객관적인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진실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사실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 일반 대중의 욕구는 증대되어 가는 반면, 소재가 된 망인에 대한 유족의 추모감정은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점, 역사적이고 공격적인 인물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평가와 비판은 균형있는 역사인식을 도출하기 위한 여론형성을 위해서도 더욱 장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예술활동의 자유는 역사적 인물인 망인의 인격권의 보호보다 우선하여 보호될 필요가 있다.

나. 일반적으로 방송사에서 제작, 방송하는 드라마도 작가와 프로듀서를 비롯한 제작진들의 상상력에 의하여 가상적인 인물들이 전개해 나가는 이야기를 영상화한 창작물로서 헌법상 권리인 예술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드라마에서도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의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보태어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문화예술의 한 기법인 소위 팩션(faction : 사실을 뜻하는 fact와 허구를 뜻하는 fiction의 합성어) 기법이 드라마 등 예술의 각 분야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기법이 사용된 드라마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해 그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 즉 ① 드라마의 근본적인 제작 목적이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정면으로 재조명하는 것인지 여부, ② 드라마에 등장하는 실존인물이 중심인물인지 배경인물인지 여부, ③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각 차지하는 비중, ④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조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드라마에 허구적 요소가 가미된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허구적 요소보다 사실적 요소가 강조된 소위 논픽션(nonfiction) 역사드라마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대로 사실적 요소보다 허구적인 요소가 더 많은 드라마의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강하게 인식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므로 드라마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판단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비록 드라마에서 허위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약간의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불명확하고 모호한 묘사만으로 실존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 또한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어느 정도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드라마의 작가나 제작자가 소재로 삼은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의 근거자료 또는 정확이 있고, 적시된 사실이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그러한 근거자료 또는 정확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추측, 풍자 내지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적시된 사실이 중대한 허위로서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같은 드라마에서 실존인물의 배역이 직접 하는 대사나 행동이 아니라 그 실존인물과 대립적인 입장에 있는 다른 인물의 대사를 통하여 그 실존인물에 대한 사실이 묘사될 경우, 이는 그 실존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당시 그와 대립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으로 본 그 실존인물에 대한 추측 또는 평가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라. 나아가 드라마에서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되어 이야기가 전개됨에 있어서 그들을 통해 묘사

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허구로 승화되어 일반시청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른다면, 비록 그들 사이의 이야기가 실제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아래에서는 먼저 이 사건 드라마의 성격을 살펴보고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및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드라마의 성격

이 사건 드라마는 일제시대 및 해방전후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어린 시절 같은 마을에서 성장하였지만 출신계층과 이념적 성향을 달리하는 허구의 가상인물들, 즉 김해경(한은정 분), 최운혁(류수영 분), 이동우(김호진 분), 문석경(소유진 분), 박창주(박상면 분), 문동기(홍요섭 분) 등을 중심인물로 설정하여 그들 간의 사랑과 우정, 이념적 대립과 가족애 등을 그린 드라마이다. 이 사건 드라마에 등장하는 실존인물로는 이승만, 장택상, 여운형, 김구, 김일성, 박헌영 등이 있는데, 총 71회분에 이르는 이 사건 드라마의 전체 방영분 중 이승만, 장택상은 제29회분에 이르러서야 처음 등장하고, 위 실존인물들이 등장하는 장면의 횟수도 위 중심인물들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며, 이들은 위 중심인물들간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배경인물로 등장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7 내지 22호 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하 이 사건 드라마의 대사나 장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 위 인정근거를 원용하되, 그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

나. 쟁점 ㉔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드라마에서 여운형 암살사건의 배후에 이승만, 장택상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별지1의 기재와 같고, 피고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별지2의 기재와 같다.

(2) 판단

별지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드라마에서 친일경찰출신인 박창주가 해방이후 수도경찰청장이었던 장택상을 찾아가 경찰로 다시 채용되고 조선정판사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승만과 접촉한 이후 그와 가깝게 지내다가, 이승만이 여운형을 비롯한 좌익세력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는 것을 듣고는 극우단체의 인물을 사주하여 여운형을 암살한 다음, 암살의 배후를 추궁하는 여운형의 측근 최운혁에게 “빨갱이 놈들에게서, 소련 놈들에게서 남조선을 지켜내는 분들이다. 나를 경찰청 보안과장 자리까지 끌어올리신 분들이고, 내게 조직을 만들 자금과 거사 자금을 내주신 분들이다. 네놈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분들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최운혁이 인민일보에 “미군정과 이승만의 분단 정책이 결국 남북통합을 주장하며 좌우합작을 성사하고자 하셨던 몽양 여운형 선생의 죽음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는 것으로 묘사되며, 경찰의 방조 아래 여운형이 암살되었다는 취지의 나레이션도 나온다. 위 장면들만 본다면, 이 사건 드라마의 시청자들이 여운형의 암살을 사주한 박창주의 배후에 이승만 또는 장택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별지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드라마에서 장택상은 여운형 암살사건 이전에 수 차례에 걸쳐 박창주에게 여운형의 처리에 관하여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하고, 이승만과 한민당을 위해서는 여운형이 죽어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박창주를 보고는 상당히 놀란 표정으로 그를 질책하는 모습도 보이며(원

고들은 이 사건 드라마에서 장택상이 박창주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싫지 않은 기색을 보이는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묘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운형 암살사건 이후 그 수습과정에서도 이승만과 장택상은 그의 암살과 전혀 무관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이 사건 드라마의 전체적인 전개과정에다가 다음의 사정, 즉

① 극중 박창주가 여운형의 암살 배후를 묻는 최운혁에게 위와 같은 대답을 한 것은, 평소 독단적이고 저돌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박창주가 자기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 여운형 암살을 지시하고도 자신과 대립적인 지위에 있었던 최운혁이 지속적인 추궁을 해오자 마치 자신의 배후에 거대한 세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위세를 과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어 위와 같이 대답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점, ② 경찰의 방조 아래 여운형이 암살되었다는 취지의 나레이션도, 여운형 암살사건 발생 직전에 혜화동 사거리 파출소 부근에서 트럭 한 대가 갑자기 달려와 여운형이 탄 리무진의 통행을 가로막고 바로 이어 암살범 한지근이 나타나 여운형을 저격한 다음 도주하는 과정에서 그를 뒤쫓던 경호원 박성복이 오히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최태화에 의해 공범으로 오인되어 체포됨으로써 결국 현장에서 암살범을 체포하지 못하게 되었던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경찰이 여운형의 암살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온 사정(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최운혁이 인민일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실는 것으로 묘사된 부분 또한 당시 여운형을 지지하던 좌익진영이 여운형 암살에 관한 입장과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힘든 점, ④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이나 장택상이 직접적으로 여운형의 암살을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지도 않는 점, ⑤ 이 사건 드라마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가상인물들에 의한 허구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마치 이승만, 장택상이 박창주를 통하여 여운형을 암살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이 명확하게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구를 기본으로 하는 이 사건 드라마의 성격상 예술적 표현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 ㉔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고 이○○가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이 친일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고 미군정의 후원을 받은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 ① 조선공산당원들이 위조지폐를 제조하고 있던 조선정판사 안에서 조선공산당원인 이관술이 “허어, 참. 한민당이나 이승만은 친일 자본가놈들 돈으로 흥청망청한다는데. 우리 당은, 해방일보 찍을 종이 값도 부족하니...”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제34회분), ② 조선정판사 사건 이후 이동우가 조선공산당을 비난하자 최운혁이 조선공산당의 처지를 옹호하면서 “한민당이나 이승만 박사 쪽은 친일파들이 갖다 바치는 돈이 넘쳐나겠지. 친일파 돈으로 조직을 키우고, 신문을 찍고, 우익단체를 후원하고! 조선공산당은 어떠냐? 당을 운영할 자금도 없고, 신문 찍을 종이조차 허덕인다” 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제35회분), ③ 일제시대 때 친일자본가인 것처럼 묘사된 가상인물 이인평의 비서가 이인평에게 “군정청 관재처에 전주 고무신 공장 불하 이자와 이차 불하 대금을 냈습니다. 돈암장에도 일금 오만원을 최강욱 비서관님에게 전했구요” 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제39회분)

(나) ① 해방 후 이승만의 귀국에 대해 박헌영을 비

롯한 조선공산당원들이 대화를 나누던 중 이현상이 “이승만이 누군가! 과거의 유물 이씨 조선의 친족이네. 시대의 유물을 데려와 대체 어찌자는 건가, 미군정은?”이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제29회분), ② 최운혁이 강의를 하던 당시 경성제대 강의실내에서 한 학생이 “이승만 박사께서 귀국하자마자, 미군정이 인민위원회를 해산하란 지시를 내렸습니다”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제30회분), ③ 최운혁, 이동우, 문동기 등이 만나 당시 민족지도자들인 이승만, 여운형, 박헌영의 회동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던 중 이동우가 “이 박사님은 미군정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제30회분), ④ 최운혁, 이동우, 오철형이 김구의 귀국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최운혁이 “(이승만 박사는) 누구보다, 미군정과 가까운 분이다. 이박사님이 하지 사령관에게 간곡히 권했다면, 백범 주석께서, 임정 요인들과 더 일찍 귀국하셨을 수도 있을 게다. 설사 일찍 환국하시는 게 안 됐다 해도, 그렇게 초라하게 귀국하시지 않도록, 환영식은 준비해 주실 수 있었다”라는 대사를 하고, 뒤이어 오철형이 “이승만 박사는 음흉한 반동이야!”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제31회분)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방 이후 이승만의 주도 아래 조직된 보국기금실행위원회가 1945. 12. 12. 대한경제보국회라는 이름으로 공식 발족된 이후, 대한경제보국회는 1946. 4경 당시 미군정 사령관인 하지의 정치고문이자 이승만의 개인 고문이었던 굿펠로우 대령을 통하여 미군정의 승인을 얻어 조선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1,000만 원을 이승만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특히 하지는 이승만과의 연락을 담당하던 스택 중위에게 위와 같이 모금된 자금은 이승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을 비롯하여 이승만 등 우익진영의 정치자금조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사실, 그런데, 당시 대한경제보국회의 간부진에는 민규식, 박기효 등 친일경력이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이승만은 해방 이후 하지의 끈질긴 요청 끝에 맥아더 사령관의 전용기를 통해 조선으로 귀국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그 외에 안철현, 서중석 등 여러 역사학자들의 논문에서도 이승만이 해방 이후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미군정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서술들이 다수 존재한다(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그렇다면, 이처럼 이승만이 친일경력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부터 일부 정치자금을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미군정으로부터 다소의 후원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근거자료와 정황들이 존재하는 이상, 앞서 본 위 장면들에서 극중 다른 인물들(특히 최운혁, 이현상, 오철형은 이승만과 대립되는 입장에 있었던 인물들이다)의 대사를 통해 위와 같이 다소 과장되고 추측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근거자료와 정황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일 뿐 왜곡이나 억측 또는 중대한 허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쟁점 ㉔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이 극중 가상인물인 친일파 문정관의 딸 문석경을 수양딸로 삼는 부분이 나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드라마에서 문석경은 극중 가상인물인 친일파 문정관의 딸로 태어나 유복하게 유년시절을 보낸 후 아버지의 사망 등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완전히 몰락할 위기에 처하였다가 이승만과의 만남과 교류를 계기로 다시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야망과 질투의 화신으로 그려지는 가상인물이고, 이승만은 적어도 문석경에게 있어서만큼은 문석경의 이러한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적인 존재로서 배경인물의

기능만 하고 있을 뿐 역사적 인물로서 크게 부각되어 있지는 않다. 이 같은 이 사건 드라마의 전체적인 전개과정 및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의 결합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이승만과 문석경 사이의 이야기는 상당한 정도로 허구적인 이야기로 승화됨으로써 일반시청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비록 그러한 허구적인 이야기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가사 그것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은 문석경으로부터 친일파인 문석경의 아버지가 사망한 사정 등을 전해 듣고는 “세상에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지. 자네 아버님이 친일을 한 것은 결코 잘못이 말할 순 없다만, 그래도 함께 보듬고 갔어야 하는 것을... 소련과 공산당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라고 말하는 대사(제35회분) 등을 통해 친일파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동시에 밝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 이승만이 문석경의 처지를 가엽게 여겨 그를 수양딸로 삼게 되는 극적인 설정으로 인하여 원고 이○○의 주장처럼 이승만이 주책없고 흥물스럽게 그려지거나 친일파와 손잡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것처럼 묘사됨으로써 이승만의 인격권이나 그 유족의 추모의 정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노태홍
판사 이종훈

〈별지 1~2〉 방송내용 생략 - 편집자 주



독일 판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광고의 범주 내에서 풍자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광고자의 이익의 고려가 광고에 초상 사용을 원치 않는 전직 연방재정장관의 이익을 앞선다

해당조문 :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제23조; 민법 제812조 제1항 제1문, 제823조 제1항.

연방대법원 2006년 10월 26일자 판결 - I ZR 182/04

(함부르크 고등법원)

판결요지

1. 타인의 초상을 상업적 용도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사용료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때 초상권자가 자신의 사진을 무료로 전파하거나 공중에게 재현되는 것을 허가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2. 시사적 영역에 영향력이 있는 유명 인물은 본인의 초상이 제3자에 의해 광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규칙적으로 항상 허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생생한 주요사건을 풍자적으로 비판하는 광고에 타인의 초상을 사용하는 행위를 당사자가 수인해야 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는 이익형량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9년 3월 11일 연방재정장관으로서의 직위와 사민당(SPD) 당수직을 사퇴한 오스카 라퐁텐(Oskar Lafontaine)이다. 피고는 차량임대기업 S의 회사인 자동차리스전문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허가도 없이 1999년 3월 21일에 신문 “벨트 암 존탁”(Welt am Sonntag)에 반 페이지 분량, 3월 22일에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Frankfurter Allgemeinen Zeitung)에 2페이지 분량으로 원고의 인물사진을 촬영하여 광고에 게재하였다.

인물사진은 그 당시 원고를 포함해서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16명의 각료를 대상으로 촬영되었다. 이 사진은 희미한 망사로 가려져 있었지만 누구든지 대상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 인물사진 밑에는 “S가 시험운행을 위해 각료들에게 자동차를 임대해주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원고는 피고가 허구적 내용으로 사진을 사용한 데 대해 특허권 사용료로 최고 25만 마르크(13만 유로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지명도를 이용해서 초상을 광고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상업화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소송제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에서는 피고가 최고 10만 유로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의 소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함부르크 고등법원 판결은 AfP 2004 S. 566).

재판부가 허용한 상고심에서 피고는 소가 기각된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판결이유

피고의 상고는 성공하였다. 피고는 문제가 된 소송에 대한 판결의 무효화와 원고가 제기한 소의 기각결정을 이끌어냈다. 원고에게는 민법 제812조 제1항 제1문이나 제823조 제1항, 예술저작권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른 허구적 내용으로 초상을 사용한 것에 대한 특허권 사용료 지급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총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원고의 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소가 제기된 광고에서 원고의 인물사진을 전파하는 경우 이것이 시사적 영역의 사진에 해당할 때는 본인의 허가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개별적 경우의 전파행위에 의해 원고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

1. 피고는 상고에서 특히 소송이 제기된 사진공표가 예술저작권법 제22조의 보호목적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내세웠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상고가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그림은 소가 제기된 광고에

서 오히려 원고의 인격화에 기여하고 문패에 의해 대체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초상사진에 대한 공개로 원고의 초상권에 대한 보호범위를 침해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소가 제기된 문제의 초상사진 공개는 널리 알려진 개인의 사진이 동의 없이 광고에 실린 다른 경우와는 구분되고, 그것은 노력에 의해 발생하여 성과물로 전송된 초상에 대한 호감이나 이미지 가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소송의 대상이 된 문제의 광고는 오히려 원고를 중단된 자동차 시험운행기간 중 좌절한 원고의 동료를 표현함으로써 광고의 효과를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한 효과는 원고를 우롱하면서 원고를 희생시키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초상사진의 전파와 공공에게 공개하는 경우 반드시 초상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초상권에 대한 침해가 없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또한 원고는 연방재정장관에게 적용되는 다른 업무상 행위의 금지 또는 자신의 초상에 대한 상업적 가치에 대한 정치적 신뢰 때문에 제약받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청구가 처음부터 고려될 수 없다는 피고의 상고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원고의 초상의 전파나 공적용도로 게재한 것에 대한 허가를 무보수로 보장하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초상의 게재에 대해 부당이득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타인의 초상을 권한 없는 자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일반적 인격권에 해당하는 타인의 초상권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채무 외에 전제된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통상의 특허권사용료 지불의무의 침해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한다(연방대법원 1999년 12월 1일자 판결 - I ZR 226/97, GRUR 2000 S. 715 (716) = WRP 2000 S. 754 - Der blaue Engel; 또한 연방헌법재판소 2006년 8월 22일

자 결정 - 1 BvR 1168/04, WRP 2006 S. 1361 Tz 28 u. 31 참조).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은 타인의 초상의 이용이다. 이것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818조 제2항에 따른 가치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누구든지 제3자의 초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정당하지 않게 이용한 자는 경제적 가치이용에 대한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와 함께 침해자에게는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법상의 귀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초상의 사용에 상응하는 가치보상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이것은 초상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이미 적절한 특허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했는지 여부와는 관련 없이 적용된다. 지급청구권은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사자의 배타적인 처분권능에 가해진 법적 침해에 대한 조정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MünchKomm. BGB/Rixecker, 4. Aufl., § 12 Anh. Rdn. 226; Schricker/Götting. Urheberrecht, 3. Aufl., § 60 UrhG). 적절한 특허사용료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조정이 기본적으로 초상권자가 돈벌이를 비롯해 자신의 초상에 대한 권리의 허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추측할 수 있는 한, 추론해낼 수 있는 한 그것에 얽매이지는 않는다(BGHZ 26 S. 349 (353) - Herrenreiter).

3. 소송이 제기된 문제의 원고 초상을 광고를 통해 전파한 행위는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와는 별개로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된다(이에 대해서는 4. 참조). 이에 따르면 시사적 영역으로부터 발생한 사진 초상은 초상권자의 허가 없이 전파될 수 있다.

a) 본 사건에서 원고의 인물사진은 어떠한 경우든지 연방재정장관과 사민당 당수직을 사퇴한 것과 직접적·시간적·내용적으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시사적 영역으로부터의 초상에 해당한다(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여기에서 원고의 인물사진이 광

고라는 형식을 빌어서 전파되었다 하더라도 변화된 상황은 없다.

b) 특히 보호가치 있는 공공의 정보이익이 없는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 타인의 초상권을 광고에 사용함으로써 배타적인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경우 이러한 광고에는 보호가치 있는 정보이익이 결여되어 있다 (BGHZ 20 S. 345 (350 f.) - Paul Dahlke: BGH, Urt. v. 14.4. 1992 - VIZR 285/91, GRUR 1992 S. 557 = NJW 1992 S. 2084 - Talkmaster - Foto: Urt. v. 1. 10. 1996 - VI ZR 206/95, GRUR 1997 S. 125 (126) = NJW 1997 S. 1152 - Bob-Dylan-CD: BGHZ 143 S. 214 (229) - Marlene Dietrich). 이는 특히 저명한 인물초상의 광고가치를 이용해서 성과물로 도출해내기 위하여 시사적 영역으로부터 타인의 초상을 이용할 때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범위는 광고가 광고목적 외에 공중에 대해 정보내용을 제시할 경우에도 폭넓게 열려있다(BGH, GRUR 1997 S. 125 (126) - Bob-Dylan-CD: BGHZ 151 S. 26 (30); BVerfG, Beschl. v. 25.8. 2000 - 1 BvR 2707/95, NJW 2001 S. 594). 이것은 정보의 공개가 일반 공중에게 기여한다는 것은 상업적 관련성이 있어도 이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BGH, Urt. v. 5. 10. 2006 - I ZR 277/03 - kinski-klaus.de, II, 4 c에서 참조). 또한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는 가치 평가적·의사 형성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상업적 목적의 의사표현과 순수한 경제 광고와 함께 표현을 완성하게 하거나 표현을 보완하는 초상의 공표까지 포함된다(BVerfGE 71 S. 162 (175); 102 S. 347 (359) - Benetton-Werbung: BGH, Urt. v. 14. 11. 1995 - VI ZR 410/94, GRUR 1996 S. 195 (197) = NJW 1996 S. 593 - Abschiedsmedaille: BGH, GRUR 1997 S. 125 (126) - Bob-Dylan-CD: BGHZ 151 S. 26 (30)).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문제의 광고는 근본적으로 광고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 광고에는 원고의 초상을 이용하여 생생한 현실사건에 대해 풍자적 형태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를 이미 자동차시험운행에서 실패한 동료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풍자적 방법으로 원고가 재정장관으로서의 공직을 단기간에 사퇴해 버린 상황을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 형성적 내용은 명백하게 광고의 본래 목적에 의해 퇴색되지 않는다.

4. 기본적으로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원고에 대한 초상의 전파는 구체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본 사건에서 그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

a)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시사적 영역으로부터 발생한 개인의 초상을 허가 없이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은 개별적 사안에서 초상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초상의 전파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사례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포괄적이고 개별적 사례에서 이익형량을 근거로 답변할 수 있다. 이는 윤곽법으로서 인격권이 가지는 특성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권리의 절대적인 보호범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에 대한 보호범위의 특징은 매번 보호가치 있는 상대방의 이익과 형량을 통해서 정해져야 한다(BVerfGE 101 S. 361 (393); BGH, Urt. v. 12. 10. 1993 - VI ZR23/93, GRUR 1994 S. 391 (392) = NJW 1994 S. 124 - Alle reden vom Klima; BGHZ 156 S. 206 (210)). 이 경우 피고가 광고를 통해 원고의 초상을 공중에 전파했을 때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을 근거로 한 피고의 법적지위보다 원고의 인격권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성부분에 더 중요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된 침해의 강도를 고려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b) 항소심 재판부가 당연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광

고에 타인의 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 초상권자의 인격권이 허가 없이 광고에 초상을 게재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능가하게 된다(Schricker/Götting, §60 UrhG/ §23 KUG Rdn. 16 참조). 이는 스스로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초상이 광고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할지 결정할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의 본질적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특히 타인의 초상을 사용함으로써 초상권자의 이미지나 광고가치가 이용되었는가와 초상권 소유자를 획득된 생산품과 동일화하게끔 하는 인상을 받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BGHZ 20 S. 345 (352) - Paul Dahlke; BGH, WRP 1995 S. 613 (614) - Chris Revue; BGHZ 151 S. 26 (33)).

c) 상고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견해와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백한 광고목적으로 인하여 피고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원고의 인격권에 반하기 때문에 후퇴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내세웠지만, 이러한 판단과는 달리 상고에서는 피고가 승소하였다. 소송이 제기된 본건에서는 분명히 원고의 이미지나 광고가치를 경영상의 이득으로 전용한 사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본건 사건에서의 광고는 원고가 노력해서 얻은 성과물을 소개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는 않는다. 이와 동시에 원고가 광고에 그의 초상의 사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어떠한 이유도 설명되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서는 일상에서 발생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광고라는 범주 내에서 풍자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광고자의 이익의 고려가 광고에 그의 초상 사용을 방해하고자 하는 원고의 이익을 뒤로 후퇴시킨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피고는 순전한 주의광고의 범주를 넘어서 원고가 행한 업무를 간단한 자막형태의 광고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원고의 초상을 광고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재정장관으로서 원고의 직위

사퇴를 풍자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며 광고는 단지 그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초상은 광고의 범주 내에서 정치적
사안을 논평하는 시사적 내용에 귀속된다. 본 사건
광고는 광고에 포함된 내각의 나머지 15명의 인물사
진을 그 크기나 배치에 있어 똑같이 정렬시키고 있
으며, 내용적으로도 중립적인 인물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초상은 그 중심에 원고가 위치하고 있
는 시사적 내용에 대한 피고의 풍자적 비판의 한 부
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광고라는 범주 내에서 피
고에 의한 정치적 비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써 자동차리스회사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진다 하더
라도 그러한 행위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특별한 보호
를 받게 된다(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 본 사건에

서는 허가 없이는 절대 초상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원고의 권리는 피고의 이
러한 헌법상 자유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광고는 오직 민사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있지만 헌법에 근거한 인격권의
보호가치 있는 구성요건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BVerfG, WRP 2006 S. 1361, Tz 27 ff.). 헌법상 인간
존엄성 존중에 의해 보호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이상
적 요소는 본 사건 논쟁에서는 제공될 수 없다. 본 사
건 소송에서 제기된 광고로 인한 원고의 명성에 대한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 처 : AFP 37 Jahrgang Heft 6 - 2006 SS. 559-561.

번 역 : 권 형 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일본 판결1

정보제공자의 발언이 기사화됨으로 인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정보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원 고 : 유한(有限)회사 A, 동사 대표이사 甲野太郎

피 고 : 乙原次郎

도쿄지법 2005(7) 제18685호, 손해배상청구사건

2006. 8. 29 민사 제37부 판결, 청구기각·항소

2006년 5월 23일 변론종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제1. 당사자가 청구한 재판

1. 청구의 취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해 3,000만 엔 및 이에 대한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2005년 7월 12일부터 연 5부
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상기 1에 대한 가집행의 선언

2.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주문과 같은 취지

제2. 당사자의 주장

1. 청구원인

(1) 원고는 기업 커뮤니케이션 전략, 브랜드 전략, 광고 선전 업무 컨설팅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05년 8월까지 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으로 있던 자.

(2) 2004년 2월 20일 내각 관방 우정(郵政)민영화 준비실(이하 「준비실」로 한다)이 발행한 「우정민영화란 그런 것이야 통신」 제하의 신문 전단광고(乙1, 이하 「본건 전단광고」로 한다)가 전국의 세대에 약 1,500만 부가 배포되었다. 원고는 준비실로부터 이 전단광고의 기획제작, 인쇄, 배포를 수주했다.

(3) 주식회사 扶桑사(이하 「扶桑사」로 한다)가 2005년 7월 12일에 발행한 주간지 「SPA!」 2005년 7월 19일호(이하 「본건 잡지」로 한다) 20쪽의 「보도되지 않는 우정민영화의 『속보이는 연극』의 이면」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이하 「본건 기사」로 한다) 중에, 주간지 「SPA!」 편집부(이하 「본건 편집부」로 한다)에 대한 피고의 발언이라면서 별지기재의 발언(이하 「본건 발언」으로 한다)이 게재되었다.

(4) 본건 발언 중 「이 업무는 원래 대형 광고대리점에서 수주했던 것인데, 그것을 실적도 없는 사원 2명뿐인 회사가 끼어들어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竹中 대신의 의사(意思)가 있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하 「본건 발언 1」로 한다)은 본건 잡지의 일반 독자에 대해, 종업원이 2명뿐인 실적도 없는 회사인 원고가 마치 당시 우정민영화 담당이었던

竹中 대신(이하 「竹中대신」으로 한다)의 소개로, 종래 대형 광고대리점이 수주해온 본건 전단광고 제작 등의 업무를 수주했다는 사실을 적시했으며, 「정부홍보는 100억 엔이라는 예산이 있으나 『제2의 기밀비』라고 말할 정도로 엉성하게 함부로 쓰여 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 정도의 전단광고 디자인 등에 드는 적정비용은 200만 엔 정도인데, 1,300만 엔의 견적을 내고, 계약일까지 숙인 것도 정부는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이하 「본건 발언 2」로 한다)은, 원고가 마치 상기 업무에 관해 견적을 부풀리고 수주와 관련된 계약일까지 숙인 것처럼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현저하게 훼손되었다.

(5) 이하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편집부의 취재에 응한 것과 본건 발언이 본건 기사에 게재된 것과의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즉 ① 본건 기사의 내용은, 피고가 2005년 7월 4일의 중의원 우정민영화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행한 질문 및 발언 내용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신용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본건 편집부에서 독자적인 입증취재나 판단을 하지 않고 본건 기사를 게재한 것이다. ② 당시의 사회풍조로서, 우정민영화에 반대하는 사회적 기운이 매스미디어에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본건 발언에 관련한 내용은 당시의 매스미디어의 필요성과 사회적 풍조에 합치하고 있어, 기사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배경 아래, 피고는 본건 편집부의 취재에 대해 사진촬영을 허용하고, 당해 사진의 지면게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고, 이름을 명시하는 것도 승낙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한 사실 그리고 본건 잡지가 대중성향의 주간지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는 우정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하나로서 본건 발언이 채용되리라는 것을 강하게 예측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6) 본건 잡지는 전국적으로 약 20만 부를 발행하는 영향력이 큰 주간지이기 때문에 원고는 본건 발언

으로 적어도 3,000만 엔을 맡들지 않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

이유

1. 청구원인 (1)~(3)의 각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 (4)의 명예 및 신용훼손 성립여부를 검토한다.

본건 발언 1 및 2의 주된 목적은,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원고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나,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기를 기준으로 할 때, 본건 발언 1은 정부 공보(公報)를 취급한 실적도 없고 종업원수도 극히 적은 회사인 원고가 竹中 대신의 소개로 종래 대형업체가 수주해온 본건 전단광고의 제작·배포 등의 업무를 수주했다는 사실을 적시했으며, 본건 발언 2는 원고가 마치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불린 건적으로 수주계약일까지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그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청구원인(5)의 성립여부(피고가 취재에 응한 것과 본건 발언이 본건 기사에 게재된 것과의 상당인과 관계의 유무)에 대해 검토한다.

(1) 널리 공간(公刊)되고 있는 잡지기사의 편집권은 그 출판사가 독점하고 있으며, 기사를 작성하여 잡지에 게재함에 있어서는 당해잡지의 편집부가 독자적으로 입증취재를 하여 게재의 옳고 그름을 검토하는 편집작업을 한 후에 그 책임 아래 게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 정보제공자도, 그러한 행위가 행하여져 당해잡지의 편집부의 책임 하에 기사가 게재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당해 잡지기사에 의해 타인의 명예나 신용

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사가 작성되는데 있어 정보를 제공한 자는, 제공된 정보의 성질, 정보와 제공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출판사에 의한 입증취재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출판사와 정보제공자가 뜻이 통한 경우도 포함), 정보제공자가 사전에 당해 기사를 보고, 당해 기사의 게재를 승낙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정보제공행위와 당해 정보제공을 근거로 작성된 기사의 게재와의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해 정보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질문 또는 발언한 내용과 같다고 해서, 바로 출판사에 의한 입증취재가 기대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를 본건과 관련하여 볼 때, 증거(甲3, 乙2~6, 乙22, 피고 본인) 및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당시 민주당 소속의 중의원 의원이던 피고는, 같은 민주당 소속의 모 중의원 의원과 함께 2005년 6월 3·13·14·15·21일과 7월 4일 중의원 우정민영화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정부 공보를 취급한 실적도 없는 종업원 2명, 자본금 300만 엔의 작은 회사인 원고가 본건 전단광고의 작성·배포 등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竹中 대신 등과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질문했으며, 본건 전단광고에 관해서는 제작 등에 드는 비용이 불려서 청구된 것은 아닌지, 본건 전단광고의 계약일에 대해서도 실제의 체결일보다 소급시킨 것은 아닌지 등을 질문했다.

또한 그 질문을 함에 있어서는, 질문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피고가 상기 특별위원회에서의 질문이나 본건 편집부의 취재에 응했을 때 제공한 자료 이외에 국회의원이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성질의 신뢰성이 높은 정보원(源)을 갖고 있었을 리는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 동월 5일 본건 편집부로부터 상기 질문내용에 대한 취재신청이 있자, 이를 응락한 피고는 동월 6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중의원 의원회관 내의 피고의 국회사무실에서 扶桑사의 기사 1

명, 大川홍업의 大川豊, 프리랜서 기자 1명으로부터 취재를 당했다는 사실, 피고는 본건 편집부로부터 본건 잡지의 발행 전에 본건 기사에 게재되는 본건 발언의 내용이나 체재에 관해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원고(게라=galley)의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상에 의하면 피고에게 있어, 제공된 정보의 성질, 정보와 제공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건 편집부에 의한 입증취제가 기대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전에 보여준 본건 기사를 보고 본건 기사의 게재를 승낙했을 리는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 실제로 피고는 본건 발언 1 가운데 「이 업무」란, 우정민영화에 관한 정부홍보 업무의 취지로 본건 편집부의 취재에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발

언 1에서는 본건 전단광고의 제작 등의 업무를 지적한다고 해석되는 표현으로 되어있으며, 본건 발언이 피고가 취재에 응했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 밖에 상기 특단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상기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청구는, 다른 나머지 점에 대해 판단할 것 까지도 없이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 처 : 『판례타임즈』 1224호(2007. 1. 15) pp. 277~281.

번 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

일본 판결2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신자 정보 공개를 정보서비스제공업체에 요구했을 때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는 인용하면서도, 통신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전제로, 재판 외 요청에 있어 정보서비스제공업체가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데 있어 중과실이 있었다고까지는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된 사례

원 고 : 都春也こと, 甲山太郎
 피 고 : ボ-ダフォン株式会社 (보더폰)
 상기대표자대표집행역 : 손정의
 오오사카지법 2005(7) 제4891호
 발신자정보 공개 등 청구사건
 2006. 6. 23 제9민사부판결, 일부인용 · 확정
 2006년 4월 28일 변론종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해 별지 삽입문 목록 1 및 2 기

재의 각 삽입문의 발신자에 관계되는 주소, 이름 및 메일 주소를 공개하라.

2. 원고의 그 밖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둘로 나누어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제1. 청구

1.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
2. 피고는 원고에 대해 100만 엔 및 이에 대한 지불 완료시까지 2005년 4월 1일부터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제2. 사실의 개요

본건은, 원고가 인터넷의 전자게시판에, 원고로부터 성병이 옮겨졌다는 등의 삽입문이 게재되었기 때문에 명예훼손 또는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었다고 특정 전기 통신 역무(役務)제공자인 피고에 대해 “특정 전기 통신 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4조 1항에 근거하여 발신자 정보 공개의 청구와 함께 피고가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정신적 손해를 입은 불법행위를 들어 청구한 100만 엔의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재판 외에서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주간이 경과된 2005년 4월 1일부터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1. 전제사실 (말미에 증거를 기재한 사실 이외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1) 당사자

① 원고는 都春也, 호스트클럽 「Club A」(이하 「A」로 한다)의 접대자.

② 피고는 휴대전화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③ 소의 주식회사 예로우브릭(이하 「소외회사」로 한다)은 밤놀이 WEB이라는 명칭의 홈페이지(<http://www.yoasobiweb.com>, 이하 「본건 홈페이지」로 한다) 운영.

(2) 본건 홈페이지는 호스트클럽의 정보에 관한 전자게시판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건 게시판은 다수의 「스레드(thread·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단위를 나타내는 말)」로 구성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3) 2004년 12월 12일 본건 게시판에 별지 삽입문 목록 1 및 2 기재의 각 삽입문 (동 목록 1 기재의 삽입문을 「본건 삽입(1)」로 하고, 동 목록 2기재의 삽입문을 「본건 삽입(2)」로 하며, 이를 합쳐서 「본건 각 삽입문」으로 한다)이 게재되었다.

(4)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해, 문서로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응답이 없자 2005년 1월 27일 오사까지법에 발신자의 IP 주소 및 본건 각 삽입문이 송신된 일시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가처분을 신청, 동년 2월 10일 가처분 결정을 받아 동년 3월 16일 상기 정보의 공개를 받았다(甲8, 9 및 11~13).

(5)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판 외에서의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

①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의 공개에 의해 본건 각 삽입문의 발신에 이용된 단말기는 「j-phoneV402SH」이며,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단말기임을 알았다(갑13). 또 원고는 상기 IP주소를 검색한바 피고가 관리하는 서버임을 알았기 때문에 피고에 대해 2005년 3월 17일 본건 각 삽입문에 대한 발신자 정보의 공개 및 공개까지의 보존을 청구했다.

② 원고 대리인은 동년 4월 중순경 전화로 상기 공개청구에 대해 피고 카스터머(カスタマ-)부문에 조회한 결과 동 부문의 담당자는 「내주쯤 회답을 하겠다」고 했다.

③ 원고는 재차 피고에 대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본

건 각 삽입문에 대한 발신자 정보의 공개 및 그 보존을 청구한 바, 피고는 2005년 5월 20일 「회답서」를 통해 원고의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가 법4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2. 쟁점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본소의 쟁점은, (1) 본건 각 삽입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 (2) (1)이 긍정된다고 할 때 본건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본건 각 삽입문이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을 훼손하는 것인지의 여부, (4)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응해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해당한다고 할 경우에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판단(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은 뒷부분의 「제3쟁점에 대한 판단」에서 알 수 있으므로 생략한다).

제3. 쟁점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1) 제2. 1기재의 사실에 증거(갑3~6, 7의1 및 2, 을6)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본건 게시판의 개요

본건 게시판에는 호스트클럽 및 호스트에 관한 정보 및 접객의 감상 등이 쓰여 있는데, 본건 게시판 중에는 A의 영업실태, A에 근무하는 호스트에 대한 불평, 불만 및 비방 중상 등을 써넣는 것을 목적으로 한 「A 피해자의 모임」, 「冬男高飛車 영업」 및 「A의 초회(初回)」라는 제목의 스레드(thread·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단위를 나타내는 말)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들 스레드에는 A 및 A에 근무하는 호스트에 관한 비방 중상을 내용으로 하는 수많은 삽입문이 들어있다.

② 본건 게시판의 게시판 규칙의 기재

2005년 4월 21일에 일부 개정된 본건 게시판의 게시판 규칙에는 「정보의 선택」란에, 「밤놀이웹의 종합게시판은 그 성질상 진위를 가리지 않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당 사이트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취사선택은 자기 책임 하에 하도록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있다.

③ 본건 삽입문의 전후의 삽입문

본건 삽입문(1)이 있기 전의 삽입문 중에는, 「저것의 어디가 좋아? 흔히 여자를 돈으로 밖에 보지 않는 놈인데」 및 「죽어라」라는 비방 중상하는 내용의 삽입문이 존재했다.

또 본건 삽입문(1)이 있는 후의 삽입문 중에는, 「그러니까 뭐야? 인간이 병에 걸리는 일이란 이상한 일도 아닌데 뭐야 뭐? 웃음(笑)」 및 「9, 끈질기다! 다른 스레드에도 똑같은 삽입문을 넣었잖아 ~ 그렇게 되다니 처참할 뿐이야」라는 각 삽입문이 있었다.

(2) 또 제2. 1기재의 사실에 증거(甲15~17, 19, 乙2, 4 및 5의 1~3)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5년 3월 17일 인터넷에서의 전자게시판 밤놀이웹에 원고의 명예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삽입문이 들어갔다고 해서, 본건 각 삽입문과 관련있는 주소, 이름 및 메일 주소의 공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서(甲15, 이하 「본건 통지서」라 한다)를 수령했다.

② 피고는 상기 통지서에 기재되어있는 IP 주소에 근거하여 본건 각 삽입문이 발신되었다고 생각되는 휴대전화 단말(端末)기를 특정, 본건 계약자에 대해 회답서를 송부하여, 법4조 2항에 근거, 발신자 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바, 본건 계약자는 피고에 대해 「당해 정보의 발신자로서, 나에 관한 이하의 정보(이름, 주소, 메일 주소)를 공개청구자에 대해 공개하는데 동의하지 않겠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일체 기억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회답

을 반송했다.

또 피고는, 본건 계약자에 대해 조사를 한 바 본건 계약자는 가족할인서비스의 이용자인이 판명되었다.

③ 가족할인서비스란, 같은 성을 갖거나 또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의 휴대전화 기본사용료를 반액으로 하는 피고의 서비스이다. 가족할인서비스에 있어 주계약자와 부회선(副回線)이용자의 전화번호는 각각 다르나, 피고와 계약관계에 있는 것은 주계약자 뿐이며, 부회선이용자는 피고와 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와 부회선이용자와의 연락 등은 주계약자를 통해서 행해지게 된다.

피고는 가족할인서비스의 신청을 받을 때는, 주민표(票)기재사항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같은 성을 갖고 있는지 또는 동거가족인지를 확인하는데, 주계약자의 정보 이외에는 가족할인서비스에 등록되어있는 부회선이용자의 전화번호를 시스템 입력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부회선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외의 이름이나 연락처에 대해서는 시스템상으로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는 가족할인서비스의 신청서 및 가족확인 서류의 사본을, 지역별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이것들을 탐색하여 부회선이용자를 찾아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④ 피고는 법무부에서, 원고로부터의 전기 공개 청구에 근거하여 권리침해의 명백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했다.

원고는 2005년 5월 17일자 통지서로, 피고에 대해 법률상의 의무인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부당하게 지체하고 있다고 지적, 당해 통지서 송달 후 1주일 이내에 공개의 의사유무를 문서로 회답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를 받은 피고는 동월 19일자로 「회답서」를 통해 원고에 대해, 원고의 청구가 법4조 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므로 발신자

정보의 공개 청구 및 보존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회답을 했다.

2. 쟁점(1)에 대하여

(1) 명예란, 사람이 그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이다. 인터넷에 개설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의 어떤 삽입문의 의미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게시판에 대한 일반 열람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만 한다(최고재판소 1956년 7월 20일 제2소법정 판결).

증거(甲7의 1 및 2)에 의하면, 본건 삽입문(1)은, 본건 게시판 내의 「아이돌(idol)·호스트·都·春也」제하의 스테드에, 또 본건 삽입문(2)는 동 게시판 내의 「春也王子·夏王子·秋王子」라는 제하의 스테드에 삽입된 것이 인정되는 바, 원고가 「都春也」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제2, 1(1)①)과 같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로 비추어 볼 때, 상기 각 스테드는 모두가 원고에 대한 화제를 취급할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며, 본건 각 삽입문은 모두가 원고에 관한 것을 화제로 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본건 삽입문(1)은, 본건 발신자가 원고와 성교섭에까지 이르렀고 원고가 성병에 이환(罹患)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또 본건 삽입문(2)는 원고가 성병에 이환되었고, 본건 발신자가 원고로부터 성병을 옮겨 받았다는 것을 적시한 것인 바, 제3, 1(1)①에서의 인정(認定)과 관련있는 본건 게시판의 목적 등을 전제로 하여, 본건 게시판에 대한 일반인 열람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기를 기준으로 볼 때, 본건 각 삽입문은 모두 원고가 성병에 걸려있으면서 자신의 고객인 여성과 성교섭을 하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열람자들에게 주는 표현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① 피고는, 성병은 질병에 불과하여 사회적 평

가와는 무관하고, 원고가 성병에 걸려있다고 공표됨으로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성병의 유무가 사회적 평가에 고려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편견된 주장이며, 또한 호스트는 여자 손님과 육체관계를 갖는 직업이 아니므로, 성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은 호스트로서의 평가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본건 각 삽입문의 내용은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도 단순히 성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의 적시를 가지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본건 게시판의 목적 등과 함께 본건 각 삽입문의 내용이, 원고가 성병에 걸려있으면서 여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여, 그 결과 성병을 옮겼다는 인상을 본건 게시판의 일반 열람자에게 주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이 점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며, 앞의 인정과 판단을 좌우할 수는 없다.

② 또한 피고는, 본건 게시판은 누구든지 익명으로 투고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해 투고자가 책임을 지도록 요구되지 않고 있어, 삽입문이 진실이라는 개연성이 낮으므로 일반의 열람자가 보통의 주의와 읽기를 한다면, 본건 각 삽입문을 진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므로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3. 1(1)②와 같이 본건 게시판의 「정보의 선택」란에 「밤놀이웹의 종합게시판은 그 성질상 진위를 불문하고 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당 사이트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취사선택은 자기 책임 하에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乙6)가 있는 것은 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게시판은 호스트클럽 및 호스트에 관한 정보 및 접객의 감상 등을 써넣도록 한 것이며, 따라서 발신자나 그 열람자

사이에서 호스트 등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건 게시판의 규칙 중에 「밤놀이웹의 종합게시판은 그 성질상 진위를 불문하고 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당 사이트는 그 진위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건 게시판이 정보를 교환하는 매체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이상 그 열람자에게 있어서도 본건게시판에 게재되고 있는 기사가 모두 허위라고 인식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본건 게시판에도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인정된다(최고재판소 1997년 5월 27일 제3소법정 판결).

그리고 본건 게시판의 전기 규칙의 기재도, 본건 게시판의 삽입문에 진위(眞僞)가 혼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전기 판단내용에 따른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건 게시판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본건 게시판의 삽입문에 의한 삽입문의 대상이 된 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성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게시판의 일반 열람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본건 각 삽입문을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며, 그 주장을 가지고 본건 각 삽입문에 의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전기의 인정판단을 좌우할 수는 없다.

3. 쟁점(2)에 대하여

(1) 민사상의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련되고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었을 때는 위법성이 없으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최고재판소 1956년 6월 23일 제1소법정 판결).

본건 각 삽입문은 제2. 2(1)① 및 동(3)과 같이, 호스트클럽인 A에서 일하는 원고가 성병에 걸려있었다는 사실 및 삽입문을 삽입한 자가 원고와 성교섭을 하여 성병을 옮겨 받았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도저히 공적인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개인의 사생활상의 언동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이 불특정 다수인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공익을 도모할 목적도 살필 수 없으므로 내용의 진실성에 관해 판단할 것까지도 없이 본건 각 삽입문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소괄 (小括)

(1) 이상에 의하면 본건 각 삽입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권리를 침해했음이 명백해졌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해석되더라도, 피고는 본건 각 삽입문과 관련한 발신자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져야 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3)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

(2) 그런데 법2조 4호에 의하면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에서의 발신자란, 특정 전기 통신 역무(役務)제공자가 사용하는 특정 전기 통신 설비의 기록매체(당해 기록매체에 기록된 정보가 불특정자에게 송신되는 것에 한한다)에 정보를 기록하고, 또는 당해 특정 전기 통신 설비의 송신장치(당해 송신장치에 입력된 정보가 불특정다수의 자에게 송신되는 것에 한함)에 정보를 입력한 자를 말하는 바, 본건에서는 전기 제3. 1(2)②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계약자가 피고의 가족할인서비스의 이용자이고, 본건 계약자 외에 부(副)회선이용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본건 계약자와 본건 발신자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전기 제3. 1(2)② 및 ③에서 인정한대로 가족할인서비스의 경우 주계약자와 부회선이용자의 전

화번호가 다르다는 사실, 또 피고는 원고로부터의 본건 통지서에 근거하여 본건 각 삽입문이 발신되었다고 생각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실제로 특정, 그 이용자인 본건 계약자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데 대해, 본건 계약자는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회답만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피고에 의해 특정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 본건 계약자가 본건 발신자임이 추인(推認)되는 것이므로, 본건 계약자가 가족할인서비스의 이용자라는 사실은 상기의 추인을 뒤집는 것은 아니다.

5. 쟁점(4)에 대하여

(1) 법4조 4항은 정보서비스제공자가 동조 1항의 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정보서비스제공자 자신이 발신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발신자 정보는 일단 공개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서비스제공자에게는 재판 외의 청구로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받았을 때 단락적(短絡的)인 판단을 하는 일이 없도록, 동조 2항에 규정한 의무 등을 준수하고 발신자의 이익 옹호나 수속 보장에 충분하게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요청되고 있어, 이러한 요청에 부응한 결과로서 그 판단에 신증을 기하고, 공개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만일 사후적으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도, 그것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일반 원칙에 따라 정보서비스제공자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관점에서, 비공개인 경우 정보서비스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기의 취지를 감안할 때 동조 4항의 고의란, 권리 침해의 명백성 및 발신자 정보 공개의 필요성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정보서비스제공자가

재판 외에서의 공개 청구자의 청구에 응하지 않고, 공개 청구자에게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동향의 중과실이란 고의에 가까운 주의 결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① 이를 본건과 관련하여 볼 때, 상기 인정사실과 같이 2005년 3월 17일 원고로부터 본건 통지서로 발신자 정보 공개의 청구를 받은 피고는 본건 각 삽입문이 올라간 휴대전화 단말기를 특정, 법4조 2항에 근거하여 본건 계약자에 대해 의견청취를 했다는 사실, 피고에 의한 의견청취에 대해 본건 계약자는 기억이 없으면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사실, 더구나 본건 계약자가 가족할인서비스의 이용자임이 판명된 사실, 이로 인해 피고에게는 통신의 비밀 및 본건 계약자와 본건 발신자가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 등도 고려하여, 2005년 5월 19일자 회답서에서 원고의 청구가 법4조 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발신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원고에 회답하였음이 인정된다.

② 정보서비스제공자가 판단하여 발신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본건에서도 정보서비스제공자인 피고가 발신자 정보에 대해 공개 또는 비공개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되었다고 생각한다. 본건에 있어 결론적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법4조 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 2005년 5월 19일자 회답서의 기초가 된 피고의 판단은, 당 재판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바로 피고의 판단의 당부(當否)를 생각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그리고 본건 각 삽입문의 내용, 이것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당 재판소의 판단 등을 감안하면, 피고로서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전제로, 본건 발신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야 원고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피고가 본건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데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어쨌든 중과실이 있었다고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원고의 청구를 받은 후 피고가 회답을 보내기까지의 기간은 약 2개월로, 약간 긴 감도 없지 않으나 법4조 2항에 근거하여 본건 계약자에 대해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도 생각하면, 중과실이 있었다고 평가하기에도 곤란하다.

③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발신자 정보의 비공개에 의해 입은 손해액 등 그 나머지 점에 대해 판단할 것도 없이 피고가 원고에 대해, 본건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데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

6. 결어

이상과 같이 원고의 청구는 피고에 대해 본건 각 삽입문의 발신자에 관련한 주소, 이름 및 메일 주소의 공개를 청구하는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며, 민사소송법 제64조 본문, 6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 처 : 『판례타임즈』 1222호(2006.12.15) pp. 207~215.

번 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영국 사례 1

공익적 목적과 관련해 수집된 미성년자의 초상을 보도하면서 사생활 침해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국 PCC는 “‘함정수사가 함정’이라는 주장” 제하로 『더 패킷』지가 2006년 11월 1일에 보도한 기사와 사진에 대해 콘월 지역 위원회의 법률 사무부장인 리처드 윌리엄스가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기사가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윤리강령 제3조(사생활 침해)와 제6조(아동보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기사에 실린 사진의 경우 윤리강령 제10조(은밀한 장비와 속임수 사용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기사는 “우리 상점 직원이 Trading Standards의 수사관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린 트루로의 한 상점주의 말을 인용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문제의 기사에는 상점주가 “외모로 봐서는 적어도 18세 이상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보낸 CCTV 화면이 게재되어 있다.

불만신청인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윤리강령 제3조와 제6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특별한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므로 16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관련된 보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불만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더 패킷』지는 “상점이라는 곳은 대중의 접근이 항상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생활에 대한 윤리강령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반박하고 “상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은 기본적으로 타인들에게 노출되고 감시카메라에 찍힌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이며 또한 사진 자체도 어떠한 기밀의 정보도 담고 있

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사 측은 “무엇보다도 이 과정은 점원이 법을 위반하는 모습을 포착하려는 위원회 소속 경찰들의 ‘함정수사’를 보고자 하는 대중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고 이번 수사에 동원된 청소년의 부모 역시 자신의 아이가 감시카메라에 찍히고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만신청인은 “자발적으로 지원한 소년의 사진을 게재한 것은 적당하지 않고 소년의 권리와 대중의 관심사의 균형을 맞추는데도 실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불만신청인은 ‘대중들에게 소년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 지 확인할 수 없다’는 소년의 부모의 말을 인용해 진술문을 마쳤다. 불만신청인은 또한 “PCC는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소년의 신분을 항상 보호해야 하며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경찰이지 소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문사 측은 이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웹사이트상의 사진은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PCC는 먼저 윤리강령 제3조와 관련해 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이 보통 사건과 다른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밝혔다. 보통의 경우, 작고 조용한 상점에서 몰래 찍히고 동의 없이 게재된 개인의 사진은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PCC는 밝혔다. 그러나 PCC는 이번 경우는 상점의 직원들이 18세 이하의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수사당국이 의도적으로 15세의 미성년자를 동원했다는 점이 다르다고 보았다.

PCC는 윤리강령 제3조에 관한 불만내용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이 행동은 완전히 사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수사당국에서 범정으로 갈 수 있는 문제를 조사한 것이고 이는 같은 상황의 보통 손님에 대해 적용되는 사례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PCC는 판단했다. 둘째, 소년의 외모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은 상점주인의 공식적인 불만이 제기되고 나서 사회의 논란거리가 되어왔기에 대해서 대중들은 논쟁의 사실을 알만한 권리가 있다고 PCC는 보았다. 셋째, PCC는 소년에게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그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았고 불만신청인의 주장대로 이 기사에

실린 사진이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한다면 이는 문제의 상점주인이 대중에게 자유롭고 공정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PCC는 윤리강령 제6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PCC의 윤리강령 개념으로 볼 때 기사에 실린 사진의 주제가 소년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PCC는 이번 일이 소년의 사생활

이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기사에도 해당 소년이 개인적으로 잘못을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PCC는 윤리강령 제10조가 몰래카메라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이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기사는 상점의 CCTV에 찍힌 장면을 인용한 것이며 이를 제10조를 근거로 판단해 볼 때 이러한 카메라를 ‘숨겨져 있는’ 카메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영국 사례 2

사적인 공간에서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공표했다면 사생활 침해로 인정할 수 있다

영국 PCC는 『헬로!』지가 지난 2006년 8월 29일에 게재한 기사에 대해 엘 맥퍼슨이 제기한 불만을 인정했다.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기사가 그녀와 그녀 자녀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PCC 윤리강령 제3조와 제6조를 위반했다면 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불만신청인은 변호사를 통해 불만신청인이 개인 소유의 별장과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당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의 사진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헬로!』지는 불만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사진 촬영을 할 때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 해변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잡지사는 “사진 촬영에 이용된 렌즈가 보통의 것인지 망원렌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장의 사진에서 불만신청인이 사진기자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 불만신청인이 파파라치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잡지사 측은 “하지만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웹사이트에도 게

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잡지사의 편집장은 사과의 편지를 보내겠다고 제안했고 앞으로 불만 신청인의 아이들 사진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PCC는 불만신청인이 개인적인 휴가를 위하여 고립된 섬의 개인 별장에서 지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사실을 비중있게 고려했다. PCC는 불만신청인과 불만 신청인의 자녀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잡지사의 설명을 인정하지 않고 윤리강령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PCC는 불만신청인이 제기한 윤리강령 제6조(미성년자 보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PCC는 사진의 주제가 불만신청인의 아이들의 삶에 관련된 것은 아니며 사진 자체에 자녀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나왔고 촬영의 악의가 없으며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신문사는 이를 뒤, “주지사가 ‘입장을 바꿨다’”며 “지구 온난화에 대해 주지사의 입장이 확실치 않다”고 두 번째 기사를 보도했다. 또한 신문사는 불만신청인의 입장과 함께 불만신청인과의 인터뷰 전문을 게재하고 불만신청인에 대한 자연보호단체장들의 비판문도 같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불만신청인과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 내각 사무소는 기사의 정확성, 사실 확인, 적당한 정보도 기사를 내는 것에 대해 신문사가 언론평의회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 내각 사무소는 인터뷰가 지구 온난화를 이겨내자는 내용이었지만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제목과 코멘트들로 인해 불만신청인인 주지사가 단순히 “지구 온난화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만 말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지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인터뷰의 최우선적인 주제는 무공해 에너지 개발 작업이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의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이 ‘지구 온난화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의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

호주 사례 1

헤드라인과 주요 문장만 읽는 보통의 독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한 불만은 인정된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지가 지난 2006년 11월 4일에 보도한 기사 중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州) 알란 카펜터 주지사(불만신청인)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불만과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 내각 사무소가 정정보도에 대한 신문사의 대응법에 대해 제기한 불만을 인정했다.

문제의 2006년 11월 4일자 기사의 헤드라인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의 주지사는 ‘지구 온난화는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에 좋은 일이다’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으며 부제목은 “웨스트 오

스트레일리아주의 주지사인 알란 카펜터는 ‘지구 온난화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에 좋은 것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문제의 기사는 불만신청인이 긍정적인 태도로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가 그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문제의 기사는 불만신청인의 발언 내용을 부연설명하는 그래픽을 게재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에게 좋은 일’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불만신청인의 불만

다면 주지사가 불만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인정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전체 내용을 읽는 독자는 헤드라인과 코멘트들이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자는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가 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함축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헤드라인과 첫 번째 기사의 주된 문장들만 보는 보통의 독자들은 다른 내용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두 번째 기사 역시 첫 번째 기사와 같이 주지사의 답변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불만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호주 사례 2

사실에 대하여 정확성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잘못된 기사를 보도했다면 그에 대한 불만을 인정할 수 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더 에이』지가 2006년 12월 13일자 “나쁜 옵션” 제하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미셸 다운스가 제기한 불만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문제의 기사는 ‘다이어리 섹션’에 게재되었는데 이 섹션은 가십(gossip)을 주로 소개하는 섹션으로 기사들의 내용이 대부분 의견들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의 기사는 고(故) 피터 브룩의 전 부인인 불만신청인이 『뉴 아이디어』지에 “결혼 생활 중 피터 브룩이 나를 폭행했었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 (고(故) 피터 브룩의 친구의 시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 고(故) 피터 브

룩의 친구는 불만신청인이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것을 비판했다. 문제의 기사는 고(故) 피터 브룩의 친구의 발언을 직접 인용한 부분을 제외하면 “이상하고 불품없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뉴 아이디어』사로 서둘러 갔다”는, 신문사 측이 불만신청인에 대해 직접 언급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불만신청인은 호주 언론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독자들이 무엇이 사실이고 견해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어떤 정보가 사실로서 제공되었다면 신문사에

서는 자신들이 보도한 것에 대해 그 정확성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이상한”이나 “불품없는” 같은 단어의 선택이 ‘견해’임을 확연히 보여주며 독자들이 이를 견해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호주 신문평의회는 이에 대한 불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호주 언론평의회는 문제의 기사가 “불만신청인이 자신의 남편이 사망하자 ‘서둘러’ 잡지사로 달려갔다”는 내용을 사실로 기록하고 있으나 불만신청인은 ‘화이트 리본 데이’ (여성폭력반대의 날)에 맞추어 이를 폭로하려고 자신의 남편이 죽기 전부터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화이트 리본 데이’는 매년 11월 25일이고 『뉴 아이디어』지의 기사는 2006년 11월 17일에 보도되었음을 볼 때 호주 언론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신문사가 화이트 리본 데이 관계자나 『뉴 아이디어』지 그리고 불만신청인 본인에게 직접 미리 확인했으면 불만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사는 사실로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검토를 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불만신청은 인정되었다. □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박지운 아나운서, 뉴시스에 형사소송 “해킹 사진 등 게재로 명예훼손”

KBS 박지운·최동석 아나운서의 사적인 사진 유출을 다룬 언론 보도가 사생활 침해로 증폭시키자 해당 아나운서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조건진 KBS 아나운서팀장은 “두 아나운서가 미니홈피를 해킹한 해커와 뉴시스, 뉴시스 이 모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뉴시스는 지난달 29일 새벽 박 아나운서의 미니홈피에 비공개로 실렸던 사진 20여 장이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출되자 이날 오후 1보를 전하며 해킹을 통해 유출된 사진들을 일부 모자이크해 게재했다.

‘20대 후반의 지상파 인기 여자아나운서 X’로 박 아나운서를 지칭한 뉴시스는 “X와 그녀의 애인이 노골적인 애

정행위를 하는 장면”, “승용차 안, 침대 등지에서 키스를 나누는 등 흐트러진 모습으로 연인과 애정을 표현”, “신체 노출 수위도 상당”, “X가 침대에서 애인과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에는 정체 불명의 또 다른 남자가 함께 누워 있다. 특히 이 사진을 놓고 온갖 외설적인 추측이 난무” 등의 표현으로 보도했다.

조건진 팀장은 “최 아나운서가 뉴시스 기자에게 연락해 사진과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X 여자아나운서〉의 은밀한 사생활 사진 유출 파문이라고 제목을 단 데일리안도 “현재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은 그나마 수위(?)를 조절한 20여 장으로 알려져 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파문’을 증폭시켰다. 이외에 여러 인터넷 매체들이 ‘인터넷 개인 공간에 대한 해킹’과 ‘사생활 및 인권침해 위험’은 뒷전인 채 해킹사진을 게재하거나 ‘적나라’, ‘노골적’, ‘상당한 노출’ 등의 선정적 보도를 쏟아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은 박 아나운서의 기사를 주요 기사로 배치하지 않았지만 실시간 인기 검색어나 ‘박지운 아나운서 사진’, ‘박지운 아나운서 미니홈피’ 등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을 통해 이번 사건은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번졌다.

네이버는 두 아나운서의 요청으로 1일 오후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과 실시간 검색어에서 두 아나운서와 관련된 내용을 차단했다.

미디어오늘 2007년 5월 2일

대법원 “공익 목적 비판 신문 사설은 정당”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언론 논평은 일부 단정적인 어법이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라도 정당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한 그 책임을 추궁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홍훈 대법관)는 (주)레이크힐스 골프장이 제주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할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작성된 신문 사설의 주장이나 논평은 일부 표현 방식이 문제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에 비취 정당한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정당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과 관련, “신문 사설의 의견 표명이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취 정당한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견 표명이 비난이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위법성이 있는 인신공격에 해당해 불법 행위

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레이크힐스 골프장은 제주일보가 2005년 3월 11일자 신문에 ‘골프장 재벌 레이크힐스의 안하무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제주도지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윤을 위해 일방적으로 골프장 입장 요금을 인상한 것은 도내 골프장 가격 경쟁력 약화는 물론 관광산업 침체 우려가 있다며 비판하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2007년 3월 5일

‘바로잡습니다’ 없는 포털 오보 정정 ‘미적’ … 지난해 법원 “사실확인 책임”

“정부가 저소득층 주택청약 부금을 대신 내준다는데, 언제부터인가요?”

“간호사는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나요?”

노동부 홍보기획팀은 지난주 주택청약과 비정규직법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 전화 폭주로 다른 업무를 못 볼 지경이었다. 지난 11일 한 신문 1면에 실린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에게 주택청약 부금을 대신 내 준다’는 기사와 13일 다른 신문 1면에 실린 ‘간호사, 초·중·고 교사는 2년 뒤 정규직 전환 적용 안 된다’는 기사와 관련한 문의였다. 두 기사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모두 ‘오보’였다.

하지만 이들 기사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초기화면에 반나절 넘게 걸리면서 ‘오보’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기사에 달린 댓글만도 수백 개인데다 수많은 카페와 블로그로 기사가 퍼올려졌다.

노기혁 노동부 홍보팀장은 “포털사이트 등 기사를 보고 전화했다는 민원인들의 문의가 폭주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느라 진땀을 흘렸다”며 “포털의 특성상 뉴스 유통이 순간적으로 확산돼 잘

못된 정책 기사의 악영향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관련 기사를 실은 신문은 이튿날 그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냈지만, 이는 포털사이트 주 화면에 노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실이 아닌 두 기사는 일주일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계속 유통되고 있다. 검색어에 따라 본 기사와 정정보도가 함께 나타나기도 하지만 본 기사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노동부 홍보팀은 포털 회사에 항의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앞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항의해 봤지만, 포털 쪽은 언론사 쪽에 책임을 미루기만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은 전여욱 한나라당 의원이 노컷뉴스와 네이버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기사의 사실 유무를 확인할 책임이 포털에도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포털의 사실 확인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지만, 민사상 책임만 묻고 있을 뿐이다.

이는 통신사 등 다른 뉴스 생산자가

제공한 기사를 그대로 가져다 싣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언론사들의 경우와 대비된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통신사 기사를 실어도 언론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포털 쪽은 오보로 판명 난 기사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등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태도다. 박선영 네이버 뉴스티임장은 “기사 정정은 편집권의 문제여서 모든 권한은 언론사에 있다”며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엔지오후과)는 “적어도 포털사이트 초기화면에 노출되는 기사는 사실관계 등을 사전에 신중히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보로 판명될 경우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를 내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2007년 4월 18일

법원, ‘백성학 녹취록’ CBS 보도 일부 금지 “‘국가정보 유출’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경인TV 최대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CBS가 보도해 온 ‘백성학 녹취록’에 대한 일부 방송·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박정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백성학 회장이 CBS와 CBSi를 상대로 지난 3월 22일 제기한 방송·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고, CBS가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1,000만 원씩을 백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검찰 수사에서 백 회장이 미국으로 문건을 보낸 증거가 없다고 결론이 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백 회장이 국가정보를 미국에 유출하면서 미국의 정보원 역할을 해왔다고 보도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백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없고,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방송·보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특정한 내용은 △백 회장이 국가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고 정보원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는 내용 △녹취록에 백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활동의 전모가 담겨있다는 내용 △신현덕 전 경인TV 대표의 주장만 담고 있는 내용 △검찰의 수사결과가 녹취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내용 등 4가지다.

미디어오늘 2007년 5월 7일

외교부, 'PD수첩' 반론보도청구 승소 MBC, 17일 반론 방송...항소 여부 논의 중

MBC <PD수첩>의 동원호 보도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낸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외교통상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재15민사부)은 지난 12일 "피고(MBC)는 이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수첩> 첫머리에서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면서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원고(외교통상부)에게 매주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론보도문으로 "외교통상부는 납치 해적들 및 소말리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고 선원들의 석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행자가 낭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MBC는 17일 방송된 <PD수첩>에서 반론보도를 내보냈다.

MBC는 이와 별개로 항소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8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동원호 선원들을 다룬 MBC <PD수첩> '피랍 100일, 조국은 왜 우리를 내버려두는가' 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 조정신청을 냈다.

당시 언론중재위는 MBC에 반론보도를 수용하라고 결정했지만 MBC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진행했다.

미디어오늘 2007년 4월 18일

전여옥 '팽' 보도한 CBS 무혐의 처분 검찰 '증거불충분'... 전 최고위원 지난해 CBS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이 CBS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CBS는 지난해 11월 14일 라디오 <뉴스레이더>(오전 8:00~9:00) 2부 '변상욱의 기자수첩'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진영의 대표적 인물인 전여옥 최고위원이 박 전 대표 진영에서 밀려

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가 전 위원 측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다음 날인 11월 15일 변상욱 기자는 같은 코너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일방적인 평가나 인격을 훼손할 수 있는 심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정중히 사과하고 CBS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사 텍스트를 삭제했다.

그러나 전 위원 측은 보도 직후 CBS와 CBSI, 변상욱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변 기자는 13일 "나름대로 정황증거를 토대로 보도한 것이고 전여옥 위원을 인신공격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던 점이 참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변 기자는 이 일로 사내 인사위원회에서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미디어오늘 2007년 3월 13일

'바다이야기 보도' 관련 소송 노 대통령 조카에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 씨가 "사행성 성인 오락기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본보와 조선일보, MBC 등을 상대로 낸 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일 노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사행성 게임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락기 제작 회사와 대통령 조카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주요 내

용 또한 객관적 진실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아일보 등이 보도한 기사 때문에 노 씨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노 씨는 현직 대통령의 친조카라는 특수한 신분의 공적인 인물"이라며 "공적인 인물의 도덕성이나 업무 처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의 비판은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본보는 지난해 8월 21일자 A3면에 '노지원 씨 증자자금 누가 왜 냈는지 의문'이라는 제목으로 노 씨가 2003년 9월 우전시스템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증자 대금을 전액 빌려 조달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우전시스템은 통신기자재 제조·판매업체로 2006년 3월 '바다이야기' 제작 회사인 '지코프라이프'에 인수합병됐다.

동아일보 2007년 5월 11일

문화부, 동아에 패소

문화관광부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문화부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봤다”며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문화부에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5월 19일 A1면 〈이 참에 한 건...황당한 태클〉 기사에서 문화부가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장·차관이 대표팀 선수들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월드컵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해 대한축구협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 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축구협회와 문화부 직원 등의 진술에 비춰 볼 때 문화부가 월드컵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쓰이기는 했지만 기사의 전체 취지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취지를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30일자 신문에 이 내용을 〈‘보도의 중요한 부분 진실이면 다소 과장된 표현 있어도 무방’〉이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미디어오늘 2007년 4월 4일

월간조선, 한겨레에 2,000만 원 배상 판결 ‘한겨레 음해 안기부 문건 보도’ 항소심서

지난 97년 작성된 한겨레를 음해하는 내용의 ‘안기부 문건’을 2001년 4월 보도한 월간조선에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조용구)는 9일 “한겨레를 친북, 좌익 성향으로 규정하고 광고수주를 위해 공기업을 협박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기부 문

건을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유포했다”며 한겨레가 월간조선과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겨레는 지난 2004년 10월 1심에서도 2,000만 원 배상판결을 받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월간조선에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정정보

도문을 신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1심에서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당시 안기부 권영해 부장과 박일룡 1차장에 대해서는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직접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상책임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 2007년 5월 10일

법원, KBS ‘서울1945’ 손배소 기각 “드라마 성격상 허용되는 범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9일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유족들이 “KBS 드라마 〈서울1945〉가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드라마가 역사적인 사실보다 가상인물들에 의한 허구적인 이야기의 비중이 훨씬 더 크고 이승만과 장택상이 여운형을 암살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이 명확하게 적시됐다고 볼 수 없으며 허구를 기본으로 하는 드라마 성격상 예술적 표현으로 허용되는 범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승만이 친일경력자 조직으로부터 일부 정치자금을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미군정으로부터 일부 후원을 받았다는 합리적 수준의 자료와 정황들이 존재하는 이상, 극중 인물들의 대사가 과장되고 추측되는 표현이 사용됐다 해도 중대한 허위가 아니고 명예훼손의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8월 KBS 〈서울1945〉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총리를 ‘여운형 암살’의 배후인 것처럼 묘사해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1945〉를 연출한 윤창범 PD는 이번 판결에 대해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훼손과 피해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재판부가 팩트와 허구를 잘 분석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 소송이 남발되지 않아야 하고 창작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들이 〈서울1945〉에 대해 제기한 형사 소송은 담당 PD와 작가가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16일 4차 공판이 열린다.

미디어오늘 2007년 5월 9일

- 권혁남(2007, 2월). 대선 출마 예상자 보도: 17대 대선 보도 관련 선거법 논쟁__'일정장소 대담' 보도는 불법, 전화·서면 인터뷰는 가능.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4호, 38-41.
- 김경환(2007, 1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방송문화** 305, 4-11.
- 김문환(2007). 저작권 법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문화관광부 주최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포럼' 발제문. 2007. 1. 30.
- 김병희(2007, 4월). 미디어 종사자 광고 출연의 윤리적 문제: 방송 활동하는 전문가는 관련 광고 출연 자제해야.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6호, 116-119.
- 김서중(2007, 봄). '헤드라인 저널리즘'의 역기능과 해결방안. **언론중재**, 통권 제102호, 18-28.
- 김영일(2007, 봄). '언론윤리' 교육 강화해야. **관훈저널**, 통권 제102호, 11-16.
- 김영호(2007, 2월). 대선 출마 예상자 보도: 보도 과열 인가, 국민의 알권리인가__인물·정책 검증 없이 여론조사 순위매기기.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4호, 42-45.
- 김옥조(2007). 프라이버시권과 초상권 그리고 보도하는 자의 윤리.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주최 '프라이버시권과 초상권' 세미나 발제논문. 2007. 4. 20.
- 김태수(2006). 공영방송 수신료의 헌법적 의미. **방송문화연구**, 제18권 2호, 225-250.
- 김태현(2007). DRM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가? 문화관광부 주최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제2차 포럼: 디지털과 저작권' 발제문. 2007. 3. 30.
- 류종현(2007). 다양한 형태의 취재제한에 대한 카메라 기자들의 대응 방안.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주최 '프라이버시권과 초상권' 세미나 발제논문. 2007. 4. 20.
- 문석빈(2007). 소리바다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재조명. **문화관광부** 주최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제2차 포럼: 디지털과 저작권' 발제문. 2007. 3. 30.
- 박재선(2007, 3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12 - 방송에 대한 "북한미화" 비판과 명예훼손.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5호, 148-151.
- 반현·이현숙(2006). 선거방송의 역할과 법적 논의: 5. 31 동시지방선거 방송보도 분석__중앙방송과 지방방송 비교. **방송문화연구**, 통권 제18호 2호, 9-36.
- 서달주(2007, 3월). 저작권법 50년을 맞이하는 다섯 가지 제안: 저작권 양도 제도 재고하고 계약규제법 도입 검토해야.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5호, 136-139.
- 성동규(2007, 봄). 네티즌 댓글의 무분별한 인용 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통권 제102호, 98-105.
- 성선제(2007, 봄). 2006년 국내언론관계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통권 제102호, 39-49.
- 송경재(2007). 위기의 인터넷 언론과 대선 선거보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주최 '인터넷 언론, 대선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논문. 2007. 4. 25.
- 송은아(2007, 5월). 신문 음부즈맨 현황과 발전방안.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7호, 166-169.
- 신 평(2007). **언론법**. 서울: 삼영사.
- 신건호(2007).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서울: 고시뱅크.
- 양재규(2007, 4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13 -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기자의 특종 유혹 사이.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6호, 154-157.
- 양재규(2007, 5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14 - 익명보도는 불안하다(1).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7호, 162-165.
- 유세경(2007).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개정. **방송위원회** 주최 **공청회** 발제논문. 2007. 5. 3.
- 유재천(2007).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신문법과 제도

- 개편 방향. 강원언론학회 주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신문경영과 생존전략' 세미나 발제논문. 2007. 6. 1.
- 윤영성(2007). 언론보도의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주최 '프라이버시권과 초상권' 세미나 발제논문. 2007. 4. 20.
- 윤영철(2007, 4월).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의 선정성 문제: 포털의 선정적 편집전략이 뉴스매체에도 부정적 영향.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6호, 80-83.
- 이경희(2006). 한국언론윤리 연구방법론. 서울: 한국학술정보.
- 이상국(2007, 봄). '헤드라인 저널리즘'의 이상과 현실. 언론중재, 통권 제102호, 29-38.
- 이어령(2007). 문화발전과 저작권. 문화관광부 주최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포럼' 발제문. 2007. 1. 30.
- 이재진(2007, 4월). 신문의 이중매체 진출: 법제 정비 필요하다_신문사 규모따라 규제에 차등을.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6호, 60-63.
- 이재진(2007, 봄). 언론의 대선 후보자 검증: 선거보도와 선거법 그리고 보도윤리. 관훈저널, 통권 제102호, 149-155.
- 이종남(2007, 3월). '패스트푸드' 식 생산으로 '비만'에 빠진 연예인 보도: 방송과 포털이 증폭시키는 황색 저널리즘.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5호, 84-97.
- 이준호(2007, 봄). 저널리즘 측면에서 바라 본 '헤드라인 저널리즘'. 언론중재, 통권 제102호, 4-17.
- 이준희(2007, 3월). 인터넷 댓글 문화와 실명제 논란: 악플 때문에 공론장에 자물쇠 채울 순 없다.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5호, 140-143.
- 이화행(2007). UCC의 확산이 포털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회 주최 'UCC와 커뮤니케이션 연구' 세미나 발제논문. 2007. 3. 30.
- 이효성(2007).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고찰: 서양과 한국의 언론사적 맥락과 현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 '미디어와 선거쟁점' 세미나 발제논문. 2007. 6. 1.
- 임종수(2007, 5월). 음란성과 저작권, UCC를 보는 두 가지 시선.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7호, 90-93.
- 임종일(2007). 심의사례를 통해 본 인터넷 언론의 바람직한 선거보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주최 '인터넷 언론, 대선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논문. 2007. 4. 25.
- 임 호(2007). 미국 저작권 판례의 최신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2007 춘계학술세미나 'UCC의 언론법적 검토: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조화로운 해결' 세미나 발제논문. 2007. 5. 30.
- 전성태(2007). DRM이 저작물의 이용에 미치는 법률문제에 관한 소고. 디지털법연구소 주최 '2007년 제1회 포럼' 발제논문. 2007. 2. 9.
- 최민재(2007, 2월). 디지털뉴스 저작권 집중관리사업 어떻게 돼가나: 뉴스 유통 주도 적극적 마케팅 기획.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4호, 138-141.
- 최영재(2007, 3월). 신문비평: 객관성·공정성 무시한 보도들_부분 혹은 돌출 인용 속에 묻히는 화자의 목소리.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5호, 64-67.
- 하승태(2006). 선거방송의 역할과 법적 논의: 여론조사 보도가 뉴스미디어의 선거보도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_2002년 대선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통권 제18호 2호, 95-118.
- 함석천(2007, 봄). 미국의 언론환경 변화와 법리 전개. 언론중재, 통권 제102호, 50-59.
- 황용석(2007). 인터넷 실명제와 17대 대선: 표현의 자유 대 선거 규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 세미나 발제논문. 2007. 3. 16. □

위원회 새 CI 소개



위원회의 CI는 다리와 천칭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조정' 과 '중재' 의 'ㅈ' 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며
위원회 역할의 핵심 가치인 소통과 공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컬러는 옐로우, 오렌지, 레드 등의 난색계열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친근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민원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로고타입은 블루 계열을 사용함으로써
공평하고 신뢰를 주는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 심벌마크



▶ 로고타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言論仲裁委員會

▶ 국문, 영문, 국영문 가로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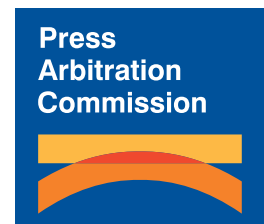
▶ 국문, 영문, 국영문 세로조합



▶ 슬로건 조합



▶ 엠블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정 : 2005. 1. 27

시 행 : 2005. 7.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5.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7.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9.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1.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언론분쟁”이라 함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4. “언론보도”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5.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

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⑤사망한 자에 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

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

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9조(중재부)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

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

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

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⑤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조 정

제18조(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피해자가 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한다.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증거조사) ①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

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결정) ①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절 중재

제24조(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재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④중재위원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절 소 송

제26조(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부의 관할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재판) ①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

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회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⑤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취업금지)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제4장 벌칙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물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전 언론보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 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기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기간에 관한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

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중재위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대표 02)397-3114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4-62 (세전빌딩 302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